



"감사원 홈페이지"

23. 09. 26. 기준 업데이트

목차

※ 클릭 후 파란 글씨 클릭하면 해당 주제로 이동합니다.!

 "감사원 홈페이지".....	0
목차.....	1
들어가기 전에... ..	6
감사원.....	7
기관소개.....	8
감사원장.....	8
인사말.....	8
프로필.....	8
주요동정.....	8
연설기고문.....	8
주요일정.....	8
조직/인원.....	9
감사위원회의.....	9
임무와 기능.....	10
1. 개요.....	10
2.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10
3.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10
필요적 검사사항.....	10
선택적 검사사항.....	10
4.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11
직무감찰대상.....	11
5. 감사결과와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11
6. 재심의 청구의 처리 (「감사원법」 제36조~40조).....	12
7.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감사원법」 제43조~48조).....	12
8. 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	12
9. 의견표시등 (「감사원법」 제49조).....	12
감사운영기조.....	13
원훈/상징.....	13
감사원 연혁.....	14
걸어온 길.....	14
정책자문위원회.....	17

정책자문위원회소개.....	17
감사70주년.....	18
서편 감사제도의 역사.....	19
제1편 감사 70년 개관.....	24
제2편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시대.....	69
제3편 감사원의 발족과 위상 정립.....	69
제4편 열린 감사,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69
제5편 부록.....	69
알림.....	70
연간감사운영방향.....	70
연간감사계획.....	70
감사운영전략.....	70
감사운영전략.....	70
고위험 중점분야.....	70
하반기 감사계획.....	70
감사착수 및 처리단계.....	71
언론보도/홍보.....	72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회의 의결사항.....	73
2023년도 제24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23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22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21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20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19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18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17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16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2023년도 제15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3
서면 의결사항.....	74
2022년도 제20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9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8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7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6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5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4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2년도 제13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74
2021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	74

감사결과.....	75
분야·종류별 감사결과.....	75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75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97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관련 감사제보사항.....	97
경기남부경찰청 및 충북경찰청 정기감사.....	97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97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인허가 관련.....	97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97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97
울산광역시 정기감사.....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97
기관별 감사결과.....	98
기관별 감사결과 통계.....	98
국가기관.....	98
지방자치단체.....	98
교육자치단체.....	98
공공기관 등.....	98
자료실.....	99
법령 및 규정 자료.....	99
간행물.....	99
결산검사보고.....	100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100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100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100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100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100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100
격월간 감사.....	101
감사연보.....	102
2022년 감사연보.....	102
2021년 감사연보.....	102
2020년 감사연보.....	102
감사백서.....	117
감사원결정례집.....	118
감사원결정례집(2020년).....	118
기타간행물.....	156
안전분야 공통개선과제 사례집.....	156
국제협력.....	265

국회업무보고.....	266
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3. 2. 15.).....	266
제402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3. 1. 16.).....	266
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2022. 10. 11.).....	266
제398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2. 7. 29.).....	266
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2021. 10. 7.).....	266
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1. 2. 22.).....	266
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2021. 10. 7.).....	273
기타.....	281
감사원이미지.....	281
감사원배너.....	281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282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282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안내.....	282
감사청구.....	282
감사청구 개요·절차.....	282
감사청구 접수 안내.....	282
주요사례.....	282
청탁금지법 신고.....	282
신고안내.....	282
신고자보호·보상제도운영안내.....	282
부패행위 신고.....	283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283
심사·재심의청구.....	284
심사청구.....	284
심사청구안내.....	284
심사 결정례.....	288
재심의청구.....	288
재심의청구안내.....	288
재심의 결정례.....	290
기타안내.....	291
정보공개.....	292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292
세입·세출사업별설명자료.....	29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292
기타메뉴.....	293
법령해석·답변제도.....	293
회계관련법령의 해석·답변.....	293
감사원 소관법령의 해석·답변.....	295

들어가기 전에...

※ 타 직렬이나 혹은 기타 다른 문서가 궁금하시다면

 "아카이브 🌂"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공공누리 관련 공지 또한 위 링크에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https://open.kakao.com/o/sSL8zGSd>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 :

저작권자 :

공공누리 :

감사원

기관소개

감사원장

인사말

프로필

주요동정

연설기고문

주요일정

조직/인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 하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 둘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 셋 감사결과의 처리
- 넷 재심의사항의 처리
- 다섯 결산검사보고 및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 여섯 심사청구사항의 결정
- 일곱 「회계·감사관계법령」의 제정·개폐 및 해석 적용에 대한 의견표시
- 여덟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
- 아홉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
- 열 감사의 생략
- 열하나 감사사무의 대행
- 열둘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

임무와 기능

1. 개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결산의 확인 (헌법 제99조), (감사원법 제21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보고합니다.

3. 회계검사 (감사원법 제22조/제23조)

회계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계검사대상은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되고, 필요적 검사대상은 감사원에서 반드시 검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8,7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택적 검사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국고수납대리점(금융기관) 등 29,300여개 기관의 회계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필요적 검사사항

- 국가의 회계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선택적 검사사항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또는 그로부터 다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자의 회계
-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출자한 자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 되는 단체 등의 회계
- 회계검사 대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 및 그로부터 다시 출연·보조를 받은 단체 등의 회계

4.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됩니다.

직무감찰대상

직무감찰대상 [감사원법 제24조]

-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 포함. 다만 군기관 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제외)의 직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 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 또는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 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5.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법」 제31조~35조, 제51조)

변상책임의 판정 (제31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합니다.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제32조와 제51조)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와 자료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그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등의 요구 (제33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선 요구 (제34조)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통보 (제34조의 2)

감사결과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는 행정 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과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발 또는 수사요청 (제35조,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9조)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간 또는 장소의 제약 등으로 직접 고발 또는 수사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재심의 청구의 처리 (「감사원법」 제36조~40조)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소속기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본인(변상판정의 경우에 한함)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감사원법」 제43조~48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리하여 그 결정결과를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동 조치에 대하여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하거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민원사항 또는 188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받은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감독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조사처리하도록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고 조사처리 결과를 민원인 또는 188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9. 의견표시등 (「감사원법」 제49조)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 법령,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 그리고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운영기조



원훈/상징

감사원 연혁

걸어온 길

1984년 심계원(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감찰위원회)을 거쳐 현재의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이 걸어온 길을 연도별로 연혁 정보를 제공합니다.

프린트

- 2010's
 - 2014.12
 - 감사혁신위원회 설치
 - 2013.09
 - 대구,수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 2010.07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163호)
- 2000's
 - 2009.03
 - 부산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 2009.02
 - 대전,광주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개소
 - 2008.02
 - 감사원법 개정으로 평가연구원에서 감사연구원으로 개칭
 - 2005.09
 - 평가연구원 개원
 - 2004.02
 - 주요정책, 사업모니터링 제도 운영방안 제정
 - 2003.12
 - 기능별로 조직구조를 재편하고 국명칭은 소관,분장사무를 알 수 있도록 변경
 - 2003.08
 - 감사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으로 감사결과 공개
- 1990's
 - 1999.08
 - 공공부문 감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감사기준 제정
 - 1995.01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위상 재정립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교육원 설치, 심사청구의 행정소송 전심절차 규정, 금융거래 자료 요구권 신설 등)
- 1993.12
- 감사원 188신고센터 개설
- 1993.04
- 감사원장의 자문기관으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 (감사원규칙 제49호)
- 1993.03
- 감사원 민원신고센터 설치
- 1991.03
- 신관 준공
- 1980's
 - 1985.08
 - 감사교육실(교무담당관, 교수담당관) 신설
 - 1982.08
 - 교육관 개관
- 1970's
 - 1979.05
 - ASOSAI 회원국으로 가입
 - 1977.12
 - 감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Computer Terminal가동
 - 1973.01
 - 감사원법 개정 (법률 제2446호) - 감사위원 연임제한 조항 삭제 등
 - 1972.05
 -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54호) 공포
 - 1971.04
 - 삼청동 현 청사 준공 / 이전
 - 1970.12
 - 감사원법 개정(법률 제2245호) - 감사위원 9인을 7인으로 감축 등
- 1960's
 - 1965.06
 - INTOSAI 회원국으로 가입
 - 1963.12
 - 감사원법(법률 제1495호) 제정 공포 -지위 : 대통령에 소속하며 직무에 관하여 독립
 - 1963.12
 -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11호) 공포
 - 1963.03
 - 초대 감사원장 임명과 감사원사무처직제(감사원규칙 제3호) 등 4개 규칙 공포
 - - 직제 : 원장, 감사위원(9), 사무총장, 사무차장, 국장(5), 부국장(5), 실장(3), 과장(26):5국 3실 26과
 - - 정원 : 486명
 - 1963.03

- 감사원법(법률 제1286호) 제정 공포 - 지위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소속하며 직무에 관하여 독립
- 1963.01
-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19조의 2에 감사원 설치근거 마련
- 1962.12
- 제3공화국 헌법 제92조에 감사원 설치근거 마련
- - 임무 : *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 지위 : 대통령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소개

목적 및 설치근거

감사원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운영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감사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감사원법」 제4조 제5항 및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기능

다음 사항을 심의(「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의 권한 및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위원 구성 방식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감사70주년

서편 감사제도의 역사

목차

발간사	004
현임원 소개	010

서편 감사제도의 역사

제1절 개설	019
제2절 삼국시대와 발해의 감사제도	020
제3절 고려시대의 감사제도	027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049
제5절 근대 감사제도	089

제1편 감사 70년 개관

제1절 개설	108
제2절 감사조직의 변천	112
제3절 감사직무의 변천	119
제4절 감사운영과 성과	130

일러두기

1.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및 의미 전달상 필요시에는 영문과 한문을 병기하였다.
2. 모든 표기는 한글맞춤법과 외래어 표기 규정에 따랐다. 다만, 현재의 맞춤법 규정에 맞지 않은 표기방식이 고유명사로 사용 되었을 경우에는 역사기록의 취지를 살려 원래의 표기를 따랐다.
3. 역사 기술의 객관성을 높이고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제도, 기관, 조직 등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명칭에 따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재의 명칭을 병기하였다.

제2편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시대

제1장 심계원(1948~1963년)

제1절 개설	157
제2절 심계원의 발족	159

제3절 심계원의 조직	162
제4절 심계원의 직무	175
제5절 심계원의 활동	189
제6절 결산검사보고	196
제7절 제도의 정비	197
제8절 교육 및 연구활동	209
제9절 특기사항	212

제2장 감찰위원회(1948~1955년)

—

제1절 감찰위원회의 발족	215
제2절 감찰위원회의 조직	217
제3절 감찰위원회의 직무	220
제4절 감찰활동	223
제5절 감찰위원회의 폐지	232

제3장 사정위원회(1955~1961년)

—

제1절 사정위원회의 발족	237
제2절 사정위원회의 조직	238
제3절 사정위원회의 직무	240
제4절 사정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논란	243
제5절 조사활동	244
제6절 사정위원회의 폐지	245

목차

제4장 감찰위원회(1961~1963년)

—

제1절 개설	247
제2절 감찰위원회의 발족	248
제3절 감찰위원회의 조직	252
제4절 감찰위원회의 직무	258
제5절 감찰활동	266
제6절 특기사항	270

제3편 감사원의 발족과 위상 정립

제1장 감사원의 발족과 체제 정비(1963~1971년)

—

제1절 개설	281
제2절 감사원의 발족 과정	284
제3절 감사원의 조직	293
제4절 감사원의 직무	311
제5절 감사활동	333
제6절 감사역량 제고	361
제7절 감사체제 정비와 지원업무	367

제2장 서정쇄신 지원과 자체기강 확립(1971~1980년)

—

제1절 개설	383
제2절 조직과 직무의 변동	386
제3절 감사활동	410

제4절 감사역량 제고	467
제5절 지원업무와 특기사항	480
제3장 감사업무 과학화와 국제화 추진(1980~1988년)	
—	
제1절 개설	497
제2절 조직과 직무의 변동	500
제3절 감사활동	529
제4절 국제협력 활동	603
제5절 감사역량 제고	616
제6절 지원업무와 특기사항	635
제4장 국민편익 증진과 원 위상 정립(1988~1998년)	
—	
제1절 개설	651
제2절 감사원법의 개정과 원 위상 정립	654
제3절 조직과 직무의 변동	663
제4절 감사활동	699
제5절 국제협력 활동	768
제6절 감사역량 제고	776
제7절 지원업무와 봉사활동	798

제1편 감사 70년 개관

1948 - 2018

심계원 청사



1948

경북중 남서쪽 청사
1948. 9. 4. (발족) - 1951. 1. 4.



1951

구 부산시 청사(부산 피난사절)
- 심계원 2층 일부 사용
1951. 1. 5. - 1953. 8. 11.
- 검찰위원회의 3층 일부 사용
1951. 1. 5. - 1954. 5. 19.



1953

을지로 청사
1953. 8. 12. (관도) - 1963. 3. 19.

제 1 편

감사 70년 개관

감찰(사정)위원회 청사



1948

태평로 청사
1948. 8. 28. (발족) ~ 1951. 1. 4.
1962. 9. 19. ~ 1963. 3. 19.

- 제1절 개설
- 제2절 감사조직의 변천
- 제3절 감사직무의 변천
- 제4절 감사운영과 성과



1955

구 중앙청 북서쪽 청사(4층 사용)
1955. 11. 2. ~ 1960. 8. 31.



1964

경주 청사
1964. 7. 28. ~ 1965. 1. 1.



1964

경주 청사
1964. 7. 28. ~ 1965. 1. 1.

01 | 제1절 개설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기능은 국가의 재정과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기능을 중요시하여 왔다. 실사 감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능은 유지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오랜 감사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인 신라의 사정부(司正府)로부터 고려시대의 어사대(御史臺)와 조선시대의 사헌부(司憲府)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업무를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하여 왔다. 이 점에서 감사원의 역사적인 배경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감사기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설치된 심계원(審計院)과 감찰위원회(監察委員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계원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헌법 제95조에 따라 국가의 결산검사 업무 담당 기관으로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후, 그 해 9월 4일에는 明濟世 초대 심계원장이 임명되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 4일 「심계원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사무처의 조직 설치와 직원 총원 등의 준비를 거쳐 1949년 1월부터 국가의 회계에 대한 검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1953년 3월에는 「계산증명규칙」을 제정하여 서면감사제도를 도입하였고, 1957년 7월에는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명백히 하고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책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국가회계검사에 관한 뼈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심계원법」을 개정하였으나 그 직무의 내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심계원은 정부수립 초기 정치·사회 부문의 혼란과 부패 그리고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4년 6개월간 존속하면서 회계사무 상의 위법부당사항을 밝혀내고 관계자에게 변상관정을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등 재정제도의 정비와 회계 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한편, 감찰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에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설치근거가 마련된 후 그 해 8월 28일에 鄭寅普 초대 감찰위원장이 임명되었고, 이를 뒤인 8월 30일에 직제를 마련하는 등 업무를 개시하였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 등을 감찰하였는데 정부수립 초기의 사회적 혼란 등으로 감찰활동에 다소 제약이 따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찰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의 정부양곡매입비 예산 유용사건과 상공부장관의 수뢰 사건을 밝혀내고 파면의결하여 정부 수립 후 혼란하였던 공직사회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등 6년 5개월간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힘을 쏟았다.

그런데 상공부장관의 파면 처리와 관련하여 내각과 감찰위원회 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어 국무위원 측에서 감찰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결국 1955년 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원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나, 감사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위원회를 폐지하여 직원들은 모두 자동 면직되었다.

정부는 그 해 11월에 감사원 대신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사정위원회를 발족하여 1960년 8월까지 4년 10개월간 운영하였다. 사정위원회는 고위직보다는 주로 하위직 위주의 감찰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징계의결권이 없어 비리를 척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4·19 혁명 직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서 다시 감찰위원회를 두기로 함에 따라 사정위원회가 1960년 8월에 폐지되고, 1961년 1월에 「감찰위원회법」이 제정되어 그 해 3월에 감찰위원회가 새로이 발족되었다.

그러나 감찰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고, 위 위원회는 군사정부 하에서 본격적인 감찰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행정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국영기업체 및 그 기관의 소속 임직원의 직무상 비위까지로 감찰범위가 확대되어 비위의 근원적 제거에 중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하였다.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원대상 공무원의 부당 선정사건, 지시·통첩의 중복·비능률 사건, 토지개발조합의 부정공사 비리사건 등을 밝혀내고 이에 대하여 시정 혹은 개선을 요구하거나 징계조치하여 공직기강 쇄신과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회계사무와 직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들을 서로 따로 떼어 감사하기 어려운 속성으로 인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각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데 따른 업무상 중복과 비능률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963년 1월에 개정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서 두 기관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통합하여 감사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3월 20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소속하에 감사원이 발족되어 12월 17일 제3공화국 헌법

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감사원의 설치, 직무, 권한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감사원은 적은 감사인력과 예산으로 감사대상 기관과 인원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중요한 분야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 파급효과로 전체적인 시정·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경제담당부처와 사업관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과 계획이 일관성 있고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감사제도 확립에 힘을 기울이고 감사원규칙을 제정하는 등 체제 정비에도 힘썼다.

1970년대에는 공직사회에 만연되었던 부조리를 퇴치하고자 정부의 서정쇄신 추진을 강력히 지원하고 자체기강 확립에도 힘쓰는 한편, 서면감사를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정확 등 회계질서의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공직사회 정화와 새로운 감사원상 정립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성 감사와 정책개선 감사를 발전시켜 정부시책 등을 능률적·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아시아지역 감사원장회의(ASOSAI) 총회 개최를 계기로 각종 국제 세미나 개최, 세계 감사원장회의(INTOSAI) 총회 참석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선진감사기법 등의 연구에도 노력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에 주력하여 국민들의 애로·불편 사항을 근원적으로 시정하는 데 노력하였고 부실공사의 방지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또한, 성역 없는 감사수행과 「감사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위상 정립에도 힘썼다.

1997년 말에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등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래서 1998년 이후에는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난극 극복을 위한 투자 애로 요인 해소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 운용 및 감독 등에 감사역량을 총결집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가 주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감사와 주요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감사에 진력하였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기업불편신고센터 및 감사청구조사단 설치, 감사결과 공개 등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2010년대에는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감사 운영 전

반에 대한 혁신을 실시하여 감사프로세스 전반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공직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 70년을 돌아볼 때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과 행정운영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02

제2절

감사조직의 변천

심계원,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감사원 등 우리나라의 역대 감사조직의 특징을 보면, 모두 원장 또는 위원장을 포함한 심계관회의, 감찰위원회, 사정위원회, 감사위원회의 등 합의제 형태를 취하였으며 서무 및 감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이 모두 합의제로 운영되었던 것은 그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하고, 신중한 업무처리로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1. 원장과 위원회의

심계원은 원장, 차장을 포함한 심계관 7명(1961년 9월 이후에는 5명) 이내로 심계관회의를 구성하였다. 심계원장을 비롯한 심계관의 임명 등에 관해서는 「심계원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었으며 연임이 가능하였다. 5·16 군사정변 후인 1961년 9월에는 「심계원법」을 다시 제정하여 심계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심계관은 심계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심계관의 임용자격은 「심계관, 검사관 및 부검사관 자격규정」(대통령령 제56호)에 따라 심계원 검사관, 3급(현재의 4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법관·검찰관 또는 변호사, 경리사무 경험자로서 각각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등이었다. 특히 1961년 9월 제정된 「심계원법」에 이를 명문화하면서 경리사무 경험자를 계리사에 한정하였고, 장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였다.

심계관은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계원법」에 임기 중의 신분보장 규정이 있었는데 형의 선고,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

니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는 심계관 등의 징계에 관하여 「심계관 및 감찰위원 징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고, 감사원 발족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4·19 혁명 이후 1960년 6월에 심계원장과 심계관 3명이, 5·16 군사정변 이후 1961년 5월에는 심계원장이 각각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사실이 있었다.

심계원은 헌법상 임무인 결산검사보고 이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매년도 심계결과보고와 심계결과 변상판정·그 재심, 개선요구, 의견진술, 심계원 규칙의 제정 등을 심계관회의에 부의하다가 1961년 9월에는 부의대상을 확대하여 위탁 심계할 기관과 그 범위, 처분요구와 그 재심, 예산요구 및 결산, 사무총국장·3급(현재의 4·5급) 이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도 심계관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감찰위원 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원들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였다. 감찰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감찰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심계원 심계관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 또는 비행에 대하여 심사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

사정위원회도 위원장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제로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임명절차, 임기와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바 없었다. 사정위원회는 조사결과 비위내용의 통보사항 등을 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감찰위원 7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은 「감찰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되,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61년 8월에는 위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감찰위원의 임용자격은 1961년 1월 14일 제정한 「감찰위원회법」에서 청렴 공정한 자로서 판·검사 또는 변호사, 2급 이상의 입법·행정·사법기관 재직자, 대학 부교수 이상의 자로서 각각 일정한 근무연한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 장관, 차관 경력자, 학식·덕망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다. 그 해 8월에 장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고 국회의원, 장관, 차관 경력자를 제외하였다.

감찰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은 심계원의 심계관과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 4명이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사실이 있었다.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에 대한 징계 의결, 국무총리와 국회에 대한 보고, 심계원에 통보할 사항, 3급(현재의 4.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감찰위원회규칙의 제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였고, 1961년 8월부터는 최고회의의장에게 보고할 사항, 청원서 중 중요한 사항과 업무분장사항도 부의하였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9명(1971년 이후에는 7명)으로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였다. 감사원장은 감사원 발족 시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의장이,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최고회의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감사원법」에 규정하였고, 임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서 원장은 1차에 한하여,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72년 12월 헌법 개정 시에 원장과 감사위원의 연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1980년 10월 헌법 개정 시에는 1차에 한하여 증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원장과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1987년 10월 헌법 개정 시에는 이듬 해 2월 25일 이후에 감사원장을 새로이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63년 12월부터 시행된 「감사원법」에서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99년 8월 「감사원법」 개정 시 감사원장의 정년을 70세로 변경하였다.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은 「감사원법」에서 1급 또는 2급(현재의 2.3급) 이상의 공무원,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법률학 또는 경제학의 부교수 이상, 영관급 이상의 현역장교로 각각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였다. 그 후 1995년 1월에는 부교수의 전공제한을 없애고, 영관급 이상의 현역장교를 제외하였으며 2004년 3월에는 상장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각각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라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을 종전 1급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변경하였다.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감사원법」에 규정하였다. 탄핵이나 형의 선고의 경우는 당연히 퇴직하고,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1971년 8월에 감사위원 6명, 1980년 7월에 감사위원 2명, 그 해 9월과 1993년 2월에 감사원장, 3월에는 감사위원 3명, 1997년 7월에 감사

위원 1명, 2008년 5월에 감사원장, 2009년 1월, 2월과 12월에 감사위원 4명, 2010년 9월에 감사원장, 2011년 5월과 10월에 감사위원 2명, 2012년 2월과 11월에 감사위원 2명, 2013년 6월에 감사위원 1명, 그 해 8월에 감사원장, 2017년에 감사위원 1명이 각각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사실이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과 검사보고, 감사결과 변상판정, 처분요구와 그 재심의, 심사결정, 의견진술, 감사원 규칙의 제정·개폐, 예산요구·결산, 사무총장·1급·2급(현재의 2·3급) 공무원의 임면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였다가 1963년 12월부터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와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1995년 1월부터는 감사원의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권고 등에 관한 사항,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과 4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사항까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였다.

2. 사무처 등

심계원, 감찰위원회, 감사원은 서무 및 감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관서와 같이 각 국·실·과를 두었고 사정위원회는 부와 과를 두었다. 감사사무는 각 국·과에서 감사대상이 관별로 분장하다가 감사원에서는 1977년도 이래 일부 감사사무에 대하여 기능별로 분장하였다.

심계원은 원장, 차장 아래 사무총국을 두어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관장하게 하였다가 1957년 7월에 사무총국장제를 폐지하여 차장이 이를 관장하였으며, 1961년 9월에는 차장제를 폐지하고 다시 사무총국장제를 채택하였다.

심계원 발족 당시에는 사무총국에 4개의 심계담당국을 두어 회계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비서실을 두었다. 그 후 비서실을 없애고 총무과를 설치하는 등 여러 차례의 직제개정을 거쳐, 1952년 7월에 4개 심계국에 13개 과를 설치하고 각 과에서 중앙관서별로 심계사무를 분장하였다. 이 국·과제(局課制)가 그 후 발족한 감사원의 국·과 사무분장제의 연원이 되었다. 1961년 9월에는 사무총국장 아래에 4개 심계국과 총무과, 기획과, 심의과, 기술과를 두고 각 심계국에 3개 과를 두는 것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정원은 발족 당시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총 99명이었고, 1950년 3월에 정부의 감원방침에 따라 67명으로 줄었다가 6회에 걸쳐 다시 증원되어 1963년 3월에 감사원으로 통합될 때에는 총 224명이었다. 직원은 대부분 추천에 따라 특별 채용하거나 다른 부처에서 전입받아 충원하였다. 그러나 부산 피난시절인 1952년과 환도 후인 1955년에는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고, 1958년 이후에는 수습행정원 출신을 채용하였으며, 1961년 이후에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비서실과 감찰국을 두고, 비서실에는 비서관, 서무과, 회계과를 두었으며, 감찰국에 정보과와 서기과를 두어 감찰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50년 4월에는 비서실을 없애고 총무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맡게 함과 동시에 감찰국 정보과의 명칭을 조사과로 변경하였다.

정원은 발족 당시에 위원장을 비롯하여 직원 총 6명이었으며 그 후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 직원은 다른 부처 등으로부터 감찰 등 업무를 담당하던 유경험자를 전입받거나 추천에 따라 특별 채용하여 충원하였다.

사정위원회는 총무과와 4개 조사담당부를 두었고, 각 부의 장은 사정위원이 겸임하여 중앙관서별로 조사업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직원 총 34명이었으며 그 후에도 큰 변동은 없었다. 직원은 최초의 감찰위원회가 폐지될 때 일괄 퇴직하였던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였다.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총무과와 5개 감찰담당국을 두어 중앙관서별로 감찰사무를 분장하게 하였고, 1962년 2월에 각 국에 감찰과와 조사과를 두었다.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직원 총 55명이었다가 직제를 2회 개정하여 1963년 감사원에 통합될 때에는 총 157명이었다. 직원채용은 사정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많이 영입하였다.

감사원은 발족 당시부터 사무처를 두어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서무와 감사사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차관급)과 사무차장(차관보급) 1명을 두었고, 5개의 감사담당국과 각 국에 5개 과씩을 두어 중앙관서별로 감사사무를 분장하게 하였으며, 지원부서로서 총무과, 기획실, 심의실, 기술실을 두었다. 또 각 국·실에 부국장·부실장을 두기도 하였다.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친 후 1971년 8월에는 부국장과 부실장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968년에는 원장 비서실장을, 1973년과 1975년에는 공보관과 비상계획관을 각각 두었다.

1977년 2월에 기술감정 업무만을 담당하던 기술실을 감사활동부서로 전환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회계검사 업무도 분장하게 하였다. 그 해 8월에는 감사담당국의 감사사무를 기능별로 나누어 직무감찰은 제5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시설공사를 제외한 회계검사는 나머지 4개 국에서 각각 분장하게 하였다. 1981년 11월에는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1개 국(제4국)을 폐지하고 과도 25개에서 20개로 줄였다.

1985년 8월에는 심의실의 교육연구담당관을 감사교육실로 승격하고, 1987년 11월에는 기술실을 기술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89년 12월에는 제4국을 부활시켜 정부투자기관과

기업관서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990년 12월에 기획실을 기획관리실로, 감찰담당관을 감찰관으로 승격하였다.

1993년 3월에는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감찰 담당국인 제5국의 국장 밑에 심의관 2명을 두고 과도 3개에서 7개로 늘렸다. 그 해 8월에는 나머지 5개 국에도 심의관을 각각 2명씩 두고, 국 정원은 그대로 둔 채 각각 5개 과에서 7개 과로 늘림으로써 대과(大課) 체제에서 중과(中課)체제로 전환하였다.

1995년 2월에는 개정된 「감사원법」에 따라 사무차장을 복수화하여 제1차장은 제1국~제4국을, 제2차장은 제5국~제7국을 각각 지휘하게 하였다. 아울러 사무처 소속이던 감사교육실을 사무처에서 분리하여 감사원장 소속의 감사교육원으로 승격·개편하였고, 민원업무 효율적으로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제6국을 신설하였다.

1998년 3월에는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따라 7개 국에서 6개 국으로 축소하고, 심의관도 10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였다. 한편, 제4국장 소속인 대형공사전담반을 심의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책사업감사단으로 개편하여 그 소속에 3개 과를 설치하여 제1사무차장 소속으로 두었다. 그 해 9월 1일에는 제6국의 심의관과 1개 과를 줄여 대전사무소를 신설하였다.

2000년 1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수요 증가로 제7국을 증설하여 기존 제6국과 함께 2개 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 해 12월에는 심의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문화감사단을 설치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기존의 제1국~제7국 등 숫자로 표시하던 국 명칭을 담당업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재정·금융감사국, 산업·환경감사국, 건설·물류감사국,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보감사국, 자치행정감사국, 특별조사국으로 변경하고 일부 국에 총괄과를 두었다.

2005년 7월에는 감사원에 평가연구원(現 감사연구원)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국가전략사업평가단과 특별조사국을 전략감사본부와 특별조사본부로 개편하는 등 본부·팀제를 도입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결산검사대상 공공기관의 확대에 대비하여 결산감사 본부를 신설하였다.

2009년 2월에는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3월에는 부산광역시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공백 우려와 정부회계 복식부기의 도입 등 국가결산제도의 변화에 따라 자치행정감사국 소속으로 자치감사기획관을, 행정·안보감사국 소속으로 국방감사기획관을 신설하고, 재정·조세감사국과 산업·금융감사국 및 연·기금감사단을 재정·경제감사국과 금융·기금감사국으로 통합·개편하였다.

2010년 7월에는 직무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설하고 「공공감사에 관

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공공감사운영단을 신설하였다.

2013년 7월에는 외부의 감사수요 대응 및 국민 불편·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감사청구조 사국 내에 국회감사요구사항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수원시·대구 광역시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2014년 8월에는 IT 및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 강화를 위해 IT감사단을 신설하고, 국민안전과 관련된 감사의 총괄 기능을 행정·안전감사국으로 일원화하였다. 감사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성과제도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확대·개편하고, IT기반 감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찰정보단을 첨단감사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지방행정감사국을 1국 5과에서 2국 8과로 확대하고, SOC·시설안전감사단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상시적인 감사혁신을 전담하도록 혁신전략담당관을 신설하였고, 감사결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이행관리과를 신설하였다.

정원은 감사원 발족 시에 별정직 12명, 일반직 369명, 고용원 105명, 계 486명으로서 별정직과 일반직의 정원은 폐지되기 직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정원 합계와 같았다. 1995년 2월에 감사교육원을 신설하여 정원 37명을 증원하고, 2005년 7월에 평가연구원(현 감사연구원)을 신설하여 정원 40명을 증원하는 등 그동안 48회에 걸쳐 정원을 조정하여 2018년 1월 말 현재 정무직 및 별정직 8명, 일반직 1,072명으로 모두 1,080명이다.

감사원은 발족 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직원 대부분을 인수하였고, 그 후 각 부처로부터 경력직원을 전입 받거나 특별채용하여 증원하였다. 1971년에는 종래 추천 위주의 증원방법을 탈피하여 감사직 4급 음류(현재의 7급) 공개채용시험을 시행하여 이듬 해 3월에 46명을 채용한 이래 매년 공개 채용하였다. 1975년부터는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를 전입 받았으며 1977년부터 1988년까지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특별 채용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박사 등 전문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도 수시 전입 또는 신규 채용해 왔다.

03

제3절

감사직무의 변천

1. 결산검사와 보고

심계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마다 검사,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된 「헌법」에 따라 1948회계연도부터 1961회계연도까지, 감사원은 1962회계연도 이후 해마다 결산검사 결과를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보고하였다.

심계원은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을 검사결과에 의하여 확인하되, 계산증명책임자가 제출한 계산서와 한국은행이 제출한 국고금출납계산서 등과 대사하였고, 이러한 결산검사제도는 감사원에 계승되었다. 감사원은 더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1976년에 검산실을 두어 각종 계산서를 검산하고 증거서류와 대사하였으며, 1980년부터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계산서 등을 대사하고 계수의 불일치, 오류 등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규명하였다.

심계원은 결산검사보고를 「결산검사보고 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작성하다가 1961년 9월에는 이 보고에 실을 사항 등을 「심계원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 후 감사원에서도 「감사원법」에 이와 비슷하게 규정하였는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결산금액과 한국은행 계산서 금액과의 부합여부, 회계검사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예비비 지출, 유책판정, 징계·문책·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그 집행결과 등을 결산검사보고에 신도록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1년 동안의 재정 집행 전모를 파악하고 다음 연도 예산 심의와 정책 결정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보고의 작성체제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하고 해마다 실는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08회계연도까지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세입·세출의 결산을 해오다 2009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추가되었고, 2011회계연도부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가 추가되어 감사원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실

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산감사보고에는 중앙관서 대상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분석 결과, 재정규모와 변동 추이, 부문 또는 프로그램별 예산 운용 등 재정운용 실태 분석 결과, 국가 전체 및 관서별 재정상태(자산, 부채)와 운영성과(수익, 비용) 및 그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결과 등과 감사원이 실시한 주요 감사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총래 14개 정부투자 기관에 그쳤던 공공기관 결산검사대상이 「감사원법」상 필요적 검사대상에 속하는 법인과 감사원 규칙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는 2007회계연도에 20개 기관, 2008·2009회계연도는 21개 기관, 2010회계연도에 20개 기관, 2011·2012회계연도에는 22개 기관, 2013회계연도 이후로는 23개 공공기관의 결산과 경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하였다.

2. 회계검사

「심계원법」에서 심계원의 심계대상과 범위를 처음에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정부보조단체, 특약보조단체, 국영과 정부투자단체,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와 국고은행의 국고수지에 관한 회계 등으로 정하였다. 그 후 1961년 9월에 심계대상을 필요적 심계사항과 임의적 심계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필요적 심계사항은 “국가기관의 회계, 국가가 직·간접으로 보조·보증 또는 투자한 단체와 국가관리재산의 회계,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의 회계”로, 임의적 심계사항은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 심계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회계”로 각각 규정하였다.

「감사원법」에서도 「심계원법」의 내용과 같이 회계검사 대상을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필요적 검사사항은 “국가기관의 수입·지출, 국가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유가증권·국유재산의 수불, 국가 채권 및 채무, 한국은행이 취급하는 현금·귀금속 및 유가증권의 수불,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등으로 정하고, 선택적 검사사항은 「심계원법」상의 임의적 심계사항 외에 “국가가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한 자와 이를 교부받은 자가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이 출자한 자와

국가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등으로 정하였다.

그 후 1963년 12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보관하는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을 필요적 검사사항에 추가하였다. 1973년 1월에는 필요적 검사사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의 회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사하도록 규정하였는바, 필요적 검사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를 추가하고 선택적 검사사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대부금 등 재정부조를 공여한 자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등을 추가하였다.

그 후 1995년 1월에 선택적 검사사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출연금을 교부한 자의 회계, 그 출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보조한 자의 회계”를 추가하였다.

심계원에서 심계대상기관 수를 파악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감사원이 발족한 후에는 대상기관 수를 해마다 파악하였다.

1963년에는 국가기관은 3차 관서까지 기관수로 계산하고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등은 본부 단위로 파악한 결과 필요적 검사대상기관이 2,167개 기관이었다. 그 후 재정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파악방법의 변경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일선기관(파출소, 학교, 里·洞 등)과 공공기관 기타 단체의 지점까지 기관 수에 산입한 결과 2018년 1월 1일 현재 감사대상기관은 총 6만 6,315개에 이르고 있다.

3. 직무감찰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비행 등을 감찰하였고, 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으며 1961년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위를 주로 감찰하였는데,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등 그 개념과 역할이 변화였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법관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사정위원회는 조사대상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므로 행정부 내의 공무원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공무원과 행정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의 직무상 비위, 국회의 요청 사항

을 감찰대상으로 하다가 그 해 8월에 행정기관, 국영기업체, 정부가 임직원을 임명 또는 임명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공무원, 임직원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군기관과 교육기관 포함)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법령에 따라 공무원(국가재건최고회의, 국회와 법원 소속 공무원 제외)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를 감찰하였다.

1973년 1월에 직무감찰사항을 확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한국은행, 「민법」 또는 「상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 또는 임명승인하는 단체의 사무와 그 임원의 직무” 등을 감찰사항으로 추가하였다. 그 후 1995년 1월에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를 직무감찰사항으로 추가하고,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제외시켰다.

4. 감사방법

심계원은 서면심계, 실지심계, 위탁심계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심계업무를 수행하였고, 감사위원회와 사정위원회는 실지감찰(조사 포함)을 하였다. 감사원은 심계원과 거의 비슷한데, 서면감사와 실지감사(자료수집, 예비조사 등 포함)로 크게 나누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대행·위탁·생략 등의 방법도 활용하고 있다.

(1) 서면감사

심계원은 심계대상기관으로부터 계산증명서류와 각종 심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대사·비교분석·검토하는 등 서면심계를 상시 수행하였고, 감사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면감사를 하고 있다. 심계원은 처음에 「재정법」에 규정된 일부 계산서를 제출받다가 1953년 3월에 「계산증명규칙」을 제정하여 심계대상기관 등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계산서, 증거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계산서는 세입징수액계산서, 지출계산서 등 2종이었고, 증거서류로는 회계 집행 등 모든 증빙서의 원본을 제출하게 하였다.

심계원이 서면심계한 계산서와 증거서류의 수량은 1956년도까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1957년도에는 2,154개 증명청이 제출한 계산서가 1만 8,074책, 증거서류가 2만 3,100책이었다. 그 후 해마다 비슷한 수량의 계산서 등을 제출받았으며, 또 손망실 통보, 계약체결 통보, 국유재산교환 통보 등을 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였다.

감사원도 심계원과 마찬가지로 「계산증명규칙」을 제정하여 각종 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하고 있다.

계산증명서류의 수량은 1963년도에 계산서 1만 7,139책과 증거서류 648만 장이었으나, 그 후 국가재정의 확대 등으로 1979년도에는 계산서 7만 8,412책, 증거서류 2,001만 장으로 늘어나는 등 그 수량이 해마다 늘어났다.

처음에는 감사담당 국·과의 감사요원이 각종 계산서 등을 검산하였으며, 1976년에는 주산 능력이 있는(유단자) 계리인들을 채용하여 검산하게 하다가 1980년부터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계산서 등의 검산대사업무를 처리하였다.

1980년에는 인건비·여비지급 등 일부 증거서류의 제출을 생략하였고, 1982년 7월부터는 증거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게 하는 한편 서면감사에 특히 필요한 지출부 사본, 물품이나 용역의 계약체결상황표, 조서·부표 등을 지정하여 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1983년도에는 제출된 계산서는 7만 9,955책으로 늘어난 반면, 증거서류는 대폭 감축되어 117만 장에 불과하였다. 그 후 1993년 7월부터 지출계산증명서류는 서류와 함께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게 하다가 1995년 8월부터는 전산디스켓만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1997년 7월에는 세입징수액계산서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도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세입징수액과 지출계산서를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하여 계산증명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여왔다.

그 밖에도 「재정법」, 「예산회계법」, 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각종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대상과 절차를 계속 간소화하였다. 1964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계약협의·승인 통지사항 8만 6,396건, 망실·훼손 통보사항 1만 599건, 범죄발생·징계 통보사항 5만 8,351건을 각각 접수하여 서면감사하였다.

(2) 실지감사

심계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산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서면심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심계를 실시하였다. 실지심계 시에는 출장 직원이 금고·증빙서류·장부 등을 점검·검토하고 실물과 장부의 대사, 진위확인·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지적된 위법부당사항의 대부분은 실지심계에 의한 것이었다.

감찰위원회와 사정위원회는 정보의 수집·분석과 실지감찰(또는 조사) 활동을 하였고, 각 지방 등에 정보원을 두어 정보 수집, 사전조사 등을 함으로써 실지감찰의 능률을 높였다.

감사원도 서면감사 결과 미심사항의 확인이나 현지조사, 점검 등이 필요한 기관에 직원

을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실지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 직원이 감사정보를 수집하며, 실지감사 실시 전에는 필요한 각종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감사의 효율을 높이고자 1981년에 역점감사, 1982년에는 전문감사, 1983년에는 설문감사비교감사총괄감사, 1984년에는 교체감사사전예고감사공개감사, 1985년에는 기동감사전산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개발하여 감사 때 활용하였다. 특히 종래에는 합법성 감사에 치중하였으나 1982년에는 효율성 감사를, 1985년부터는 정책개선 감사를, 1994년에는 성과감사를 도입하였다. 2004년에는 정부 주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감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를 도입하고 이를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감사의 대행(위탁)과 생략

심계원은 「심계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각 기관의 장에게 그 감독에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회계에 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었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심계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서 처음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1963년 12월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심사하여 그 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되면 결산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72년 5월에는 「자체감사의 심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심사기준이 되는 감사사항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한 후 감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1977년 3월부터 감사원 지침으로 관계 중앙관서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대행 또는 위임 실시하는 감사방법을 채택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1983년 12월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서 주무부장관 등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감사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5년 1월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감사사무의 대행제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였다.

아울러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을 제정하여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공공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5. 감사결과 처리

심계원은 심계결과 밝혀진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하거나 징계, 문책, 정정(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비행이 있을 때 사실을 심사한 후 징계를 의결하였고,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공무원 등의 비위사실을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 한편, 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임명권자 또는 징계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보(징계에 해당함을 명시)하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하는 외에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1995년 1월에는 필요시 관계기관에 권고나 통보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처리방법은 심계원과 비슷하다.

(1) 변상판정

심계원은 「심계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납책임자가 행한 계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책임해제의 판정을 하고,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책임을 판정하였다. 처음에는 출납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한 「재정법」을 근거로 변상판정을 하였다.

1957년 7월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하여 출납공무원 이외에 재무관, 지출관, 물품출납명령관 등도 변상판정 대상으로 하였고, 단체 등의 회계사무 집행자와 회계관계 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한 상사도 변상판정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1962년 2월에는 세입징수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 등을, 1981년 12월에는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기금출납명령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을 각각 추가함으로써 변상판정 대상이 대부분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확대되었다.

물품망실 등의 경우 처음에는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64년 7월부터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였고, 1982년 2월에는 현금 외에 현물로도 변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2001년 4월부터는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했던 책임을 면제하였고, 변상판정액을 정할 때에도 정상참작의 여지를 두어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회계관계직원이 중앙관서 장 등의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2) 징계·문책 요구

심계원은 심계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고의로 심계를 방해한 자와 소정의 계산서, 증거서류와 보고서의 서식 또는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이 있을 때 징계를 의결한 후 소속 장관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를 조사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의결내용이 파면인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의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 또는 임명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문책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3) 시정·개선 등 요구

심계원은 심계의 결과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문책·징정 등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당초 「심계원법」 규정에 따라 추징·회수보전, 기타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법률상 또는 행정상 개정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각 주관책임자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1957년 7월에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기타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심계원법」에서 처분요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1961년 9월에는 법령상·행정상 개선 외에 제도상 개선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감사원은 심계원에서도 같이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선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지감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다가 1973년에 이 제도를 없앴는데, 1981년에는 다시 경미한 사항 등에는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통보와 권고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국무위원 등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결 시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는 단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임명권자와 징계위원회 등에 보고 또는 통보하였는데, 징계에 해당함을 명시한 통보는 사실상 징계요구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비위로 인하여 국고금 기타 공금 또는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망실훼손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계원장에게 통고하여 변상판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시정,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처음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비위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대상기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1981년부터 지침 등에 따라 운영하였는데, 1995년 1월에는 권고 또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에 명문화하였다.

(5) 고발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하였다. 1961년 9월에 「심계원법」에서 고발을 명문화하였고, 「감사원법」에서도 고발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처음에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아 고발하였고, 감사반장이 구두보고한 후 현지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많았다. 1994년 12월에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하도록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거나 사전보고 후 수사의뢰할 수 있게 하였다.

6. 감사관련 업무

(1) 재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적법, 타당한 처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처리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심계원, 감찰위원회(1961년 발족)와 감사원에 재심(의)제도를 두었다.

심계원으로부터 변상판정을 받은 자는 심계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심계원이 직권으로도 재심할 수 있었다. 1961년 9월에는 이를 확대하여 징계, 문책, 시정, 주의 등의 처분요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초의 감찰위원회는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는데, 1961년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감찰결과 징계의결서를 받은 본인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처음에 변상판정, 징계처분의 요구 또는 직권재심을 한 사항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1963년 12월 그 밖에 시정·주의·개선 요구사항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재심의 등 처리실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감사원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한 해에 최고 96건에 이른 때도 있었으나 1980년 이후 대폭 줄어들어, 1987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1993년 이후 다소 늘어 1998년에 28번 건의 청구가 접수된 때도 있었지만 2003년까지는 대체로 연간 10여 건의 청구가 접수되었다. 그 후, 2004년부터 연간 20여 건으로 늘어다가 2008년 58건으로 급증한 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심사청구 처리

심사청구는 감사원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주로 행정작용의 타당성 보장을 목적으로 채택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를 심사하여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통지하여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심사청구의 처리건수는 이 제도가 생긴 1963년에는 51건이던 것이 점차 증가하여 1971년에 482건에 이르렀고, 1976년부터는 줄어 1988년에 106건으로 가장 적었다가 그 후 다시 늘어나 1994년 이후에는 해마다 428건 내지 475건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심사청구 건수는 1999년에

1,0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는 대체로 연간 300건 내외의 양상을 보였다. 그 후 2010년 74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1,358건으로 다시 증가한 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3) 의견 표시

심계원은 회계관계법령에 관하여 공포 전에 통지를 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며, 1961년 9월부터는 국가의 각 기관이 회계관계법령을 제정·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심계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국가기관은 국가의 회계경리에 관한 법령이나 국가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출납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령안을 감사원에 반드시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의견 표시 대상이 회계관계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국한됨으로써 직무감찰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 감사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1995년 1월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하거나 자체감사 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에도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다.

한편, 회계사무 담당자의 회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심계원은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었으나 이를 답변하였다. 감사원은 회계사무 담당자가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을 때 이를 답변하도록 「감사원법」에 명문규정을 두었다.

04 | 제4절

감사운영과 성과

감사운영은 감사기관의 직무범위, 시대상황, 원장(또는 위원장)의 원 운영방침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고, 그 성과도 각각 달랐다.

1.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시대

(1) 심계원(1948~1963년)

건국 초기에는 재정집행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공무원의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심계원은 회계관계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도록 그 집행을 감독하고 심계방법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회계관계 법령의 제정과 개폐 시에 의견을 개진하여 올바른 회계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고 이를 '심우'라는 심계원 발간 잡지를 통해 널리 알리며 회계처리의 합리화를 유도하고자 힘썼다.

처음에는 하급직인 출납공무원 등이 현금 출납이나 보관을 소홀히 한 경우 변상책임을 부과하다가 1957년에는 재무관, 지출관 등 상위직 공무원에게도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 지출 기타 모든 정부의 재정활동에는 반드시 회계검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심계활동을 철저히 전개하였다.

그리고 역대 원장들은 심계원 직원들이 먼저 바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는 취지 아래 '공정(公正), 염직(廉直), 위신과 올바른 실천, 검소와 노력' 등을 강조하였고, '파사현정 시범백세(破邪顯正 示範百世)' 등을 행동규범으로 삼도록 촉구하였다.

심계원은 1963년까지 14년 6개월간 존속하면서 심계결과 총 4만 3,721건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변상판정이 3,570건(전체의 8.1%)에 2억 9천만여 원, 시정요구가 1만 7,793건에 추징회수보전금액이 19억여 원, 징계-문책 요구 인원이 1만 4,895명, 법령상-제도상-행정상 개선을 요구한 것이 179건이었다.



주요 심계결과

- ① 1949년에 내무부에서 호구조사부 7만 책을 제작구매했는데 약 1,200만 원을 고가 구매한 것을 지적하여 징계와 시정을 요구하였다.
- ② 1953년에 영세민에게 배급하여야 할 구호양곡 1만여 석을 특배 명목으로 권력기관 직원 등에게 나누어 준 것을 지적하고, 이를 수사하도록 하였다.
- ③ 1954년에 물수 양담배 35만여 갑의 부정 처분사건을 적발하여 관련자들을 문책하게 하였다.
- ④ 1955년에 군사원조물자인 휘발유 3천여 D/M을 허위 증빙서류로 불법매각한 후 착복한 것을 지적하여 변상조치하고, 최고책임자인 장군 등을 문책하도록 하였다.
- ⑤ 1958년에 「등록세법」에 등록세 징수의무자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서 납세의무자가 영수증을 변조하여 포탈한 세액이 3천만여 원에 이르는 것을 밝혀내고 세법을 개정하도록 개선요구하였다.
- ⑥ 1961년에 서울지방전매청 의주공장에서 켈린초 1억 1천만 본을 부정 불출한 것을 적발하여 관련자 8명을 해직시키고, 작업관리와 감시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2) 감찰위원회(1948~1955년)

감찰위원회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와 비위를 색출,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 수립 초기인 1948년 8월 28일에 처음 설치된 이후 특히 고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설립 초기에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이 예산을 유용하였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선거비용에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적발하여 그들을 파면의결하는 등 권력 핵심부와의 마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옮기고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서도 감찰활동을 계속 실시하였다.

1955년에 감찰위원회는 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해체되었기 때문에 6년 5개월간의 존속기간 동안 감찰활동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951년 이후에 징계의결한 기록이 관보 등에 남아 있어 이를 합산해 본 결과 징계인원이 총 241명이었

다. 그중 파면된 자가 전체의 53.1%에 이르는 128명이었고, 사무관급 이상의 상위직 공무원이 39.8%인 96명에 달하였다. 이렇듯 상위직을 중심으로 감찰하여 비리공무원을 파면 등으로 일벌백계함으로써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주요 감찰결과

- ① 1949년에 조봉암(曹奉岩) 농림부장관이 양곡매입비와 양곡운반비 1천여만 원을 유용한 책임 등을 물어 파면 의결하였다.
- ② 1949년에 임영신(任永信) 상공부장관이 유관업체로부터 45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선거비용에 쓰고 국가재산을 낭용한 책임 등을 물어 파면 의결하였다.
- ③ 1951년에 부산수상경찰서장과 옥천경찰서장이 정부양곡 6천여 포를 부정처분하여 횡령한 책임을 물어 파면 의결하였다.
- ④ 1951년에 농림부 양정국장 등이 생활보조용 소맥분 150포를 특배 명목으로 착복한 책임을 물어 감봉과 파면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3) 사정위원회(1955~1961년)

감찰위원회의 폐지 후 1955년 11월에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사정위원회는 중앙관서보다는 경찰관서와 세무관서 등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중점조사하였다.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고 징계의결권이 없어 비리 발생 시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으므로 강력한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일선 공무원의 비리를 많이 적발하여 처벌하도록 조치하였다. 사정위원회는 4년 10개월간의 존속기간 동안 총 455건의 비리를 임명권자 등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징계요청통보가 156건에 372명, 단속하도록 통보한 것이 211건, 참고하도록 통보한 것이 83건이고 고발한 것이 5건이었다.



주요 조사결과

- ① 1956년에 서울특별시 구청 공무원에게 지급할 지방세 징세상여금의 45% 상당을 시 세무과의 과비 또는 구청장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고 비위관련자 14명에 대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한편,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 ② 1957년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무자격자 97명에게 부정 발급한 것을 지적하여 시정함과 아울러 관련 장학사 3명을 면직 등 징계하도록 통보하였다.
- ③ 1958년에 57개 어업조합에서 어획물 판매 시 원천징수한 세금 중 5,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세금 1,000여만 원을 포탈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이를 추징하도록 시정함과 아울러 조합의 이사 등 116명을 처벌하도록 통보하였다.

(4) 감찰위원회(1961~1963년)

1961년 3월에 발족한 감찰위원회는 행정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직무상 비위 감찰에 힘을 기울이다가 점차 감찰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무 전반을 감찰하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때의 감찰위원회는 심계원과 최초의 감찰위원회 및 사정위원회가 비리 건별로 조사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조직 전체의 기강 등을 종합평가하여 보고 및 통보하는 특색이 있었다. 1963년 감사원으로 통합되기까지 2년간 감찰결과 총 212명을 징계처분하고, 2,692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326명을 고발하였다.



주요 감찰결과

- ①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6월에 군사정부의 공무원 감원(전체공무원의 26.1% 감원) 실태를 감찰하여 감원대상인데도 제외된 292명을 추가로 감원하게 하였고, 부당 감원된 107명을 복직하도록 하는 한편 334명을 재심하도록 하였다.
- ② 1961년 12월에 각 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첩 중복으로 인력시간경비가 낭비되는 것을 지적하여 행정조정위원회를 구성, 시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③ 1962년에 127개 토지개발조합의 부정공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여 공사의 무계획성 등으로 293억 원의 예산낭비와 비위관련자 2,437명을 밝혀내고 고발,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2. 감사원 시대

(1) 제3공화국 시대

감사원 발족 후 첫해에는 군사정부의 추진과업과 국민의 염원에 어긋나지 않게 감사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감사를 추진하였다. 회계검사는 개계 지출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출의 경제성 등을 검사하고, 행정감찰은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목표로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의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1964년부터는 경제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 발맞추어 사업관청이나 경제담당부처 등 주요 기관에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그 파급효과로써 전체적인 시정과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운영계획이 일관성이 있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

한편, 감사원의 기본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제도 등 각종 제도의 정비에 힘써 총 132개의 규칙·내훈·훈령·예규 등을 제정하여 감사원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감사기능 정착과 그 역량 제고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1971년 4월에는 을지로에서 삼청동 새 청사로 이전하여 감사원의 삼청동시대가 열렸다.

감사결과 1963년부터 1971년까지 9년 동안 총 5만 5,690건을 지적하여 176억여 원을 추징·회수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였고, 2,503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그 중 법령이나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 연간 평균 92건에 이르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63년에 대민행정업무에 대한 특별직무감찰을 실시하여 위법부당사항 430건을 적발하여 시정 또는 개선요구하고, 비위관련자 99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 ② 1965년에 전국적인 정부양곡 재고조사로 16만여 가마의 양곡 횡령·망실·변질사고를 적발하여 이를 변상하게 하고, 비리관련자를 고발조치하였다.
- ③ 1966년부터 1968년까지 세무관서의 과세자로 활용실태 감사를 하여 과세자료의 수집·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저한 활용으로 세금탈루를 줄이게 하였다.
- ④ 1966년에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여 공관직원의 사무처리 능력 부족과 회계질서 문란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하게 하고, 그 후 1970년까지 해마다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였다.

- ⑤ 1968년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감사에서 공사비 2억 3,000만여 원을 과다 계상한 것을 적발하여 감액조치하게 하였다.
- ⑥ 1969년에 서울지방병무청 감사에서 병역기피자 3만 5,661명을 적발하고, 그 중 입영기피자와 탈영자 등 309명을 해직하도록 하며 업무태만자 69명을 고발하거나 징계처분을 요구하여 일대 경종을 울렸다.
- ⑦ 1971년 8월에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농수산자금 32억여 원을 횡령유용한 것을 밝혀내 조합간부 등 150명을 고발조치하고 비위관련자 7백여 인을 문책하게 하는 한편, 자금 집행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2) 제4공화국 시대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체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데 감사역량을 총결집하여 예산규모가 크고 다수 국민과 관련되면서 부정의 개연성이 많은 사업, 업무, 기관, 공직자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다.

감사결과 공직자의 비위는 서정쇄신의 하나로 일벌백계하고, 비위발생 요인의 근본적인 제거에도 힘을 기울였다. 먼저 감사원이 스스로 자체 숙정을 단행하는 한편, 정부의 서정쇄신 추진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때에는 고발 인원이 연간 465명에 이르거나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요구가 201건에 이른 경우도 있다.

1976년에는 계산증명서류에 대한 검사·대사 등 서면감사를 강화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불합리한 예산 편성과 실정에 맞지 않는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등 회계질서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만을 실시하였으며, 직무감찰은 잔존 부조리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1977년에는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여 감사자료 관리 등의 전산화와 계산증명서류 검증 업무의 전산처리를 시도하였다.

감사결과 1972년부터 1980년까지 9년 동안 총 6만 6,875건을 지적하여 1,269억 원을 추징·회수 등 시정요구하고 7,545명을 징계·문책 요구 또는 고발조치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72년에 서울특별시 상수도·청소·건축보건행정 실태를 감사하여 범죄혐의자 36명을 고발조치하고 66명에 대해 징계요구하였다.
- ② 1973년에 266개 농지개량조합을 1군 1조합 원칙하에 통합하여 126개 조합으로 줄이고, 비위관련 조합장 196명을 해임조치하게 하였다.
- ③ 1975년에 초·중·고등학교에 1,668종의 부실부교재 2,900만 부를 원가보다 67억 원 상당 비싸게 공급하고 학부모로부터 1,657억 원의 잡부금을 부당히 징수한 사실을 밝혀내 이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④ 1976년에 국방부에서 지급한 국가배상금 중 46%인 13억여 원을 군인과 민간인이 허위서류를 꾸며 조직적으로 결탁, 편취한 것을 밝혀내 변상하게 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 ⑤ 1977년에 민영탄광의 53%인 256개의 탄광이 노임을 인상하지 않아 노임 수준이 현저히 열악한 것을 지적하여 노임 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 ⑥ 1978년에 군 농협과 주정회사가 결탁하여 고구마를 농기로부터 계통수매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농협자금 73억 원 상당을 부당 인출하는 등의 고질적 비리를 밝혀내 비리 관련 조합장 등 203명이 해임되는 등 665명이 징계조치되었으며, 관계공무원 32명도 해임 등 징계조치되었다.
- ⑦ 1979년에 제주도의 절대농지에 호화별장 103동을 불법 건축한 것을 밝혀내 군수 등을 파면하게 하고 건축주를 고발하는 한편,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도록 하였다.
- ⑧ 1980년 3월에 나일론사 등 11개 독과점 품목의 가격이 최고 10.8%까지 과다인상 되는 등 변칙적으로 결정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시정하게 하였다.

(3) 제5공화국 시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에 부응하여 공직사회 정화에 힘쓰는 한편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효율성 감사, 정책개선 감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방지도적 감사에도 노력하였다. 종래의 합법성 감사와 처벌 위주의 사후적발 감사로는 사업성과 확보 등이 미흡하고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해결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역점감사, 전문감사, 총괄감사, 설문감사기법, 비교감사기법, 사전예고제 등 다양한 감사방법과 감사기법을 개발, 활용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처리도 개별처리제에서 종합처리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계층제감사에 따른 종합감사체제를 구축하여 자체감사기구와 감사영역을 분담하기도 하였다.

1982년에는 ASOSAI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여 각국 감사기구간의 상호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을 계기로 각종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INTOSAI 총회에도 적극 참가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외국감사제도와 선진감사기법의 연구에도 노력하였다.

감사원의 원훈을 '공명정대'로 정하고 '새 감사원상의 정립으로 믿음 받는 정직한 정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원 운영방침을 '공직사회 정화의 지속적 추진, 주요 시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 확보,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 증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쇄신'으로 정하였다. 감사활동은 세무·공사·인사·인허가 등과 관련한 구조적 비리 척결, 자율정화 촉구, 성실 공직자의 보호와 사기진작, 주요 시책의 부진·실패요인 규명, 낭비 억제·경비 절감, 민생관련 행정의 질 향상, 비현실적인 법규·제도 개선, 경영의 합리화와 경영진의 책임경영제 확립 등에 중점을 두었다.

감사결과 1981년부터 1987년까지 7년 동안 총 2만 7,642건을 지적하여 2,863억 원을 추징·회수보전 등 시정을 요구하고 5,025명을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81년부터 해마다 전산조직의 도입과 활용실태를 감사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예금에 위규(違規) 가입한 16만 명을 밝혀내어 법정장려금 335억 원의 부당 지급을 막도록 하였다.
- ② 범국민적으로 추진된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서울올림픽대회에 대하여는 이를 유치한 1982년부터 대회 개최 시까지 계획 수립, 경기장 건설, 대회 지원 등 추진단계별로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하게 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 ③ 1983년부터 기관별 또는 업무별로 공직기강 수준과 청렴도 등을 측정하고 이를 감사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자정 노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 ④ 1983년에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8,433만여 평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입찰과 예정가격 누설 등의 비리혐의를 밝혀내 임직원 등 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부당하게 재매입한 토지를 원상대로 환원하게 하였다.
- ⑤ 1984년에 국립공원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한 개 공원을 8개 시·군이 분할 관리함에 따라 공원 관리가 부실하고 자연훼손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혀내 국가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⑥ 1984년과 1985년에 부정유사 휘발유 유통실태를 추적·조사하여 부정유사 휘발유가 정상휘발유 유통량의 49.6%인 112만 kl(7,39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원료로 사용되는 러버 솔벤트와 T 납사 등의 제조를 중단하게 하고 합동기동점검반을 편성, 부정휘발유를 근절하도록 촉구하였다.
- ⑦ 1984년에 육우 도입실태를 감사하여 당초 도입계획량 5만여 두를 훨씬 초과한 7만 4,000여 두를 도

입하였고 7,700여 마리(도입 육우의 10%)가 폐사되어 45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였다.

- ⑧ 1986년에 261개 정부기관과 투자기관의 물자구매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위법부당사항 890건(총 1만 4,000개 품목), 고가로 구매하고 물자를 사장한 것 597억 원 등 물자낭비가 심각함을 밝혀내고,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4) 제6공화국 시대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이 지향하는 민주화합의 새 시대를 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감사운영의 기본지표로 삼아,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과 권위주의적 요소 청산으로 민주적인 책임행정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부정의 개인성이 많은 취약분야에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의 공직자를 과감히 배제하고, 그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비슷한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회계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의 세입세출 과정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등 회계검사 체제를 정비·강화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의 규모에 맞추어 감사순기를 정하여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순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 사각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감사결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5년 동안 총 2만 4,281건을 지적하여 1조 3,850억 원의 추정·회수보전 등 시정을 요구하고 1,628명의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89년에 서울특별시의 사유재산권 규제실태를 감사하여 도시계획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토지가 69개소 18만여 평에 이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여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비위관련자 6명을 징계요구 또는 고발조치하였다.
- ② 1990년에 기업공개 전 주식거래 과세실태를 감사하여 과도한 유무상증자(물타기) 등의 방법으로 법령의 미비점을 악용, 막대한 시세차익(1,233억 원)을 얻거나 주식을 번칙증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③ 1991년에 수서지구 택지 특별공급실태를 감사하여 서울특별시가 수서지구 택지 3만 5,500평을 주식회사 한보주택이 건립추진하는 26개 주택조합에 특별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특

별공급 방침을 재검토하게 하고 관련된 부시장과 건설부 국장 등을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감사 결과를 검찰에 송부하여 수사에 참고하게 하였다.

- ④ 1992년에 부처 간 업무협조실태를 감사하여 의견 대립 중인 53개 사업 중 34개는 관계기관 간의 합의 도출로 정상 추진하게 하였고, 19개는 총리실 주관으로 조속 해결하도록 촉구하였다.
- ⑤ 1992년에 대전세계박람회 준비실태를 감사하여 박람회장 건설사업 규모의 임의 확대 추진, 행사운영경비 등 재원 부족, 각종 공사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여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게 각종 시정대책을 조기에 마련, 시행하도록 촉구하였다.

(5) 문민정부 시대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정부패 등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를 뒷받침하고 세계화·민주화 등의 욕구가 커졌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감사업무 수행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감사의 기본원칙을 두고 성역 없는 엄정한 감사 수행에 힘을 기울여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심층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의 민원욕구에 적극 대처하고자 감사원 188신고센터를 신설하였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식품·의약·환경·주택 등 다수 국민과 관련된 민생분야 감사를 강화하고 각종 부실공사를 한국적 고질병으로 인식, 부실공사 추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을 통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고, 1996년과 1997년에는 부실공사·대형공사·환경·금융 등 특정분야에 대한 감사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지향하여 공개감사와 감사청구제도 시행하였다.

1995년에는 「감사원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원의 조직과 인사상의 독립, 국가위탁사무 등 감사대상의 확대조정과 자체감사 책임자의 교체권고제 채택 등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감사결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5년 동안 총 3만 617건을 지적하여 1조 1,734억 원을 추정·회수보전 등 시정을 요구하고 6,700명을 징계 또는 문책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74년부터 계속 시행된 전력증강사업(육곡사업)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특성으로 감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는데 1993년에 그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무기체계·기종 결정, 사업 추진 체계, 조달계약과 이행, 무기 획득·운용·방산업체 관리 등과 관련된 총 133건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자 66명의 문책 등을 요구하며 금품수수자 6명을 수사의뢰하였다. 그 후 1994년, 1996년 및 1998년에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 ② 1994년에 부천시에 대한 지방세 수납실태 감사결과 세무공무원들이 범무사 등과 결탁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 2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18명을 수사의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합동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총 1,71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전국에 걸쳐 지방세 징수비리 합동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세 횡령 41억여 원을 포함한 424억여 원에 이르는 유용, 부족 징수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250명은 수사의뢰하며 비리 관련자와 감독자를 파면 등 징계 요구하는 한편, 세무관리 전산화의 조기완료 등 비리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 ③ 1995년에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의료보험 약가를 인하조정하여야 할 810개 품목의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연간 537억 원 상당의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과 22개 종합병원이 의약품 구매액의 23.8% 상당인 1,008억여 원을 기부금 등 명목으로 불법 수수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의료보험 약가를 재조정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약가관리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였다.
- ④ 1996년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실태를 감사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체에 자금대출 시 구속성 예금의 가입(꺾기)을 강요하는 등 고질적인 금융관행이 잔존하고 있고 대기업, 백화점 등에서 물품대금 지급 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 심한 것을 지적하여 각종 금융지원시책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 ⑤ 1996년에 한약조제시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출제위원의 구성, 출제방법 선정, 시험위원 위촉 등의 잘못과 시험문제관리와 출제장소 보안관리의 허점이 있음이 밝혀져 관계책임자인 국장, 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징계처분 요구하고 시험출제 과정에서 부당행위 등을 한 교수 22명을 제재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 시행 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 ⑥ 1997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등을 용도파악이 불가능하게 집행하고, 횡령·유용 또는 반대 집행하거나 초과편성 집행하는 등 562억여 원의 예산을 부당히 집행한 것을 지적하여 비리관련자 55명을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고발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효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 ⑦ 1997년에 용인 수지지구 불법투기실태를 감사하여 위장전입자 2,713세대를 적발하여 그중 338세대가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받았고 위장전입 알선에 공무원과 중개업자 등 146명이 개입된 것을 밝혀내 이들을 의법조치하였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부당취득한 관련 공직자 34명 등은 인사조치하는 한편 거주사실 확인 등 재발근절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6) 국민의 정부 시대

1997년도 말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후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되어 감사원은 국가적 당면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고 새 정부의 국정개혁과 국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경제난극의 극복을 지원하는 데 모든 감사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으로 감사운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중점을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성과감사 확대, 국가 중요정책의 실효성 점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서민생활 안정 지원과 공공부문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감사를 강화하는 데 두었다.

또한, 정보화시책사업 추진과 소외계층의 복지증진도 감사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부실의 조기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점검을 위한 국책사업감사단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1998년 9월 1일 당시 직원 822명으로 6만여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1998년 3월에 외환금융 관리실태를 감사하여 경상수지 적자누적으로 인한 단기외채 급증, 대기업의 연쇄도산, 기업 재무구조 취약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책당국의 안일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였음을 밝혀내고 위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극복할 시기를 놓치게 한 장관 등 관련자 30명을 징계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고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외환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 ②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 집행실태를 감사하여 제2차 수정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비 일부를 누락한 채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하여 경제성 등이 양호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과 1,38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등을 밝혀내어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비위 관련자 36명을 징계 등 인사조치하도록 촉구하였다.
- ③ 64개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집행, 기구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규모를 축소 계상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과다 수령(254억여 원)한 후 각종 수당 또는 업무추진비로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임원 및 중간관리직의 인원을 지나치게 많이 운용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출연금의 과다 수령 방지방안과 비효율적인 조직구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 ④ 153개 공기업의 경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영이 부실한 자회사 23개는 통폐합을, 민간기업과 결합하는 자회사 18개는 민영화를, 결손이 누적된 공기업 27개는 경영혁신을 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하게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조직과 인원 감축, 기밀비 폐지 등 종합적인 경영구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하였다.

- 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실태를 감사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인 시책이 혼선을 빚거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투자 애로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여 투자 유치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
- ⑥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고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항만을 개발할 때에 컨테이너장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 항만에서의 물류비와 물류애로를 줄일 수 없게 되었고, 철도의 일부 병목구간에 대한 철도선로용량을 확충할 계획이 없어 화물의 철도수송에 애로가 예상되었으며,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하지 않거나 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지 않은 채 각각 물류정보화를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관계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 ⑦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 수립, 건설관리, 설계·시공 등 사업 추진 전반을 종합 점검하여 공항 건설에 따른 시행착오 및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여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전용철도, 제2활주로, 한국전력의 전력시설을 개항 시까지 완공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고 등으로 인한 단일 활주로 폐쇄나 유일 접근 교통시설인 고속도로 불통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공항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관계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 ⑧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건설 등 월드컵축구대회 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실태'를 감사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원 부족으로 경기장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회기간 동안 국내를 찾는 외국인을 위한 숙박대책이나 홍보, 안내 등의 대책이 미흡하여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7) 참여정부 시대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여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정개혁의 중추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 아래 2004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시스템감사'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

시스템감사를 정착·고도화하기 위한 3대 감사운영원리로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라 피급효과가 큰 핵심·취약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감사, 경제성·능률성·효과성(3E) 관점에서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는 성과중심 감사, 진취적·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 감사를 제시하였다.

감사결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총 1만 979건을 지적하여 1조 3,850억여 원을 추징·회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1,628명의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2006년 6월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급식 관리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교급식 관련 위생안전 및 급식시설 등 관리측면에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체계가 미흡한 등 문제점이 있었고, 학교급식 관련 예산 및 조직인력 관리 측면에서 구체적인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직영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 ② 2005년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과 경품용 상품권이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에 보급되어 성인용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확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를 감사하여 문화관광부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사행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체계를 갖추어 심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였다.
- ③ 1998년 이래 정부가 추진해 온 공기업 경영혁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04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기업 관리측면에서 공기업 관리법령이 복잡·다기하여 유사한 공기업간에도 각기 다른 체계로 관리되어 공기업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이사회 및 자체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방만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경영평가제도 미비 및 운영부실로 사후 책임확보장치로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였다.
- ④ 기간교통시설과 물류거점시설 확충계획과 투자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여 물류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년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를 실시한 결과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적용되는 기초 통계가 부실하여 교통수요 예측 및 경제성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철도도로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 않고 분산 시행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지역 간 화물통행량 분포자료는 신뢰도를 높이도록 실제 관측 교통량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였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지원제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를 수급자의 주거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정하는가 하면, 시·군·구에서 부정 수

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상시 점검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사 회보장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를 하도록 통보하였다.

- ⑥ 다중이용시설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이용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방방재청에서 다중 이용시설에 비상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옥외 피난계단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지 않아 화재시 옥 외피난계단이 없는 비상구를 통해 대피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비상구 피 난계단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처분요구하거나 권고통보하였다.
- ⑦ 우리나라에서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07년 4월 까지 총 26회 발생하는 등 으로 인체감염이 우려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1년 이후 해마다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새로 나타나 사망자수도 연간 3,000명에 이르는 등 후진국 전염병인 결핵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조류인플 루엔자에 대한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결핵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2007년 '주요 법정 전염병 방역관리 실태'를 감사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결핵환자 발견, 신고 및 치 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8) 이명박정부 시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감사원은 예산조기집행 실태를 점 검하고, 식품안전사고육비·고용안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점검하는 한편, 적극 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감면 하고자 하였고,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신속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신 설하였다.

한편, 2009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결산에 성과보고서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및 국가재무제표 검사도 추가로 실시 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감사원이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 감사체계 전반을 조정하고 감사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체계를 확립하게 되 었다.

아울러 관행화된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하는 동시에 교육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였으며 방산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근절에도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감사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1만 8,304건을 지적하여 2조 8,971억여 원을 추징·회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3,727명의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교육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휴직·파견 등 인사업무 관련 비위 유무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등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인사전횡 여부, 정원관리 등 방안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2009년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조정점수에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조정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감경력이 없는 특정인을 교장으로 전임해 달라고 하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승진임용하고, 법령에 위배되게 대학 하부조직을 방만하게 설치·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 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업주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 여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지원금 누수를 방지하고 정부지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2010년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취업 중에 있는데도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전문 브로커 등과 허위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한 사람을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부당부정수급액 총 111억 원)하여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고 피보험자격 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 ③ 2010년 이후 유럽발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점증하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미흡하여 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보다는 과도한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금융당국의 감독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으로 저금리 정책의 혜택이 가계와 기업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 저신용자의 복수 카드대출 확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보험운용 전반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통보하였다.
- ④ 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간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회사의 존립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민영화·청산가능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경영통제 역할이 미비한 이사회, 노조 전임자 수 축소공시, 노조 운영비의 부당 지원, 방만한 인건비·급여성 경비와 복리후생제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주무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였다.
- ⑤ 은밀하고 중대한 공직비리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이권개입,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지역의 고질적인 비리를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0년 '지역토착비리 등 고위층 비리점검'을

한 결과, 공무원이 관내 사찰이 제기한 무주부동산 취득 관련 소송 업무를 도와준 뒤 사찰 주지를 통해 승진을 청탁하여 승진임용되거나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긴급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손해를 입히는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다.

- ⑥ 2008년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한국방송공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였으며 정원 통합관리로 상위직을 과다하게 유지하거나 상위직 유휴인력을 과다하게 운용하고 특별 승격팀장 보직 및 해임 등 원칙 없이 인사운용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장개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 사업을 불법으로 추진하고 중계소 신설사업을 위법부당하게 추진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이사회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고, 사장에 대하여 해임요구하였다.

(9) 박근혜정부 시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원”이라는 목표 하에 ‘독립성’, ‘전문성’, ‘소통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고 전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3대 감사운영기조로 하였다.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직결되는 국민안전 분야 감사 총괄 기능을 행정·안전감사국으로 일원화하고,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IT분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IT감사단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분석과 점검을 거쳐 「중장기 감사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쳐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교육재정자료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자료 및 공간정보, 공공기관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감사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1만 3,230건을 지적하여 1조 1,604억여 원을 추징·회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2,213명의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감사결과

- ① 승객 총 476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여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 4. 16. 전라남도 진

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수백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자 사고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여 세월호 도입선박검사출항 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의 적정성,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 및 초동 대응 구조활동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해상관제,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관련자를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자 총 50명에 대하여 징계 등을 요구하였고, 연안여객선 안전 관리 제도를 점검분석하여 운항관리자의 직무상 독립성 취약, 안전교육 훈련의 과도한 면제 등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②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에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왔고, 매년 1조 원 가량을 대국 민서비스 영역의 정보화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보시스템 중복 구축, 연계입력 자료의 누락과 오류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여전하여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용실태'와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여러 개의 기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사업과 실내공간정보 구축활용서비스 개발사업 등에 중복투자하는 비효율이 있었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지자체 등에서 데이터 변경 사항 등을 제 때 입력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각 부처에 정보시스템 사업을 조정·통합하고 정보시스템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③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금융기법의 첨단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역외탈세 등 조세회피 방법도 진화하는 추세로, 정부의 세제강화 노력에도 과세 사각은 여전하여 국제·금융거래의 두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장거래, 수출가격 조작 및 소득 은닉 등 역외탈세한 사례를 적발하여 235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하거나 외국법인이 원천세를 회피하는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866억여 원을 추징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전환사채 등을 이용한 대주주의 증여세 회피, 특수관계인 간 자기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차명거래 등의 조세회피 사례를 적발하여 125억여 원을 추징하고 제도 개선 하도록 통보하였다.
- ④ 2005년부터 10년 단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도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실측 농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 오염원에 대한 관리 계획이 미비하였고, 자동차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계획 추진실적을 과다 산정평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 제2차 기본계획을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 ⑤ 2013년 이후 정부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나 규제개선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 투자활성화 대책 320건을 점검한 결과, '현실과 괴리된 법령으로 인한 규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숨은 규제 운영', '규제개선 후속조치 미흡', '소극적 업무처리 등 규제 부당 적용'의 4가지 유형을 기준으로 총 27건의 문제점이 있어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⑥ 2008년 2월 화재로 소실된 송례문이 복구 5개월 만인 2013년 10월 경 단청이 박락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문화재 보수관리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자 국회에서 송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

재 유지보수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여 송례문 복구사업 공종별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심층 점검한 결과, 단청장외 명성만 민고 공기에 맞추기 위해 시공법이나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송례문에 바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기와 규격을 전통기와가 아닌 KS기와 규격으로 임의 변경시공하도록 하고, 조선 중기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견여내기로 하고도 시공 편의를 위해 일부만 제거하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하였다.

(10) 문재인정부 시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고자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4대 전략감사 분야를 수립하고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열린감사,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감사, 사명감과 긍지를 갖춘 품격있는 감사를 추진기반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사를 수행한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전담·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현장에서 즉시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현장면책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감사결과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867건을 지적하여 1,055억여 원을 추징·회수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요구하고 817명의 징계·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주요 감사결과

- ① 정부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선정평가 등으로 대학들이 객관성·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점검한 결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또는 대학특성화사업 등 사업대상 선정과정에 부당개입하거나 선정평가 종료 후 선정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 등급 구분기준을 변경하거나 오류·허위자료의 확인 절차가 부실한 문제점이 있어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주의요구하고 자료 확인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② 청년실업률이 11.2%(2017년 4월 현재)로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년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기관의 인사청탁특혜채용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등 국민불신이 심화되고 구직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어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감사한 결과,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하거나 채용인원분야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사례, 채용 관련 법령체계 미비, 퇴직자 비공개 채용-연령차별 등 불합리한 관행 등을 지적하여 관련자에게 징계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③ 우리나라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주요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비축계획 수립 등 전략 마련이 중요한 실정이어서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기관마다 비축대상 선정 기준이 서로 다르고, '에너지기본계획'과 '석유비축계획'간 원유 수요 전망도 서로 다르게 예측하고 있었으며 안전재고 목표량 미만으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상시 방출하는 식으로 재고운영을 하는 등 비축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관련 기관 간 상호 협의 조정하고 합리적인 재고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④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3조여 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 대처, 수자원 확보 다변화, 홍수소통능력 증대,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정책방향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6월 중단된 대운하 사업과의 관련성, 수질 및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7년 등 크게 네 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7년 감사에서는 더 이상 위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사업집행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감사한 결과,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한 뒤 대통령이 '보름 설치하여 수자원 확보하고 수심 5~6m로 굴착할 것' 등을 지시하자 국토해양부는 지시 내용이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 결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환경부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등 문제가 있어 앞으로 사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효과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는 한편, 차이수와 수질 및 경제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과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다.

제2편 심계원과 감찰위원회 시대

제3편 감사원의 발족과 위상 정립

제4편 열린 감사, 신뢰받는 감사원으로

제5편 부록

알림

[연간감사운영방향](#)

[연간감사계획](#)

[감사운영전략](#)

[감사운영전략](#)

[고위험 중점분야](#)

[하반기 감사계획](#)

감사착수 및 처리단계

감사원에서 실시 중이거나 처리중인 감사사항을 안내합니다. 감사진행 공개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신속한 감사운영 등을 위하여 사건별로 분리하여 처리될 수 있으며, 감사진행 단계는 본안 사건의 처리 상황을 기준으로 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언론보도/홍보

  "언론보도/홍보" (감사원) [신청시 공개] 참조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회의 의결사항

2023년도 제24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23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22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21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20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19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18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17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16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3년도 제15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서면 의결사항

2022년도 제20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9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8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7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6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5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4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2년도 제13회 감사위원회의 의결결과

2021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보고서

감사결과

분야·종류별 감사결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보도자료		바른 감사, 바른 나라	
		 감사원 www.bai.go.kr	
배포일자	2023. 9. 22.(금)	보도일시	2023. 9. 25.(월) 14시 이후
제 공	홍보담당관실(☎02-2011-2491)	담당부서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02-2011-2231) 총 21매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I) 주요 감사결과

“숙원사업 해결을 요구하며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책사업에 인허가권 남용, 심야택시난 등 시민 불편에도 무단휴업 등 위법한 택시업계 관행 묵인,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 삼아 레미콘트럭의 신규등록 계속 금지, 기업의 금융규제 특례신청을 법적 근거 없이 사전검토하여 선별 접수, 소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지연하여 신기술의 시장진입 제한”

개 요

□ 감사배경 및 지적요지

- 범정부적 규제개선 노력과 수차례의 규제감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감사를 핑계로 개혁을 회피하는 공직문화 여전
- 이에 규제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점검
-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대안 제시

□ 주요 감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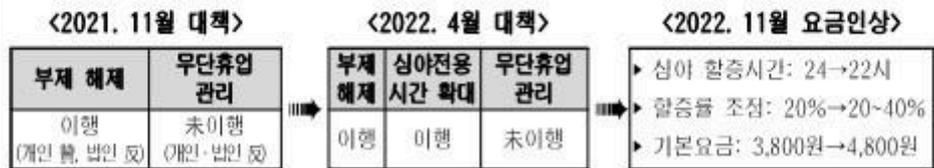
(가) 단체장이 숙원사업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 국책사업을 지연하거나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인허가권을 남용하는 관행 여전

- ① **여주시장**은 국책사업인 ⊖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 숙원사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처리 지연
- ② **양주시장**도 자신의 선거공약 및 주민 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하도록 지시하고, 문제가 없다고 검토했던 도로점용허가를 반려하는 등 인허가권 남용

(나) 소극적인 법령 해석·집행으로 무단휴업 등 위법한 택시관행 묵인,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트럭 신규등록 계속 제한

- ① **서울시**는 개인택시 무단휴업, 법인택시 차량 말소로 2019년 이후 택시운행률이 면허대수의 57%에 불과(4년 평균 71,760대 중 41,059대)
 - ※ 2022년 개인택시(59.7%) : 49,157대 중 29,360대 / 법인택시(51.9%) : 22,603대 중 11,735대
 - 택시부제(개인택시 적용, 3부제 등)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해도 일평균 개인택시는 4대 중 3대, 법인택시는 2대 중 1대만 운행
 - 서울시가 이같이 택시 운행관리에 손을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에 택시부족으로 시민불편 가중
- 이에 서울시는 2021년 및 2022년,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무단휴업 택시를 행정처분하는 등의 승차난 해소대책을 발표했으나
 - ※ 지자체의 허가 없이 택시를 무단휴업하면 사업정지·면허취소 대상

- 점검 결과, 서울시는 ① 무단휴업 기준을 대폭 완화(6개월간 매일 5일 이하 운행하면 무단휴업), ②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축소·부정확 선정, ③ 선정된 2천여 대도 조사·제재하지 않음(20대만 조사하여 3대 제재)
- 이같이 서울시는 무단휴업 택시 등의 운행관리를 등한시하면서, 미운행택시를 제재해도 운행률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내버려 둔 채, 운행률 제고에 필요하다며 2022년 택시요금은 인상



- ② 국토교통부는 2009~2023년까지 건설기계의 수급예측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립한 수급계획에 따라 레미콘트럭의 신규등록 금지
- 국토교통부는 2015~2018년 레미콘트럭 2천여 대가 부정등록된 사건을 조사하여 공급 부족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책 수정 없이 공신력 없는 1인 연구소 등에 수급예측 용역을 2년마다 발주
- 2019년 이후, 부실·조작된 연구방법·결과를 검증하지 않고 레미콘트럭이 공급초과이므로 신규등록을 금지한다는 수급계획 수립
- 그리고 수급계획 등을 심의하는 수급조정위원회도 신규등록의 금지를 선호하는 단체의 인사가 많도록 편향되게 구성하고,
- 신규등록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때도 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를 받지 않는 등 「행정규제기본법」도 위반
- 이처럼 수급예측·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며 14년째 규제 존치

(다) 금융규제 특례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서 접수 전 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선별 접수, 법령·기준의 제·개정을 지연하여 신기술의 진입규제

- ① 2019년 「금융혁신법」이 제정되면서 핀테크·금융회사 등이 신청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사업모델)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규제를 2년간 면제하는 규제특례 제도(일종의 금융규제샌드박스) 도입
- 법령에 따르면, 민간 위주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민간 15명, 공공 9명)가 신청된 서비스를 심사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의견을 제시
 - 그런데 **금융위**는 ㉞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어 혁신금융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정식 신청 前에 의무 참여토록 한 후, 소관부서(은행과, 자본시장과 등)가 해당 서비스 내용을 사전검토하게 하여
 - ㉞ 사전검토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만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아니면 혁신금융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서 제출을 막음
 - 지난 4년간, 수요조사에 참여한 5건 중 1건만 신청서 제출 허용
※ 수요조사 통과 비율 : 2019년 23%, 2020년 16%, 2021년 22%, 2022년 21%
- ㉞는 위 운영방식이 위법하다며 금융위 반대에도 신청서를 3번 제출했으나 계속 접수를 거부당하자 국회(정무위)에 민원 제기
- 그제야 금융위는 ㉞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해당 금융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금융위는 위 사건을 통해 그간의 운영방식이 위법함을 인식했으나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요조사(사전검토)에서 승인받은 기업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무매뉴얼에 포함·공식화
- ② 기존 자동화재탐지설비(有線방식)는 화재시 작동하지 않거나(33.7%) 화재가 아닌데 작동(99.8%, 비화재경보)하는 오작동이 심각했음

- 그래서 건물 관리인이 평상시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꺼놓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 불이 나서 인명·재산 피해가 커진 사례도 많았음
- ※ 2018년 ⊕ 화재(9명 사망), 2022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3명 사망) 등
- 국회·언론이 비판을 지속하자, 소방청은 2019년 사물인터넷 기술로 원격조정 등이 가능한 IoT 화재경보시스템(無線방식) 등 신종 경보설비의 전면도입을 허용하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그런데 기존 경보설비 업체의 민원을 이유로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위 내용을 개정안에서 삭제했다가
- 2021년,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전방시장에만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개정하여 2019년 천명한 네거티브 규제원칙(우선허용·사후규제)에 역행하여 신종 경보설비를 사전규제
- 이렇게 신종 경보설비의 설치대상을 제한(안정성이 검증되면, 공동주택 등에 허용)한 후, 공동주택에는 아날로그화재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행정예고하여 기존 경보설비의 설치대상만 확대
- 아날로그감지기는 전기신호를 상시 전송하므로 전력 소모가 많아 유선방식인 기존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에 유리하다는 무선방식 업체(배터리를 사용하는 IoT 화재경보시스템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 소방청은 불합리한 배터리 교체주기(현 10년 이상)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과거의 규제를 존치하여 공정경쟁 저해
- ※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임

※ 이 외에 자세한 감사결과는 별첨 및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 참조

[별첨]

1. 단체장이 지역 숙원사업 및 선거 공약을 이유로 진행 중이던 인허가 절차를 중단시킨 후 해당 사안과 관련 없는 상생방안을 별도 요구하거나 이미 승인한 인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해 관련된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등 권한 남용^{9~37쪽}

□ **여주시장은 2022년 6월 ⊖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협의를 중단(총당 17억 원 손실)시켜 국책사업을 지연시킴**

○ 위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등 5개)는 2022년 6월까지 **법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사업자가 **지역 민원**(공업용수 관료가 통과하는 4개 마을 지원)을 수용하여 협의 처리만 남아 있었는데도

- 여주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6월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권한도 없는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인허가 협의를 중단**하라고 **지시**

- 위 지시를 받은 담당부서는 상생협력 방안과 인허가를 **별도 처리** 하자고 건의했으나 여주시장은 **협의 중단을 재차 지시**

○ 이후 여주시장은 2022년 8월 위 **인허가와 관련이 없고** 사업자에게 **권한이 없는 숙원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시 **협의 중단 지시**

- **(국토교통부)** 여주시 특별대책지역 외 전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건의
- **(경기도)** GH(경기주택도시공사)·**2200** 공동 **⊖**역 인근 도시개발사업, **⊖**읍 산업단지 공동개발 사업 등
- **(환경부)** 하수처리구역 지정 확대 및 국비 추가지원

- 위 요구를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불수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 등)하면서 **인허가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어 국책사업에 지장 초래
- 이에 감사원이 **인허가 협의 중단의 위법성 감사에 착수**하자 여주시 담당자 및 간부(건설과~부시장)는 2022년 9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5개 인허가 항목을 협의 처리**하자고 **시장에게 건의**
- 그런데도 여주시장은 상생방안 협의가 먼저 돼야 한다며 **제차 거부**하다가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중재**로 2022년 11월 인허가 처리

□ **양주시장도** 2022년 7월 **선거공약·주민반대**를 이유로 적법하게 처리된 물류창고 **건축허가의 직권취소를 검토**하도록 양주시에 **지시**하였고

- 양주시(도로과)는 위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당초 문제없다고 검토**했던 공사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반려**
- 이후 4개월 간 공사가 중단(월 6.7억 원 손실)되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2022년 11월 인허가 처리

조치할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① 지역 숙원사업, 선거공약이라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인허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건 사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파하고(**통보**)
- ② **관련자** 여주시장, 양주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람(주의)**

2. 서울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을 제고대책을 마련했으나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대책인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행위를 용인하고 법인택시의 차량 말소는 파악도 못 함^{117~180쪽}

- 택시사업자는 수십 년간 승용차를 여객운송 사업을 독점하다가 2018년 ‘타다’서비스가 등장하여 경쟁구도(2020년 회원 170만명)로 바뀌자 강력히 반발하여 ‘타다’서비스를 금지시킨 후, 예전처럼 독점구도로 되돌림
 - 이후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심야시간(23:00~)의 택시 부족으로 승차난이 심각해짐(배차성공률 20% 내외)
 - 당시 서울시는 승차난의 원인을 심야시간대 택시 부족(평년 대비 5,500여 대 부족)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서울시의 택시면허대수 71,732대(2022년 기준 법인 22,603대, 개인 49,129대)는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분석(서울시는 減車사업 추진)
 - 이러한 ‘택시 부족의 원인이 낮은 운행률 때문이 아닌지’ 규명하기 위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 최근 4년간 택시등록·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서울시의 심야택시 승차난 대책의 이행실태 점검

< 서울시의 택시 운영실태 분석결과 >

- 분석결과, 지난 4년간 서울시의 택시 면허대수 71,760대 중 일평균 41,095대만 운행하여 평균운행률은 57% 수준(일평균 면허 10대 중 6대 운행)
 - * 2022년 기준, 개인택시 운행률은 59.7%(49,157대 중 29,360대), 법인택시는 51.9%(22,603대 중 11,735대)
- 운행가능택시(택시부제로 운행할 수 없는 개인택시 제외)만 놓고 보면, 개인택시는 일평균 4대 중 3대, 법인택시는 2대 중 1대만 운행

- 개인택시 면허는 49,000여대지만 택시부제 때문에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하면 **운행가능택시가 36,000대(/일) 수준임**
- 지난 4년간, 하루 한 번이라도 운행기록이 있던 차량은 27,927~30,161대(/일)로 일평균 **8천여 대**의 택시가 **未운행**(부제가 해제된 2022년 제외)
- 이들 **8천여대의 택시**는 대부분 허가 없이 미운행 하는 **'무단휴업'**임

[도표 1] 개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I)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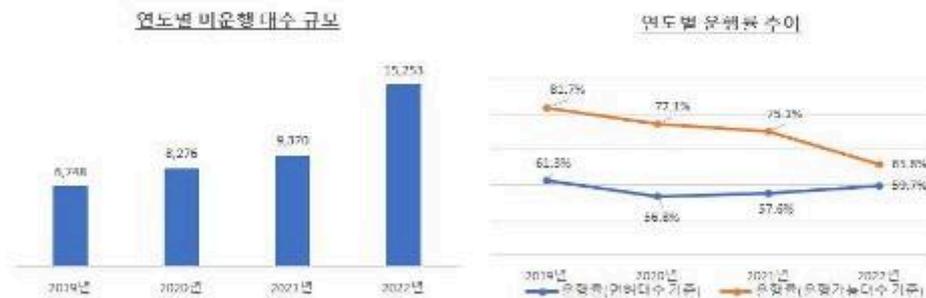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 **운행률 추이**를 보면, 면허대수 기준으로는 연평균 **56.8~61.3%** 정체, **운행가능택시** 기준으로는 **81.7%→65.8%**로 하락 추세

[도표 2] 개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II)

(단위: 대, %)



자료: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 한편,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달리 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면허대수 22,603대가 매일 운행**할 수 있음

○ 그러나 택시사업자가 운전자 부족을 이유로 **차량을 폐차 등 말소등록**하여 등록택시가 2019년 19,270대(등록률 85.3%)→2022년 **15,323대(67.8%)**로 급감, 현재는 **면허대수 3대 중 2대만 운행 가능**

- **실제 운행대수(/일)**는 2019년 16,038대(/일)→2022년 **11,735대(/일)**로 감소

- **운행률 추이**를 보면, **면허대수 기준 71.0%→51.9%**로 **20%p 하락**, **운행가능택시(등록대수) 기준으로도 83.2%→76.6%**로 **하향 추세**

[도표 3] 법인택시 운행실태 분석 결과

(단위: 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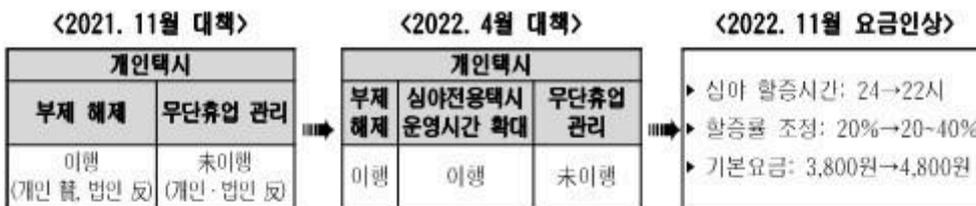


< 서울시의 택시 운영·면허관리실태 감사결과 >

(1) 무단휴업 기준 완화, 부실 선정, 행정처분 면제 등 온정적 운행관리

-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르면 택시사업자는 **독점적 면허를 인정**받는 대신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익적 운행의무**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정 택시 운행량**을 관리하기 위해 택시의 「**휴업 허가기준**」 및 「**무단휴업 제재기준**」을 정할 수 있고
 - 위반 시 **사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① 택시 **수급상황**에 맞는 **휴업 허가** 및 **무단휴업 제재기준**을 정하고 ② 위법한 **무단휴업 택시**는 법대로 처분함으로써 택시사업자가 **공익적 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 **2021년 11월**, 서울시는 택시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무단휴업 택시 단속** 등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대책 추진계획” 수립
 - 담당자들은 **무단휴업 택시의 제재기준**과 **행정처분 대상 선정방안**을 마련하여 위 계획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기준은 대폭 낮추고** 대상을 **부실하게 선정**했으며 **행정처분도 하지 않음**
 - ① 국토부는 **하루라도 허가 없이 운행하지 않으면 무단휴업**으로 해석
↔ 서울시는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만 **무단휴업**으로 간주
*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6개월간 (5일, 5일, 5일, 5일, 5일, 5일) 운행하면 무단휴업이고 (0일, 0일, 0일, 0일, 0일, 6일) 운행하면 무단휴업이 아님
 - ② 무단휴업 **의심택시**를 STIS 운행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이용하여 **과소**(감사원 2,109대↔서울시 1,446대)·**부정확**(정확도 35%)하게 **산정**
 - ③ 이후 업무가 바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운행요청** 공문을 **택시조합에 발송** 후 **의심택시(1,446대) 제재 없이 후속조치 중단**

- 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승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자 서울시는 또다시 **무단휴업 제재 등 유사 대책**을 수립함
 - 이번에도 의심택시 **608대**(감사원 1,614대)를 선별했다가 다시 **10개월 연속 무단휴업한 261대**를 재선정, 20대만 임의 조사하여 **3대만 행정처분**
- 이같이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이행하지 않는** 서울시의 업무처리 방식은 **무단휴업이 용인**된다는 인식을 심어 줌
 - 서울에서 **하루 평균 8천여대**의 개인택시가 **운행하지 않고** 있는데, **휴업신고 택시**는 **125대**였고, 2017년 이후 **제재실적**은 총 **11건**
 - 서울시는 운행의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택시업계가 반대하는 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운행률 제고 명분으로 **부제 해제 및 택시요금 인상**



* 2022. 12월부터 심야합증, 2023. 1월부터 기본요금 조정

(2) 법인택시 차량의 장기 말소등록으로 운행가능택시 급감

-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인택시** 사업자는 **5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未충족**하면 **사업면허 취소** 대상임
 - 감사원이 법인택시 **면허대수 22,603대**의 차량 등록실태를 확인한 결과, **7,168대(32%)**가 폐차, 노후차량 대체 등으로 **말소등록** 되어 있었음
 - 「여객자동차법」상 **장기간 말소등록**으로 254개 법인택시업체 중 **233개 (92%)** 업체가 법령상 **사업정지·감차명령** 대상이었고, **최저 면허기준 대수 위반**(3개월)으로 **72개(28%)** 업체가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었음

-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실태를 전혀 파악 못 하고 있었음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장은 ① 택시 운행·면허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등 하고(징계·주의)
- ② 택시운송사업자의 공익적 운행의무와 휴업의 필요성, 서울특별시의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의 휴업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택시를 무단 휴업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재검토하며(통보)
- ③ 택시의 운행실태 및 차량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운행 및 면허관리에 활용하고, 앞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허가기준을 위반하거나 차량 말소등록으로 면허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익적 운송의무를 소홀히 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부과, 장기 말소등록된 택시면허의 감차 등 합리적인 택시 운행 및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통보)

3. 국토부는 '09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증하지 않은 부실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레미콘의 신규등록을 계속 금지하고 수급조절위원회도 공급자 위주로 편중되게 구성, 매년 규제심사도 받지 않음^{130-134쪽}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2년마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5년 단위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레미콘트럭 등 4종의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금지해옴
- 법령에 따르면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가 수급계획을 심의하고, 국토교통부는 2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그리고 등록 제한의 연장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임
-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레미콘트럭 2,000여 대가 불법 등록된 것을 직접 조사하여 공급 부족상황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

- 이러한 상황 인식과 달리 2년마다 연구기관을 바꾸며 용역을 의뢰, '공급초과'라는 연구결과를 얻은 후, 신규등록 금지의 근거로 활용
- 이번 감사에서 그간 수행된 7건의 수급예측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매번 연구기관, 분석방법, 기초자료가 달라 예측의 일관성이 없었고
 - 2019년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추세선 분석을 하여 레미콘트럭이 '공급 부족'으로 예측되자 중감을 분석법으로 바꾸어 '공급초과'로 결론 변경
 - 국토교통부는 두 분석결과를 모두 제출받았으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보고서에 '추세선 분석'으로 예측했다고 허위기재한 것도 모르는 등 '공급초과'라는 결론을 그대로 인정
 - 그런 후, 2019년 용역보고서의 결론대로 레미콘트럭의 신규등록을 금지해야 한다는 수급계획 수립
-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대상 및 기간 연장을 심의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공무원, 학계 제외)도 수급조절 찬성(원자협회, 원해노총, 태강노총 등 3명)이 반대(원자협회 1명) 보다 많게 구성하였고
 - 수급조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강화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인데도 매번 누락 조치할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가동률의 개념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별 수급예측을 반영하는 등 건설기계수급계획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할 때 건설기계대여사업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② 앞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업무를 수행할 때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건설기계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균형있지 않게 구성·운영하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주의)

4. 금융위가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 적용을 면제 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신청 접수 및 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통제,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고 규제 특례제도를 영해화^{38~73쪽}

- 금융위는 2019년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 이상 금융규제 특례를 인정
 - 그런데 심사위원회 前단계에서 금융위의 소관부서(은행과·자본시장과 등)가 서비스의 심사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검토한 후, 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임의 신설하여 의무화
 - 평균 5개 중 1개 서비스만 선별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고(매년 16~23%), 접수하면 100%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사실상 심사 권한 행사
 - 위 법 제5조 및 제13조 등에 따르면 핀테크·금융회사 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고
 - 금융·IT 등 전문가(민간 15명, 공공 9명)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 충족 여부(혁신성, 소비자 보호 등)를 심사하게 되어 있음
 - 또한, 「민원처리법」 제6조 등에 따르면 법령의 규정·위임 없이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할 수 없음
 - 따라서 ①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 前에 수요조사(사전검토)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신청 절차를 강화할 수 없고,
 - ② 금융위 소관부서가 수요조사에 참여한 서비스 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위법하게 신청서 제출을 막거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 등으로 기업의 법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됨

(1) 소관부서의 사전검토를 통과한 금융서비스(사업모델)만 신청서 제출 및 심사위원회 상정을 허용하는 등 위법하게 신청 절차 운용

- 그런데 금융위는 2019년 7월 ① **법적 근거 없는 수요조사 절차를 신설**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의무 참여** 하게 한 후
 - ② 금융위 **소관부서**가 참여한 기업의 금융서비스(사업모델)가 **법령상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 검토**했고
 - ③ 검토 결과, **소관부서**가 **승인**한 기업에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
- 그 결과 2019년 7월 이후 수요조사에 참여한 1,094건 중 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163건(14.9%)이었고, 868건(79.3%)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없었음(나머지 63건은 금융위로 미전달)
 - 접수된 163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사실상 금융위의 **소관부서**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정 권한**을 실질적 행사
 - 반면, 소관부서가 **신청서 접수**를 불허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는 '(2)항'에서 후술하는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등 2건

(2) 신청기업이 신청서 접수 거부는 위법하다며 반발하자, 금융위는 오히려 위법한 신청 절차를 업무매뉴얼에 명시하여 공식화

- 금융위 **태팀**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을 총괄함
 - 태팀은 2019년 7월 **既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의 신청이 들어오면 **6개월간 신청받지 않는 계획**을 수립하여

- 해당 계획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심사위원회는 **동일·유사 서비스라도 지정 여부를 직접 심사하겠다고 결정함**
- 그러나 위 결정과 달리 실제로는 **소관부서가 동일·유사서비스를 사전검토하여 신청서 접수 및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함**
- 금융위 자본시장과는 2019년 11월 수요조사에 참여한 ㉠㉠의 서비스가 既지정된 것과 **동일·유사서비스**라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 제시
- 이에 대해 ㉠㉠은 2019년 11월 ① 수요조사 절차가 **법적 근거가 없고** ② **법상 정식 신청이 가능**하다며 신청서를 제출
- 그러나 ㉠팀은 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니라며 ㉠㉠에 결과를 **알리지도 않은 채 종결 처리**
- ㉠㉠은 **8개월 후(2020년 7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팀이 또 **접수하지 않자** 2020년 10월 **국회(정무위)에 민원을 제기**
- 그제야 ㉠팀은 **입장을 선회**, 2021년 2월 **신청서를 접수**
- * 당시 ㉠㉠와 같이 수요조사에서 계류 중인 191개 업체가 있었으나 금융위는 ㉠㉠ 건은 접수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기존대로 신청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의 서비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소관부서(자본시장과)의 반대의견**으로 한차례 유예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팀은 위 사건을 통해 **수요조사가 기업의 정당한 신청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 오히려 2021년 2월 소관부서의 **수요조사를 통과**하여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다고 **업무매뉴얼에 명시**, 위 수요조사 제도를 **공식화**

조치할 사항

-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① 법적 근거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를 강화하여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등 하고(**징계·주의**)
- ② 앞으로 법적 근거 없이 신청인이 수요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후 선별적으로 신청을 접수하여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실상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요조사 참여 여부, 소관부서의 사전검토 결과와 무관하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취지와 절차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통보**)

5. 소방청은 기존 경보설비 오작동 대책으로 신종 경보설비를 도입하기로 하고도 필요한 법령·기준의 재개정을 지연하거나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축소해 진입장벽을 유지. 반면, 기존 경보설비의 의무 설치대상은 사실상 확대^{74~116쪽}

- **기존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잦은 **오작동** (非화재시 작동 99.8%, 화재시未작동 33.7%)으로 시설관리자가 **평상시 경보설비를 꺼놓는 관행**이 생겨났고, 꺼진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
 - * 화재경보설비: 화재를 자동탐지하여 경보하고 소화·피난시설을 작동시키는 설비.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 업무·판매시설 등에 의무 설치
-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원격점검·위치확인·감도조정**이 가능한 **IoT 화재경보시스템** (Internet of Thing) 등 **신종 경보설비**가 개발됨
 - 이들은 화재탐지 **성능이 우수**하여 2008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에너지 저장시설(ESS), 문화재** 등에 설치되었고
 - **태라시장 화재**(2016년, 점포 679개 전소)를 계기로 **구 중소기업청**이 **2017년**부터 **전통시장에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했으나
 - 소방청은 여전히 **신종 경보설비** (IoT 화재경보시스템) **도입에 소극적**

(1) 포괄적 내거티브 규제 전환 취지와 다르게 신종 경보설비의 시장진입에 필요한 법령 기준의 제·개정을 지연시키고 설치대상도 대폭 제한

○ 소방청은 2019년 1월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허용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4월 **규제개혁 사례**(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내거티브 전환과제)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입법예고 시 **반대의견이 없었음**에도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기존 업체의 **민원**을 이유로 **도입 조항을 삭제**했다가

- **2년이 지난 2021년 7월**, 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재차 입법예고 하면서 또다시 **안정성을 이유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제한**

- 소방청은 **안정성을 이유로 법령 개정을 지연**하고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했으나 2023년 현재까지 위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토한 바 없음

(2) 공동주택의 경보설비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 부착하도록 행정예고 하여 사실상 무선방식 신종 경보설비의 공동주택 진입을 어렵게 함

○ **기존 경보설비**는 크게 **감지기**(열·연기·불꽃을 인식)와 **수신기**(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화재 발생을 표시) 등으로, **신종 경보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는 **감지기**, **서버**(화재 발생 여부를 판단) 등으로 구성됨

- 감지기는 **일반형**(92%)과 **아날로그형**(7%)이 있음. **아날로그감지기**는 **성능이 우수**하나 전기신호를 계속 전송하므로 **전력 소모량이 많아** 유선방식에 유리하고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방식에 불리**

○ 소방청은 2021년 10월 **아날로그감지기**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행정예고**

- 위 행정예고 전인 2021년 8월, 소방청은 **아날로그감지기의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한 **근거와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비화재경보율의 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검토하고도
- 10년간의 데이터가 축적된 고층건축물(2013년부터 아날로그감지기가 의무 설치됨)의 비화재경보 **감소효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 아날로그감지기가 **감도조정, 위치확인, 원격점검** 기능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위성 확보 없이 행정예고 강행
- 이는, **IoT 화재경보시스템**이 **아날로그감지기**를 부착한 경보설비와 **동등한 비화재경보 저감 기능**(감도조정, 위치확인, 원격점검)을 구비했으나 안정성을 이유로 **전통시장**에만 설치하도록 **개정**한 것과 대비됨
- 이번 감사에서 “**비화재경보 출동건수/화재 출동건수**”를 비교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각 경보설비의 **비화재경보 저감 성능**이 나타남

자동화재탐지설비(전체)	자동화재탐지설비(아날로그)	IoT 화재경보시스템
413.7(=32,685/79)	239.5(=479/2)	29(=116/4)

* 소방청은 2019년 4월, IoT 화재경보시스템을 원칙 허용, 사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사전 규제, 사후 허용으로 입장을 번복함

- 즉, ① IoT 화재경보시스템 설치대상을 전통시장으로 규제한 후, ② 기능과 성능이 아날로그 감지기와 동등하고, 「화재안전기준」대로 설치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하기로 함
- 그러나 정작 기능과 성능이 동등한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검토기준, IoT 화재경보시스템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아날로그감지기는 ① 무선방식일 경우 **배터리 수명 10년** ② 화재 발생 전 평상시에도 **실시간으로 신호를 전송**해야 함
- 무선업체는 위 요건이 **유선 방식을 전제**로 하므로 **무선방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수명을 단축하나 신호전송 주기를 늘리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 이에 소방산업기술원은 무선방식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 전 평상시 **신호전송 주기를 200초로 완화**할 것을 소방청에 **건의**
- 하지만 소방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무선방식 아날로그감지기의 공동주택 진입에 **애로 우려**

조치할 사항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람(징계)**
- **소방청장은** ① 공동주택에 아날로그감지기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검토 및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태만히 한 관련자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② 화재알림설비(IoT 화재경보시스템 포함)의 진입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및 기준 등의 제·개정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아날로그감지기에 유·무선 통신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통보, 주의)**

※ 자세한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전문 참조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관련 감사제보사항

경기남부경찰청 및 충북경찰청 정기감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실태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인허가 관련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금융위원회 정기감사

울산광역시 정기감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기관별 감사결과

기관별 감사결과 통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료실

법령 및 규정 자료

간행물

결산검사보고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보고

격월간 감사

  "격월간 감사" (감사원) [신청시 공개] 참조

감사연보

2022년 감사연보

2021년 감사연보

2020년 감사연보

“앞으로도 감사원은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국정 감시자로서의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최고감사기구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을 극복하고 하반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 극복에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여전히 일말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가 맡은 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감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망과 공직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 지원’,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 제고’,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감사 방향을 구체화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 전망을 하도록 하였고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운용 필요성을 재정당국에 권고 하였습니다.

머리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지출수요는 감소하는 반면에 내국세 교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내국세 교부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준비 부족 등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집행되지 않은 자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R&D사업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연구과제가 실패로 판정받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평가를 통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부정책의 실질적 성과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진단의 품질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사고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여 국민이 느끼는 실제 안전체감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약관을 내버려두고 있거나 분쟁조정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권익구제를 위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공직사회가 위기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폭넓은 면책원칙을 정립함과 동시에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수행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위기 대응대책 등과 관련한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패스트트랙으로 운영하여 총 11건을 접수일로부터 5일 내 처리하는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자 애썼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직자 165명을 징계·고발 등 조치하였고, 256억 원을 변상·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 절감·국민편익 등의 기대효과 금액이 2조 1,788억 원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99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공공기관 결산서를 검사하여 국가 결산에서는 자산 관련 3,036억 원과 부채 관련 1,744억 원의 회계오류를, 공공기관 결산에서는 자산 관련 693억 원의 회계오류를 발견하여 시정하였고 내부회계 관리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회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감사원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감사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감사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보고서 구성을 개선하는 등 좋은 감사 구현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감사원의 업무처리 기준이 되는 규칙·훈령 등 51건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교육방식을 변경하여 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감사환경 분석, 감사제도·성과감사 방법론 연구 등을 통하여 감사원 감사를 내실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감사원은 2020년 6월 중견국 외교의 핵심인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믹타 감사원장회의를 출범

하기로 하고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수렴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유럽 및 영어권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제형사 재판소의 외부감사인으로서 선임되어 감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 국정 감사자로서의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최고감사기구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 감사연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원의 감사 방향과 감사실시 현황, 주요 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수록함과 아울러 감사지원 활동과 주요 감사통계 등도 함께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유용한 자료로 참고되고, 국민이 감사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주요 동정

1 2020년 감사원 사무식 2020. 1. 2. 목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2020년도 사무식을 개최하였다.

2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 방문 2020. 1. 10. 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3 사회복지시설 위문 삼동소년촌 2020. 1. 21. 화



최재형 감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삼동소년촌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동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냈다.

4 2020년 감사관계관 회의 2020. 1. 31. 금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감사기구 간 협력 방안 및 공공감사체계의 발전 등을 논의하였다.

2020년 감사관계관



5 신임감사관 자격증 수여식 2020. 2. 5. 수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강도 높게 진행된 신임감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감사관 자격을 취득한 신임직원들에게 감사관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6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2020. 2. 10. 월



김상규 감사위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7

김상규
감사위원 퇴임식
2020. 2. 17. 월

김상규 감사위원 퇴임식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8

임찬우
감사위원 취임식
2020. 2. 18. 화



임찬우 감사위원 취임식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9

최재형 감사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2020. 2. 19. 수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출입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감사 방향 등을 밝혔다.



10

감사원 단체헌혈
2020. 2. 28. 금



최재형 감사원장, 김종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직원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상황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단체헌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였다.

2020 주요 동정

11 이준호
감사위원 퇴임식
2020. 4. 3. 금



이준호 감사위원 퇴임식이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2 감사원 사이버
보안센터 개소식
2020. 4. 8. 수

감사원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등 IT 기반 감사프로세스 도입에 따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사원 사이버보안센터'를 개소하였다.



13 남양주
보훈요양원
위문금 전달
2020. 6. 16. 화



감사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남양주보훈요양원에 최재형 감사원장 명의의 위문금과 감사 서한을 전달하였다.

14 신임감사관
자격증 수여식
2020. 6. 16. 화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강도 높게 진행된 신임감사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감사관 자격을 취득한 신임직원들에게 감사관 자격증을 수여하였다.



15 제55차 ASOSAI
이사회 화상회의
2020. 7. 27. 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5차 ASOSAI 이사회에 이사국 자격으로 참여하여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ASOSAI 위기대응 워킹그룹' 발족을 제안하였다.

16

사회복지시설
꿈나무마을
위문

2020. 9. 24. 목



감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서울시 은평구 소재 꿈나무마을을 방문하여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17

감사원 단체헌혈

2020. 10. 30. 금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수급 상황 악화 문제를 해소하고 단체헌혈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랑의 헌혈 행사에 동참하였다.



18

제7회 공공감사
포럼 신기술
R&D 공법적
규율과 감사

2020. 10. 30. 금



감사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와 "신기술 R&D 공법적 규율과 감사"란 주제로 제7회 공공감사포럼을 개최하였다.

19

신임감사관
후보자과정 특강

2020. 11. 20. 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교육원에서 감사관 전문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감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다.



20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2020. 12. 4. 금



감사원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일대 형편이 어려운 이웃 100여 가구에 쌀과 라면을 전달하였다.

— 제1장

현황

제1절 감사원 현황	2
1. 임무와 기능	2
2. 조직과 인원	9
3. 예산과 결산	12
제2절 감사대상기관 현황	13
1. 대상기관과 인원	13
2. 대상기관의 예산	14

— 제2장

감사활동

제1절 감사 방향	18
1. 감사운영 기초	18
2. 2020년 감사 방향	19
제2절 감사 실시 현황	22
1. 실지감사	22
2. 감사청구·요구	24
3. 서면감사	28
제3절 감사위원회의 운영	29
제4절 감사운영 개선	30
1. 감사운영 개선	30
2. 감사업무 관련 규정 정비	33
3. 직제 개정	37
제5절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8
1. 구성	38
2. 운영 현황	39

감사 결과

제1절 감사 결과 처리 개황	42
1. 총괄	42
2. 처리 종류별 감사 결과	44
3. 회계·감찰별 감사 결과	48
4. 모범사례 발굴·전파	49
제2절 감사중점별 주요 감사 결과	50
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50
1.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50
2.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68
3.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 실태	83
4.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 실태	93
5.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104
6. 납세자 권리 보호 실태	114
7.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	123
②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확보 지원	133
1.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실태	133
2. 전력공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149
3. 한국산업은행 기관운영감사	163
4.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운영감사	177
5. 인천도시공사 기관정기감사	190
6.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정기감사	199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관정기감사	209
③ 민생·안전시책의 성과와 국민체감도 제고	215
1.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실태	215
2.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실태	228
3. 승강설비 안전관리 실태	251
4.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 실태	262
5.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280
6.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 실태	297
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	322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334

— 제3장

감사 결과

④ 깨끗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349
1. 공직비리 기동점검	349
2.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 실태	357
3.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 점검(민생분야)	369
4.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381
5. 국방과학연구소 기관운영감사	390
6.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13
7.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422
8. 충청남도 기관정기감사	441
제3절 감사요구 등에 대한 감사 결과	456
① 국회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	456
1. 국방부의 공공요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실태	456
2.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463
3.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468
② 국민·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479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 실태	479
2.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490
3.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504
4. 국민연금 관리 실태	519
5.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 실태	534
6.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 측근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관련	546
7.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정책 관련 공익감사청구	555
8. 7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 반출 적정통보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560
9.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비위행위 관련	566
10. 완주군의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570
11.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표이사의 직권남용 등 관련	582
12. 강릉시의 공유재산 매각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적정 여부 관련	598

13. 안산시의 위법한 인사행정 관련	604
14. 청주시 소각장 이전협약 체결 관련 공익감사청구	610
제4절 모범공직자와 모범기관 발굴·전파	615
1.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616
2. 기타 유형별 주요 사례	620
제5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635
① 국가 결산검사	635
1. 국가 세입·세출 등 결산	636
2. 재무제표 검사	640
3. 성과보고서 검사	652
4.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655
② 공공기관 결산검사	656
1. 재무 상태와 손익 현황	657
2. 재무제표 검사	658
3.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666

— 제4장

감사 관련 업무

제1절 적극행정면책	670
1. 접수·처리	670
2. 주요 사례	672
3.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현황	674
제2절 심사청구	677
1. 접수·처리	677
2. 주요 심사결정례	679
제3절 재심의	686
1. 접수·처리	686
2. 주요 재심의 결정례	688

— 제4장

감사 관련 업무

제4절 법령 의견표시	694
제5절 감사제보	696
1. 개요	696
2. 감사제보	698
3.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항	705
4. 우수 감사제보사항에 대한 포상	706
제6절 자체감사기구와 협조	709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710
2. 자체감사활동 심사	713
제7절 국회 관련 업무	718
1. 국회 임시회	718
2. 국회 정기회	719

— 제5장

감사지원활동 등

제1절 감사교육	724
1. 감사원 직원 교육	724
2. 자체감사 직원 교육	727
3.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729
4. 사이버 교육	730
5. 국제 공공감사 교육	732
제2절 감사연구 활동	733
1. 개요	733
2. 주요 연구활동	735
3. 대외 협력 파트너십 내실화	738

제3절 국제협력 증진	741
1. ASOSAI 활동	741
2. MIKTA 감사원장회의 활동	744
3. INTOSAI 연구활동 참여	745
4. 외국 감사원과 교류협력약정(MOU) 체결	746
5. 영문 감사콘텐츠 내실화	747
6. 국제형사재판소 감사	749
제4절 전산시스템 개선	750
제5절 감사자료 수집·활용	752
제6절 사회봉사활동	754
1.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754
제7절 기타	755
1. 인사	755
2. 시설과 장비 개량	758
3. 비상계획 업무	763
4. 동호인회 활동	766
5. 행사	768

— 제6장

주요 통계

1. 주요 통계 현황	772
2. 감사원 현황(2011~2020년도)	778
3. 감사대상기관과 인원(2016~2020년도)	781
4. 감사활동 결과(2011~2020년도)	782
5. 감사 실시 상황(2020년도)	789
6. 감사 관련 업무처리 현황	794
7. 감사교육 진행 현황(2011~2020년도)	800

— 부록

1. 감사원장 기념사 등	804
2. 감사원 연혁	812
3. 감사원 사무분장	836
4. 감사연구원 연구과제 등 수행 현황	848
5. 2020년도 인사·포상 현황	852
6. 직원 명단	869

감사백서

  "감사백서" (감사원) 참조

감사원결정례집

감사원결정례집(2020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하여 그 집행을 요구한 것이 12건(금액 기준 754백만 원)이었다.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한 것은 86건(인원수 134명)이었다.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한 것이 50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은 577건이었다.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령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6건이었다.
- 감사결과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시정,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으며,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이 1건, 통보한 것이 812건(모범사례 23건 포함)이었다.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2020년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한 것은 7건(인원수 14명)이었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이 감사원에서 2020년에 처리한 감사결과 1,551건 중 감사결과 처리의 선례가 되거나 법규 적용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등을 위주로 40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러두기

1. 용어 설명

변상판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 「감사원법」 제31조
징계·문책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것 「감사원법」 제32조
시정요구	위법·부당 사항에 관하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추징·회수·보전·취소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것 「감사원법」 제33조
주의요구	위법·부당 사항에 관하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령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것 「감사원법」 제33조
개선요구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감사원법」 제34조
권고·통보	징계·시정·주의·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하는 것 「감사원법」 제34조의2
관계 기관	위법·부당 사항을 집행한 기관 또는 단체(소관 기관)나, 감사결과 시행일 현재 조치할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조치 기관)

2. 감사원은 2015년 하반기에 감사보고서의 작성체계 등을 개편하는 「새로운 감사 프로세스」를 전면 도입하였고, 이후에도 지속하여 보완·개선하고 있어 사례별로 서술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3. 사례별 '결정 요지, 결정의 의의, 참고할 사항'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의 일부가 아닙니다.
4. 결정례 공개문 등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 원문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정·편집하였습니다.
5. 결정례가 포함된 해당 감사사항의 전체 감사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 감사결과 - 분야별 감사결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사례별로 게재되어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QR코드 이용 방법
 - 스마트폰에 ① QR코드 스캐너(또는 QR코드 리더기 등), ② 한컴오피스 Viewer(또는 Polaris Office 등) 앱(App) 모두 설치 → 열람을 희망하는 결정례의 QR코드를 ①번 앱으로 스캔하여 파일 다운로드(일정 시간 소요) → ②번 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된 파일 열람
 -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QR코드 이용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QR코드 이용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감사원 결정례집』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 자료실 - 간행물'에서 전자책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감사결과 처리의 선례가 될 사항

[1] 장기 재정전망 분야 실태분석	010
[2] 연구비 집행잔액의 회계처리 및 집행 부적정	042
[3] 자체수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부적정	050
[4] PFV와 민간 주주사 간 고가·저가 특혜계약 등 부당 처리	060
[5] 대행사업 등 정산을 위한 금융비용 산정기준 마련 필요	108
[6] 특별승진 임용업무 등 인사·조직업무 부당 처리	114
[7] 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계약 대행업무 부당 처리	134
[8] 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조직 재구조화 추진 미흡	154
[9] 3·4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기존 직급 편법 유지	164
[10] 7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 부적정	174

2

법규 적용·해석 등 행정업무의 기준이 될 사항

[11]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요건 보완 필요	182
[12] 지중송전설비의 도시공원 등 점용 관련 법령 개정 필요	192
[13] DLF 투자 근거규정 불명확 및 투자 시 사전심의절차 등 내부통제제도 미흡	200
[14] ㄱ 도시개발사업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 위법·부당 수리	208
[15] 영업점 경비용역 계약업무 부당 처리	222
[16] 국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처리에 대한 무책판정	232
[17] 식품명인제품 사후관리 관련 법령 근거 미비 및 고시 규정 불합리	238
[18] ㄷ공원 및 ㄹ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244
[19] 촌외훈련비 등 관리·감독 부적정	256
[20] 보증료 환불 및 지연손해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272

3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21] 기본형 건축비 산정 부적정	278
[22]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 시 용도지역 적용 부적정	288
[23]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 운용 부적정	298
[2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개선 미흡	312
[25]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지급기준 미비	326
[26] 코로나-19 피해 등 소상공인 지원 제도 운영 불합리	332
[27] 겸직·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및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344
[28] 노면표시 설치공사 부당 준공처리 및 불법 하도급 목인 등	356
[29]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관련 규정 미비	370
[3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및 검사 주기 등 산정 부적정	376

4

완결성이 높아 감사보고서 작성의 모범이 될 사항

[31]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관리 부적정	386
[32] 배전선로 시공 및 유지·관리 부적정	396
[3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금액 등 결정방법 부적정	410
[34] 국민연금 장기 재정목표 설정 필요	426
[35]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미흡	444
[36] 대면편취절도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	456
[37] 점검 대상 선정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점검이 이루어지는 반면, 필수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은 누락	464
[38] 승진임용 업무 처리 부적정	474
[39]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 추진으로 혁신기술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에 기여	484
[40] 국가연구개발사업 성실수행 제도 개선 필요	490
색인표	502
처분요구 등 종류별 사건 색인	503
관계 기관별 사건 색인	503
관계 규정별 사건 색인	504
사항별 사건 색인	506



- 감사사항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2020. 5. 1. 시행)
- 처분요구 등 종류 통보
- 관계 기관 기획재정부
- 관계 규정 「국가재정법」 제7조 등

■ 결정 요지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인구추계 등 재정전망의 전제가 변경되어 종전의 전망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관련 개선대안 마련 시 활용하도록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

■ 결정의 의의

감사원은 2015년의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 중장기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여건 변화(전망전제 변경 등)를 고려하여 향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때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는 등 장기 재정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망전제 도출 및 전망결과 추계 등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면서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인구추계 등)가 변경되거나 사회보험 부분의 전망이 변경되었는데도 종전의 전망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 논의내용 및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였다.

이 결정례는 정부에서 2015년 최초로 실시한 장기 재정전망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여 국가의 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참고할 사항

감사원의 통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연구를 거쳐 개선 예정

■ 결정례 공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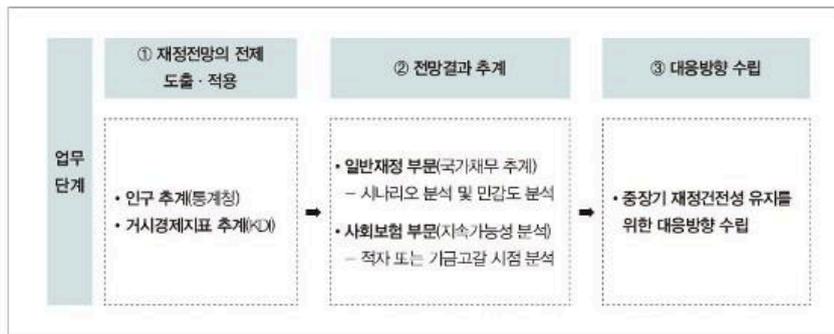
내 용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최초로 장기 재정전망(‘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 8월 두 번째 장기 재정전망(‘2065년 장기 재정전망’) 업무에 착수하여 2020년 2월 감사일 현재 진행 중(2020년 중 발표 예정)이다.

장기 재정전망은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고, 장기 재정전망 업무는 [그림 5]와 같이 전망 대상을 재원에 따라 일반재정 부문(국고로 충당)과 사회보험 부문(보험료로 충당)으로 구분한 후,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전망전제를 도출하여 일반재정 부문과 사회보험 부문에 각각 적용하여 전망결과를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5] 장기 재정전망 개요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2015년에 실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내용을 업무 단계별(재정전망의 전제 도출·적용, 전망결과 추계, 대응방향 수립)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전망의 전제 도출 · 적용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2011년에 실시한 장래인구 추계(이하 “2011년 인구 추계”라 한다) 결과를, 거시경제지표 추계는 KDI가 2014년에 실시한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추계(이하 “2014년 거시경제지표 추계”라 한다) 결과를 각각 적용하였다.

(아래)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적용한 전망전제

- (인구 추계) 통계청 '2011년 인구 추계' 적용(추계기간: 2010~2060년, 중위 기준을 적용)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8년에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 진입, 2060년에 노인인구비율 40% 도달(노인 절대인구수는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
- (거시경제지표 추계) KDI가 2014년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추계(추계기간: 2014~2060년)

경제성장률 전망(2014년 거시경제지표 추계)

2016~2020년	2020~2030년	2030~2040년	2040~2050년	2050~2060년
3.6%	2.6%	1.9%	1.4%	1.1%

2. 전망결과 추계

위 전망전제를 적용하여 추계한 일반재정 부문(국가채무 추계)과 사회보험 부문(지속가능성 분석)의 전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재정 부문: 국가채무 추계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국세 및 세외수입 등 국고로 충당하는 일반재정 부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으로 구분하여 총수입과 총지출을 추계한 후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였다.

(아래)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및 민감도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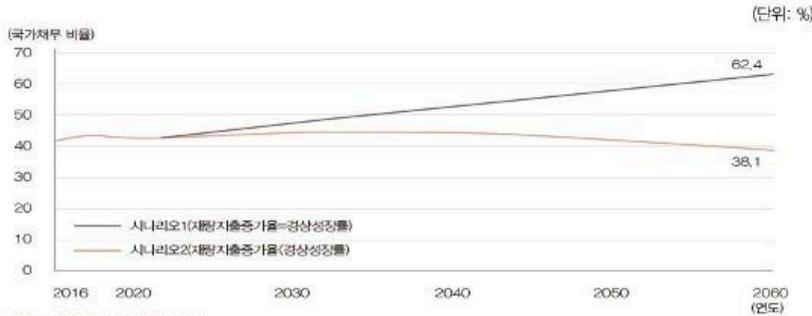
- 시나리오 분석: 재정전망의 기준선(Baseline) 분석으로서 의무지출 등의 경우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재량지출과 경상성장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가지 시나리오(시나리오 1 : 재량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 시나리오 2 : 재량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을 설계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
-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1' 분석의 모형과 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별 변수가 발생했을 때 '시나리오 1' 분석 결과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변동 내역을 분석하는 것으로 개별 변수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3가지,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 3가지 등 6개로 정하고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국가채무 비율이 어느 정도로 증감하는지 추기로 전망

1)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재량지출과 경상성장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도표 11]과 같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경우(재량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 시나리오 1)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62.4%까지 상승하고, 매년 세출구조조정(매년 자연증가하는 재량지출액 중 10% 규모)을 통해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경우(재량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 시나리오 2)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기준 62.4%에서 3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도표 11]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2) 민감도 분석 결과

기준선(Baseline) 분석인 위 시나리오 분석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3가지)으로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 ③ 저성장 리스크,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3가지)으로 ① 세출구조조정, ② 재정지출 제한, ③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을 제고 등 총 6가지(아래 참고)의 민감도 요인을 정한 후 각각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였다.

(아래) 민감도 분석 대상 요인(6가지) 주요 내용(가정)

- (악화 요인)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2020년 10조 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경우, 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매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계·인상할 경우, ③ 저성장 리스크: 연평균 실질성장률(2016~2060년)이 '시나리오 1' 대비 0.3%p 하락할 경우
- (개선 요인) ① 세출구조조정: 매년 지연증가하는 재정지출액 중 10%를 세출구조조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와 동일), ② 재정지출 제한: 재정지출 증가율을 둔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③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을 제고: 출산율 제고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가 완화되는 경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88.8%, 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 시 99.2%, ③ 저성장 리스크 시 94.6%로 각각 전망하였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하여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① 세출구조조정 시 38.1%, ② 재정지출 제한 시 △73.4%(순채권 발생), ③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을 제고 시 재정건전성이 개선(구체적인 수치는 미제시)될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다.

일반재정 부문의 전망결과(2060년 국가채무 비율)를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전망결과(일반재정 부문)

구분	내용(가정 등)	전망결과(국가채무 비율)	
시나리오 분석	재정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시나리오 1)	62.4%	
	재정지출 증가율(경상성장률(시나리오 2))	38.1%	
민감도 분석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	① 신규 의무지출 도입	88.8%
		② 의무지출 단가 상승	99.2%
		③ 저성장 리스크	94.6%
	재정건전성 개선 요인	① 세출구조조정(위 '시나리오 2'와 동일)	38.1%
		② 재정지출 제한	△73.4%(순채권 발생)
		③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따른 성장을 제고	재정건전성 개선

자료: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재구성

나. 사회보험 부문: 지속가능성 분석

보험료로 충당되는 사회보험 부문(8개)의 경우 이를 다시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4개)과 '적자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재정지원 받는 연금 및 보험'(4개)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의 경우 [표 19]와 같이 국민연금기금¹⁾은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7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42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2019년에 적자가 전환되나 2055년 흑자로 전환되며, 고용보험기금은 2060년까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9]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전망결과(사회보험 부문)

구분	사회 연금·보험명	전망결과(분야별 전문기관의 추계결과 사용)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	국민연금	2044년 적자 발생, 2060년 기금 고갈
	사학연금	2027년 적자 발생, 2042년 기금 고갈
	산재보험	2019년부터 2054년까지 적자(2055년 흑자 전환)
	고용보험	2060년까지 흑자 유지
재정지원을 받는 연금 및 보험	공무원연금	2060년까지 지속 적자
	군인연금	2060년까지 지속 적자
	건강보험	2022년 적자 발생, 2025년 고갈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적자 발생, 2028년 고갈

자료: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재구성

그리고 '적자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재정지원 받는 연금 및 보험'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기금은 2022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25년에 기금이 고갈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은 202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2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아하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사학연금",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산재보험",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보험"이라고 각각 약칭함

3. 대응방향 수립(「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2015. 12. 4. 발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2항”의 전망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 20]과 같이 ① 적정 국가채무 등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②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③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대응방향을 수립하였다.

[표 20]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의 대응방향 수립 내용

대응방향	내용
재정준칙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지출의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준칙을 도입하고, 의무지출의 경우 신규 의무지출 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계획을 의무화하는 ‘Pay-go’* 제도를 도입하는 등 - 적정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 * 페이고(Pay as you go):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페이고 제도 등 재정준칙 도입 추진
사회보험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담·급여 구조에서는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등 유지가 곤란하므로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연금재정 건전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선택패키지를 검토·제시하여 사회적 합의도출 필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이 필요 - 결혼·보육·교육 등 진 과정에서 가족친화적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 - 청년·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유도, 인적자본투자·R&D 지원 등 중장기적 생산성 향상 유도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및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실태분석 방법

장기 재정전망의 경우 전망의 특성상 어느 정도 추계오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가정·전제 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망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전망 결과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대신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 중장기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여건 변화(전망전제 변경 등) 등을 고려하여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때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장기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등 장기 재정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6]과 같이 ① 전망전제 도출 및 전망결과 추계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실태는 물론,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향후 대응방향)의 이행 상황 등을 분석하고, ② 재정전망의 근거가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림 6] 장기 재정전망 실태분석 개요

구분	분석대상	
① 업무 단계별 실태	전망 전제 도출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청(인구·KDI)·거시경제지표가 실시한 전망전제 도출 결과의 변동내역 분석
	전망 결과 추계	[일반재정 부문] · '시나리오 분석' 관련: 재정지출 증가율 분석 등을 통해 시나리오 보완 필요성 검토 · '민감도 분석' 관련: 사회연금·보험의 적자보전 여부에 따른 민감도 분석 필요성 검토 [사회보험 부문]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보험 부문의 추계결과(적자 발생 및 기금 고갈 시점 등) 변동내역 분석
	대응방향 수립	·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수립한 대응방향의 이행 상황 분석
② 근거 공개 실태	· 근거 법령 및 국내·외 사례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공개범위 확대 필요성 검토	

그리고 감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정전망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해외(OECD) 사례 등도 분석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Ⅰ 장기 재정전망 업무의 개선 필요성 점검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목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성장률 등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으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²⁾

2) 「2060 장기 재정전망」보고서(2015. 12. 4. 발표) 등 관련 자료 참고

한편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이를 고려³⁾하여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장기 재정전망의 유용성이 저하될 경우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장기적인 관점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①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가 다음 전망시점(전망주기: 5년)까지 유효할 수 있도록 가정·전제의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유용성 측면), ②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의 관계 등 장기 재정전망에 사용되는 가정·전제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여야 한다.(현실성 측면)

1. 재정전망의 전제 도출·적용 관련

장기 재정전망에 활용되는 전제는 일반재정 및 사회보험 부문 등 모든 분야의 총수입·총지출 추계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항목으로 전제가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전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의 장기 재정전망 사례(표 10) 참고를 살펴보면, 미국·캐나다 등 매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나라는 전망결과의 유용성에 문제가 없으나(전망결과가 1년마다 갱신됨), 스웨덴·독일·호주·뉴질랜드 등 주기적(2~6년)으로 전망을 하는 나라는 아래 사례와 같이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반영하는 등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3)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와 근거를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 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

(아래) 관련 해외 사례

국가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내용
미국(OMB)	단년도 예산안에서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전망을 통합하여 장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세증가 또는 지출 감축 내용을 제시
EU(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장기시계의 수입·지출 전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중기재정목표와 이행계획 제시
호주	장기 재정전망에서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을 제시
뉴질랜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입·지출전략을 제시

자료: 감사원 자체 분석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도 장기 재정전망의 결과를 중기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60년 장기 재정전망」(2015년)에서는 인구의 경우 통계청의 2011년 인구 추계를, 거시경제지표의 경우 KDI의 2014년 거시경제지표 추계를 전망전제로 활용하였다.

통계청은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 2016년(추계기간: 2015~2065년)과 2019년⁴⁾ (추계기간: 2017~2067년)에 인구 추계를 추가로 실시하였고, KDI도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위해 거시경제지표 추계(추계기간: 2018~2088년)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생산가능인구 비율, 합계출산율, 경제성장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등의 지표가 [표 21]과 같이 모두 감소하는 등 변동되었고, 이를 고려하면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보다 악화(국가채무 비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4) 「통계법」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호)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구 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3년 만인 2019년에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실시하였고, 향후 2년 단위로 인구 추계를 실시할 예정

【표 21】 인구 추계 및 거시경제지표 추계의 변동내역 비교⁵⁾

전제	지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당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	
인구	생신가능인구	(2011년) 인구의 49.7%	(2016년) 인구의 49.6%	(2019년) 인구의 48%
	합계출산율	(2011년) 1.42명	(2016년) 1.38명	(2019년) 1.27명
거시경제지표	경제성장률	(2014년) 0.87%	(2018년) 0.6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14년) 1.35%	(2018년) 1.10%	

주: 모든 지표는 2060년 전망치 기준으로 작성·비교
 자료: 조세연 자료 재구성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가 변동된 경우 그 변동내역을 비교·분석하거나 전망전제의 변동으로 인해 중전의 전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인구 추계는 앞으로 2년 단위로 실시될 예정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⁶⁾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전 전망결과와의 유용성 저하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⁶⁾

참고로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 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완·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표 12]와 같이 응답자의 78.6%는 전망전제 등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분석·설명하거나 장기 재정전망 시기 자체를 앞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5) 예를 들어 통계청의 경우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이후 2년 단위로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실시·발표할 예정
 6) 장기 재정전망을 매년 실시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전망결과가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어 중전 전망결과와의 유용성 저하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도표 12] 전망전제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완·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종전의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가 그 다음 장기 재정전망 전에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내역을 비교·분석하거나 전망전제의 변동으로 인해 종전의 전망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등 장기 재정전망의 유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망결과 추계 관련

가. 일반재정 부문

1) 시나리오 분석 관련

시나리오 분석은 현행 정책이 유지(의무지출 등)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지출 수준을 가정하여 그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는 분석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지출 수준이 현실과 부합될 필요가 있다.

「2060년 장기 재정전망」(2015년)에서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경우(시나리오 1)와 매년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경우(시나리오 2)를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전망하였다.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가정과 달리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증가]

이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제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2]와 같이 2016년과 2017년에는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각각 4.5%p, 5.6%p 낮았으나(‘시나리오 2’의 가정과 유사), 2018년과 2019년에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설계한 가정과 달리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상황(각각 1%p, 7.6%p 높음)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2016~2019년 재량지출 증가율 및 경상성장률 비교(실제값)

(단위: %, %p)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량지출 증가율(A)	0.5	Δ0.1	4.1	8.7
경상성장률(B)	5.0	5.5	3.1	1.1
차이(A-B)	Δ4.5	Δ5.6	1	7.6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그리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량지출 증가율(연평균) 전망과 경상성장률(4개년 추정치) 전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3]과 같이 재량지출 증가율(연평균 5.3%)이 경상성장률(3.8~4.1%)보다 1.2~1.5%p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23] 2020~2023년 재량지출 증가율 전망 및 경상성장률 전망의 비교

(단위: 조 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규모	257.8	276.1	285.8	301.3	5.3
경상성장률	3.8	4.1	4.1	4.1	-

자료: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구성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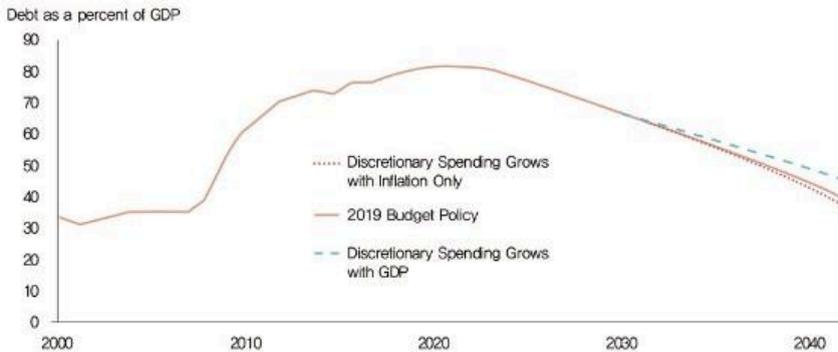
한편 해외 주요국 중 미국 예산관리국(OMB)[FY 2020 Analytical Perspectives(2019)]⁷⁾의 최근(2019년) 장기 재정전망 사례를 살펴보면, OMB는 [도표 13]과 같이 2019년도 예산 정책을

7) OECD 주요국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대신 주요 인구·거시경제변수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반영한 기본 시나리오⁸⁾ 전망(policy projection)을 기준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Optimistic)와 재량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나리오(Pessimistic)를 설계하여 이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을 각각 전망하였다.⁹⁾

[도표 13] 미국 OMB의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른 시나리오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단위: %)



자료: OMB, 「FY 2020 Analytical Perspectives」(2019)

참고로 2020년 장기 재정전망(「2065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때 변화된 여건(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음)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표 14]와 같이 응답자의 59.7%는 종전(「2060년 장기 재정전망」)의 시나리오 외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시나리오도 추가로 설계·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33.3%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시나리오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시나리오의 보완 또는 수정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높게(93.0%) 나타났다.

8) 2019년도 예산 정책을 반영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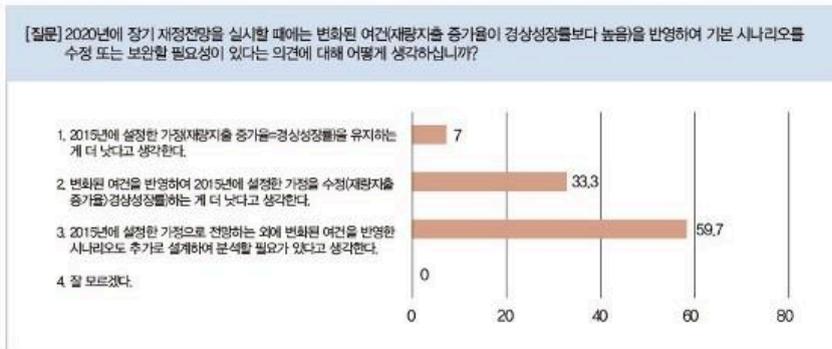
9) 미국 OMB의 경우 매년 단년도 예산안 제출 시 장기 재정전망을 함께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 주기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어 미국 OMB와는 기본 시나리오(기준선의 개념)이 상이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OMB는 차년도 예산 정책을 반영한 정책 시나리오 전망(policy projection)을 의미하는 기본 시나리오 분석(기준선)을 실시하면서, 인플레이션율과 인구증가율의 합만큼 재량지출이 증가한다고 전체(기본 가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기본 가정과 비교하여 재량지출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만큼만 증가한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만큼 증가한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하여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OMB처럼 단년도 예산정책을 기준선으로 삼을 수 없어 재량지출이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기본 시나리오(기준선)로 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낙관적 시나리오(재량지출 증가율을 10%씩 감소한 있고 비관적 시나리오)는 가정하고 있지 않음

[도표 14] 시나리오 분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시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민감도 분석 관련

민감도 분석은 위 시나리오 분석 이외에 '개별변수'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추가로 국가채무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개연성 있는 재정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 연금 및 보험'을 수지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로 보전하지 않은 연금·보험으로 분류하는 등 수지적자 문제가 일반재정 부문(국고로 충당하는 부문)의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대상¹⁰⁾으로 2개 기금이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의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있고(1998년 이후 총 6차례 보험요율 조정),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등 국민연금·사학연금(적립식으로 운용)에 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적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낮아 분석대상에서 제외

전망기간 내에 적자 발생 또는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지와 이 경우 국고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가)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재정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3차 재정계산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이하 “제3차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고,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제4차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제3차 재정계산(2013년)에 따르면 [표 24]와 같이 적자 발생 시점은 2044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으로 되어 있고, 제4차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적자 발생 시점은 2042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되어 있는바, 제3차 재정계산 시보다 적자 발생 시점은 2년, 기금 고갈 시점은 3년 각각 앞당겨졌다.

[표 24] 제3차 및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구분	제3차 재정계산(2013년)	제4차 재정계산(2018년)	비고(제3차 재정계산 대비)
적자 발생 시점	2044년	2042년	2년 앞당겨짐
기금 고갈 시점	2060년(-281조 원)	2057년(-124조 원)	3년 앞당겨짐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한편 제3차 계획(2013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재정목표가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은 제4차 계획 수립 시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4차 계획(2018년) 수립 시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¹¹⁾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다.¹²⁾

나) 사학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3조에 따르면 사학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0년에 이어 2015년¹³⁾에 사학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정책적 필요¹⁴⁾에 따라 사학연금 재정계산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15년 재정계산에 따르면 적자 발생 시점은 2027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42년으로 되어 있고, 2016년 추가로 실시한 재정계산에 따르면 적자 발생 시점은 2035년, 기금 고갈 시점은 2051년으로 되어 있는바, 2015년 재정계산 시보다 적자 발생 시점은 8년, 기금 고갈 시점은 9년 각각 늦춰졌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2000. 1. 12. 신설)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 발생 또는 기금 고갈 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¹⁵⁾

이와 같이 “가)항”과 “나)항”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표 25]와 같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각각 ①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국민연금 2057년, 사학연금 2051년)되고, ② 기금 고갈 시 정부 차원에서 국고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하거나 법률상 국고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등 국고 지원 가능성이 있다.

11) 다만, 제4차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만 되어 있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에만 국고로 보전할지, 적자 발생 시에도 국고로 보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음
 12) 20대 국회(의원입법) 또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을 발의·계류 중(2020. 2. 28. 기준)
 13) 2015년의 경우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점과 동일하여 협의회가 제공한 전망전제를 토대로 사학연금 재정계산 실시
 14) 2016년 3월 국립대병원 직원(약 28,000명)의 사학연금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재정계산을 추가로 실시
 15) 당초 정부에서 발의(제안일자: 1999. 11. 19.)한 법안에는 적자 발생 또는 기금 고갈 시 국고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제208회, 1999. 12. 13.)에서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때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53조의7을 신설하도록 변경

[표 25]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시점 및 국고 지원 가능성

구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비고
기금 고갈 시점	2057년 (제4차 재정계산)	2051년 (2016년 추가 재정계산)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내에 고갈 예상
국고 지원 가능성	국고 지원 방침 수립 (2018년 제4차 계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	국고 지원 가능성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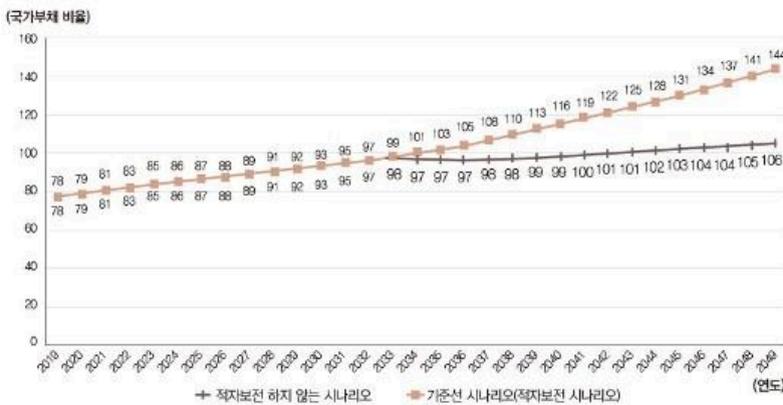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장기금(OASDI)의 적립기금 고갈 시 정부의 적자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데, 미국 의회예산처(CBO)[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2019)]는 이 경우에도 아래 사례와 같이 기금 고갈 이후 정부의 적자보전 여부를 가정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연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참고) 관련 해외 사례

- 미국 사회보장기금(OASDI)의 경우 2035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적자보전 여부 불확실*)
-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르면 연금수급자는 계획된 연금급여 전체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지만, 「적자방지법(Anfideficiency Act)은 이용 가능한 기금을 초과한 정부의 지출을 금지 → 두 연방법 간 충돌로 정부의 적자보전 여부 불확실
- ⇒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기금 소진 이후 정부의 적자보전 여부를 가정하여 장기 재정전망 실시

미국 사회보장기금(OASDI) 적자보전 시나리오별 국가부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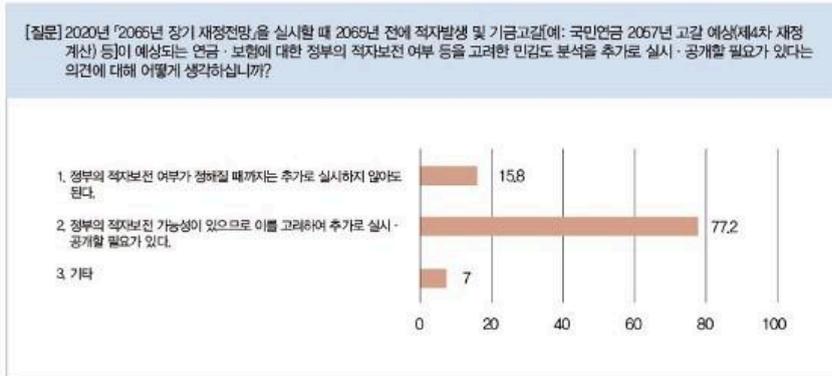


자료: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2019 Long-Term Budget Outlook」

참고로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국민연금 등의 국고 지원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필요성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표 15]와 같이 응답자의 77.2%는 정부의 적자보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실시·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¹⁶⁾

[도표 15] 민감도 분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민감도 분석' 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사회보험 부문

기획재정부는 2015년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면서 일반재정 부문과 달리 사회보험 부문의 전망결과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8개 분야별 전문기관이 추계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16) 이 외에 '기타의견'으로 민감도 분석은 정부의 적자보전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와 공개 여부는 경제환경이나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음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의 경우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과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전망과 자체 재정전망 실시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전망결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재정전망 주기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된 추계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16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와 '통합재정추계위원회'¹⁷⁾가 출범되어 2016년과 2018년¹⁸⁾에 추가적인 재정추계가 이루어졌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추계 과정에서 종전의 재정전망 결과와 비교하여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 시점 등에 있어서 주요한 변동이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종전 장기 재정전망 결과의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2017년 3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등에서 발표한 8대 연금·보험에 대한 중기 재정추계(2016년 추계 실시, 추계기간: 2016~2025년) 결과를 대상으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26]과 같다.

17)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는 통합재정추계를 총괄하고, 통합재정추계위원회는 부문별 추계 실무작업을 지휘

구분	구성원	기능 및 역할	비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기획재정부 2차관(위원장), 각 사회보험별 공단 이사장, 관계부처 1급 등 총 13명	통합재정추계 총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 발굴·제도 개선	법령상 설치 근거는 없음
통합재정추계위원회	민간전문가(위원장), 공단 연구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등 총 24명	공통추계 지침 마련, 보험별 추계결과 검증 등	

18)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추계시점을 기준으로 추계기간 및 추계방법 등을 통일하여 장기재정추계(2018~2087년)를 실시하였는데, 국민연금(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고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16년 적자 전환, 2025년 기금 고갈)의 경우 「2060년 장기 재정전망」(2015년 실시) 대비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결과가 도출되었음
 기획재정부는 향후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이후에도 8대 사회연금·보험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표 26] 8대 사회연금·보험별 재정추계 결과 비교

사회연금·보험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2016~2060년)	2016년 중기 재정추계 결과(2016~2025년)	비고
국민연금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기금 고갈	2025년까지 흑자 규모 확대 적립금 지속 증가	-
사학연금	2027년 적자 전환, 2042년 기금 고갈	2025년까지 흑자 유지(흑자 규모는 감소) 적립금 지속 증가	-
산재보험	2019년 적자 전환(2055년 흑자 전환) 2030년 기금 고갈	2025년까지 흑자 유지 적립금 지속 증가	-
고용보험	2060년까지 흑자 유지 (적립금 지속 증가)	2020년 적자 전환 2020년부터 적립금 감소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짐
공무원연금	2060년까지 지속 적자	2025년까지 당기적자폭 확대	-
군인연금	2060년까지 지속 적자	2025년까지 당기적자폭 확대	-
건강보험	2022년 적자 전환, 2025년 기금 고갈	2018년 적자 전환, 2023년 기금 고갈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짐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년 적자 전환, 2028년 기금 고갈	2016년 적자 전환, 2020년 기금 고갈	적자 전환 시점 앞당겨짐

자료: 기획재정부 등 자료 재구성

위 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6]과 같이 고용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전환 시점이 각각 2020년·2018년·2016년으로 되어 있는 등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보다 적자 전환 시점이 작게는 4년에서 크게는 40년까지 앞당겨졌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5년에 실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에는 2024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2028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016년에 실시한 중기 재정추계에서는 수급자 수의 급격한 증가¹⁹⁾ 등과 맞물려 2016년에 적자가 발생(당기수지: △888억 원)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2015년에 재정전망을 실시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실시한 재정전망에서 적자 전환 시점이 8년이나 앞당겨지는 등 전망결과가 크게 변동되었다.

이와 같이 2015년에 실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가 2016년에 실시한 중기 재정추계에 따라 변동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그 주요 변동내역을 비교·분석 또는 설명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수 확대를 위해 2016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조사 판단기준(5개 항목)을 완화

하고 있지 않아 종전 전망결과(「2060년 장기 재정전망」)의 유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전망결과의 변동은 계속 발생²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종전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사회보험 부문)가 그다음 장기 재정전망 전에 주요한 내용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장기 재정전망의 유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1항”과 같이 그 주요 변동내역을 비교·분석 또는 설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응방향 수립 관련²¹⁾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수립된 대응방향에 따라 국가채무·관리재정수지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지출 사업 도입 시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Pay-go)하는 것을 주요 내용(아래 참고)으로 하는 「재정건전화법안」(제정안)을 입안하여 2016. 10. 27. 국회에 제출하였다.

위 「재정건전화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한 근거 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20)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계산 주기(5년)에 따라 2023년 5차 재정계산을 실시할 예정
 21)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수립한 대응방향 중 '사회보험 개혁'의 경우 2016년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 통합 추계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회 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를 중심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2016~2020년)하였고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6년)을 수립할 예정에 있음
 이와 같이 '사회보험 개혁'과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 분야의 경우 중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독자적인 정책목표가 있어 별도의 감사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감사의 검토 범위에서는 제외하였음

(아래) '재정건전화법안' 주요 내용

가. 재정준칙 도입(제6조, 제7조)

- (국가채무 준칙)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45%로 설정하며, 국가채무 비율이 45% 초과 시 ① 국가채무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②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 의무
 - 다만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 가능
- (재정수지 준칙)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설정
 -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초과 시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의무 조항 등은 없음

나. 페이그(Pay-go) 제도 강화(제9조)

- 정부 또는 국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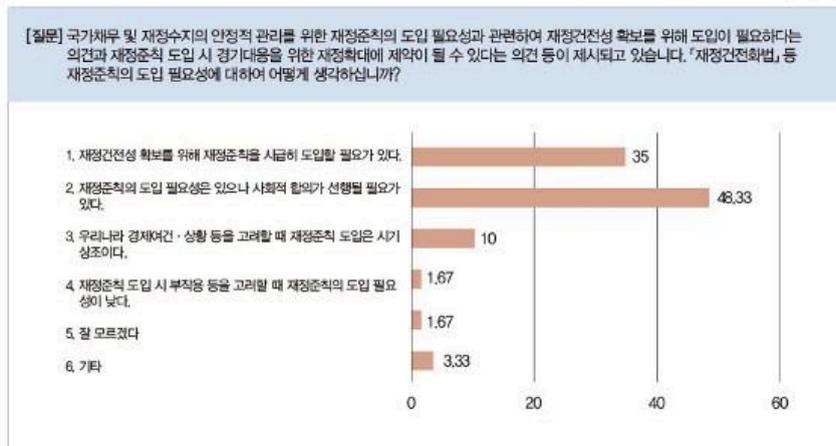
이후 위 법안은 2016. 10. 28. 소관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9. 11. 28. 이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2016. 10. 28. 관련 상임위(국회운영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되었으나 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는바(2020. 2. 28. 기준), 20대 국회 임기만료(2020. 5. 29.)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으나,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2015년 당시보다 장래 인구구조·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바([표 21] 참고), 2020년 실시 예정인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도표 16]과 같이 응답자의 35.0%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48.3%는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은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표 16] 재정준칙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단위: %)



자료: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만 위 제도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²²⁾의 경우 [표 27]과 같이 국가채무 준칙, 재정수지 준칙 또는 재정지출 준칙 등을 도입·운용하고 있는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반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²³⁾도 있는 등 재정준칙 도입 시장·단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경직적 운영은 오히려 경제적 위기를 증폭·확대할 우려도 있다.²⁴⁾

22) IMF(2012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일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준칙(63개국)이며, 2개 이상의 재정준칙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은 재정수지 준칙과 국가채무 준칙(51개국)임

23) 기획재정부가 KD로부터 납품받은 연구용역보고서인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관한 연구'(2018년 12월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이 좋은 재정정책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특히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으로 발생하는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24) EJ는 신중 감염병 등 확산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EJ의 재정준칙인 '안정·성장협약' 적용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2020. 3. 21. 기준)

[표 27] 재정준칙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재정준칙 유형	장점	단점	도입·운용 국가
국가채무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 단순하고 감득이 용이하여 통제가능성이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안정화 기능이 미약 최적의 부채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 	독일, 영국, 스페인, 체코
재정수지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안정화 기능이 미약 수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상 조작 가능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재정지출 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 단순하고 감득이 용이하여 통제가능성이 높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연관성이 부족함 조세지출 등을 통한 우회 위험이 존재함 	스웨덴, 미국, 폴란드, 네덜란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동향과 정책 시사점'(2013년) 재구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위 「재정건전화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내용²⁵⁾,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재정준칙 도입 시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전망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장기 재정전망 근거 공개 업무의 개선 필요성 점검

2015년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한 이후 2016. 12. 20.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법률 제14381호, 2017. 1. 1. 시행)되면서 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재정전망 근거'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정전망 근거 공개 관련 법령에 변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OECD 등 국제기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장기 재정전망에 적용된 핵심 가정·변수 등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2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하여 2016. 10. 28. 회부된 이후 2019. 11. 28.까지 전체회의 1회 상정, 소위원회 18회 상정 등 19회 상정

(아래) 재정전망 근거 공개 관련 국제기준

-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OECD, 2002)에 따르면 장기 재정전망 시 "전망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핵심 가정들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규정
- IMF Fiscal Transparency Code(IMF, 2019)에서도 "예산 전망은 거시경제적 전망에 기초하며, 거시경제적 가정은 공개되고 설명"하도록 규정

장기 재정전망의 경우 전망의 특성상 어느 정도 추계오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의 산출 내역 또는 산출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용할 경우 재정전망 과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재정전망의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우려가 있는바, 재정전망 근거 공개 관련 법령의 변화 및 국제기구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 등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공개 시 거시경제지표는 아래와 같이 경제성장률 1개 항목만 공개하였고, 이 외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이자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른 거시경제지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래)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중 거시경제지표 공개 내용(P.2, 18)

■ 성장률(4Q 전망)

2016~2020년	2020~2030년	2030~2040년	2040~2050년	2050~2060년
3.6%	2.6%	1.9%	1.4%	1.1%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았다.

먼저, 국내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표 28]과 같이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공개 시 경제성장률을 포함하여 이자율·경제활동참가율·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 5개 항목을 공개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또한 2015년 사학연금 재정계산 결과 공개 시 경제성장률을 포함하여 이자율·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등 4개 항목을 공개하였다.

[표 28] 장기 재정전망 결과 공개 시 거시경제지표 공개 범위 비교

거시경제지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국민연금(2018년)	사학연금(2015년)
경제성장률	O	O	O
이자율	X	O	O
경제활동참가율	X	O	X
실업률	X	X	X
임금상승률	X	O	O
물가상승률	X	O	O
자본소득증가율	X	X	X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X	X	X
노동생산성 증가율	X	X	X

주: 공개된 경우 'O', 비공개된 경우 'X'로 표시
 자료: 국민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 재구성

한편 해외 주요국의 거시경제지표 공개 사례를 살펴보면, [표 28]와 같이 미국(CBO)의 경우 장기 재정전망 시 사용한 거시경제지표 중 경제성장률·이자율·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PBO) 및 호주의 경우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 증가율 등 6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장기 재정전망 결과 공개 시 공개하는 거시경제지표 항목 수가 「2060년 장기 재정전망」시 공개한 항목 수보다 많다.

[표 29] 해외 주요국 장기 재정전망 결과 공개 시 거시경제지표 공개 범위 비교¹⁾

거시경제지표	한국	EU	미국 OMB ²⁾	미국 CBO ³⁾	캐나다 DFC ⁴⁾	캐나다 PBO ⁵⁾	영국 OBR ⁶⁾	호주 TCA ⁷⁾	뉴질랜드 재무성
경제성장률	O	O	O	O	O	O	O	O	O
이자율	X	X	O	O	O	O	O	X	O
경제활동참가율	X	O	X	O	O	O	X	O	O
실업률	X	O	O	O	O	O	X	O	O
임금상승률	X	X	X	O	X	X	X	O	X
물가상승률	X	X	O	O	X	O	X	O	O
자본소득증가율	X	X	X	X	X	X	X	X	X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X	O	X	O	X	X	X	X	X
노동생산성 증가율	X	O	X	O	O	O	X	O	O
비고(공개 항목 수)	1	5	4	8	5	6	2	6	6

주: 1. 공개된 경우 'O', 비공개된 경우 'X'로 표시
 2.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3.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4.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5.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7.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자료: o.o. 저문 결과 참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전망의 근거인 거시경제지표를 공개할 때 종전(「2060년 장기 재정전망」)보다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1. 기획재정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데, 종전 장기 재정전망 시 적용한 전망전제 또는 사회보험 부문의 지속가능성 분석결과가 그다음 장기 재정전망 전에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변동내역을 비교·분석하거나 종전의 재정전망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등 장기 재정전망의 유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전망전제 등 변경 시 변동내역 등을 분석·설명하는 방안 검토

- 변동내역 등을 분석·설명하는 방안의 경우 크게 장기 재정전망 시기를 앞당겨 실시·분석하는 방안(방안 1), 그 변동내역 등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비교·분석 또는 설명하는 방안(방안 2), 그 변동내역 등을 별도로 비교·분석 또는 설명(보도자료 등)하는 방안(방안 3) 등 3가지 방안 고려 가능

구분	방안 1	방안 2	방안 3
내용	장기 재정전망 시기를 앞당겨 실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분석 또는 설명	별로 분석 또는 설명 (보도자료 등)
장점	중진 재정전망의 유용성 저하 문제를 완전히 해소 (재정전망을 새로 실시)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운용과의 연계 강화, 「국가재정법」 미준수 [※] 등 문제 해소	전망전제 등 변경시점에 분석·설명함으로써 시의성 확보
단점	전망전제 등 변경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전망 작업에 1년가량 소요되어 비효율 발생	재정전망의 유용성 저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함(중진의 전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까지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	재정전망의 유용성 저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며, 중기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한계

주: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중장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기 재정전망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장기 재정전망'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방안 2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어 재정전망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방안 1)에 비해 분석 또는 설명하기에 용이한 장점이 있고, 별도로 분석 또는 설명(보도자료 등)하는 방안(방안 3)에 비해 장기 재정전망과 중기 재정운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법」(제7조 제2항 제2호) 미준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바, '방안 2'가 현실적인 개선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이와 관련하여 ○○ 설문조사 결과(도표 12) 참고)에서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전망전제 등의 변동내역을 비교·분석하거나 종전의 전망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방안(방안 2)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중이 응답자의 59%로 나타남

2. 2016년 이후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060년 장기 재정전망」 시 설정한 가정(시나리오)과 달리 재량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2018~2019년)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2020~2023년)되는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나리오 분석' 시에는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사학연금의 경우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내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기금 고갈 시 국고 지원 가능성이 있는바, 「2065년 장기 재정전망」 '민감도 분석' 시에는 국민연금·사학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2065년 장기 재정전망」 시 「재정건전화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내용,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재정준칙 도입 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준칙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등 전망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2065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함께 전망의 근거인 거시경제지표를 공개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국내·외 사례를 고려하여 '재정전망 근거'의 공개 범위를 종전(「2060년 장기 재정전망」)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① 전망전제 및 사회보험 부문 결과 변동 등으로 종전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경우 이를 비교·설명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고, ② 최근 재량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 실적치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사회연금·보험의 정부 적자보전 여부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 실시 필요성을 검토하겠으며(다만, 민감도 분석 실시 필요성과 분석결과 공개 시 국가채무 추계치의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확대 등 비교형량 필요), ③ 「2065년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관리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④ 장기 재정전망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거시경제지표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제언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하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개선대안을 마련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기타간행물

안전분야 공통개선과제 사례집

CONTENTS

사고제로를 향한 안전 대한민국

안전분야 공통개선과제 사례집

다음의 감사사례는 관련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 지적사항 원문을 편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 감사결과 → 분야별 감사결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I

기반시설(도로·철도) 안전관리

- | | |
|--------------------------------------|----|
| 01. 민자도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 08 |
| 02. 민자도로 터널의 제연설비를 부적정하게 운영 | 12 |
| 03. 가드레일 수평지력시험 부적정 | 17 |
| 04. 그라운드 앵커 시공 비탈면을 부적정하게 유지관리 | 22 |
| 05.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 미조사로 시설개량사업 대상에서 누락 | 27 |
| 06. 교량 하부구조 확대 시공부에 연결철근 미시공 | 31 |
| 07. 도로 위험구간 방호안전시설 미설치 및 미인증 제품 사용 | 35 |

IV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 | |
|---------------------------------------|----|
|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무허가 영업 | 78 |
| 02. 유해화학물질 부적합 취급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82 |
| 03. 기준에 미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정한 것으로 설치검사 | 87 |

II

건설기계 안전관리

- 01. 미등록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42
- 02. 적법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설계 및 공사 47
- 03.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를 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계속 사용 51

III

침수피해 예방

- 0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후에도 침수피해 미해소 58
- 0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몰토지 미매수 63
- 03. 부적합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지하차도가 재차 침수될 우려 67
- 04. 배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지속 발생 72

V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01. 점검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형식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94
- 02. 이상징후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부적정하게 관리 99
- 03.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103

VI

보행자 안전관리

- 01.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부적정하게 관리 111
- 02.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 115

기반시설(도로·철도) 안전관리

- 01. 민자도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08
- 02. 민자도로 터널의 제연설비를 부적정하게 운영 12
 - 03.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부적정 17
- 04. 그라운드 앵커 시공 비탈면을 부적정하게 유지관리 22
- 05.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 미조사로 시설개량사업 대상에서 누락 27
 - 06. 교량 하부구조 확대 시공부에 연결철근 미시공 31
- 07. 도로 위험구간 방호안전시설 미설치 및 미인증 제품 사용 35

01

민자도로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



감사 개요

감사사항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2021. 7. 12.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차선 재귀반사성능 유지관리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서울특별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관계 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도로관리 기관

감사 요지

21개 민자도로의 차선 도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 도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습윤(젖은 노면) 상태의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야간에 노면이 젖었을 시 차선식별이 안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해 차선을 재도색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민자도시도로의 주무관청으로서 민자사업자가 차선 도색 시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준수하여 유지관리하는지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차선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중 노면을 표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로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선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알려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재귀반사성능이 필요한 차선 도색의 설치재료

차선의 시인성(視認性)은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량 전조등 불빛이 반사되어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의 재귀반사(再歸反射, retro-reflection) 성능으로 측정하는데, 재귀반사성능이 필요한 차선은 노면표시용 도료에 도로표지용 유리알을 살포하여 시공하고 있다.

- 재귀반사성능 : 자동차 전조등에서 비춘 빛이 차선 도료용 유리알에서 굴절(반사)된 뒤 다시 운전자에게로 돌아가는 양의 정도

차선의 재귀반사성능



“차선 도색 성능향상 용역”(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도료의 경우 내구성이 우수한 5종 도료로 시공한 차선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2종 도료로 시공한 차선에 비해 재귀반사성능이 높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리알의 경우 굴절률이 차선의 재귀반사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천 시에는 빛이 입사되는 굴절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높은 유리알을 사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차선의 재귀반사성능 관련 설치·관리기준

차선 도색의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건조 상태에서의 기준만 의무사항으로 운영하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당초 권장사항이었던 습윤(濕潤) 상태의 기준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되었다.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단위: mcd/(m ² ·lx))				측정 방법
조사각	관측각	측정 조건	최소 재귀반사성능				
			백색	황색	청색	적색	
88.76° (1.24°)	1.05° (2.29°)	설치 시 (건조 상태)	240	150	80	46	설치 후 1주일이 지난 날부터 준공일까지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함
		젖은 노면 (습윤) 시	100	70	40	23	설치 후 젖은 노면에서 최소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유럽표준(EN1436)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유지관리 시	100	70	40	23	관리기준으로서 운영 중 건조 상태 및 습윤 상태 모두 기준을 만족하도록 유지해야 함(기준 미달 시 재설치 필요)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재구성

관련 기관의 시공방법 개선 조치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5년부터 습윤 기준(당시는 권장사항)을 충족하는 차선 도색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2종 도료와 일반 2호 유리알에 비해 내구성과 부착력이 뛰어난 5종 도료(상온경화형)에 우천 시 재귀반사성능이 우수한 혼합 유리알 [2호(일반)·2호(물잠김)]을 사용해 고속도로 차선을 도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도 2020년 12월부터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보로 구간에는 5종 도료와 유리알 2호(일반)를 사용해 차선을 도색하는 것으로 시공방법을 개선하였다.

개정된 재귀반사성능 기준에 미달하여 차선 도색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20개 민자도시도로의 경우 도로 관리 주체인 민자사업자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2019년 6월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에 사용하던 2종 또는 4종 도료와 일반 1호 유리알을 사용하여 차선을 도색함으로써 습윤 상태의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야간에 노면이 젖으면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에 차선 설치 및 하자검사 시 습윤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의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미달구간에 대해 재도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2

민자도로 터널의 제연설비를 부적정하게 운영



감사 개요

감사사항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2021. 7. 12.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터널 제연설비 운영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서울특별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관계 규정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도로 및 터널 관리 기관

감사 요지

18개 민자도로(22개 터널)의 제연설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개 터널에서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화재발생 상황별 운영 매뉴얼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제연설비가 부적정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해 제연설비를 운영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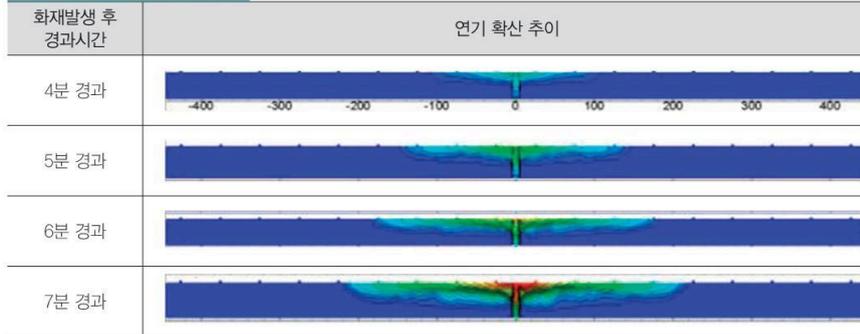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민자도시도로의 주무관청으로서 민자사업자가 도로터널의 방재시설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이하 “방재관리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하고 있다.

도로터널 화재의 특성

도로터널은 반밀폐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 유독가스 등이 터널 상층부로 상승하여 층을 이루어 종방향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연기로 인한 가시거리 감소, 유독가스 중독,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상, 산소 농도의 감소로 인한 저산소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간별 성층화 진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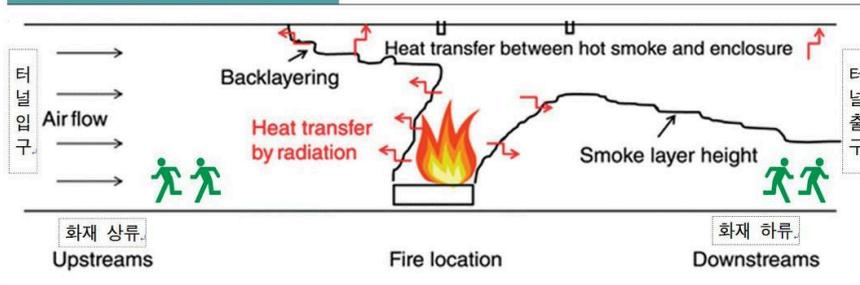
(거리단위: m)



도로터널 제연설비의 기능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연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터널 입·출구나 인근 피난공간 등으로 탈출할 수 있는 대피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트팬 등 제연설비가 터널 입·출구부 및 중앙부 등에 설치되어 압입운전(화재지점 뒤쪽에서 가동) 또는 흡입운전(화재지점 앞쪽에서 가동) 등의 방식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대피환경 확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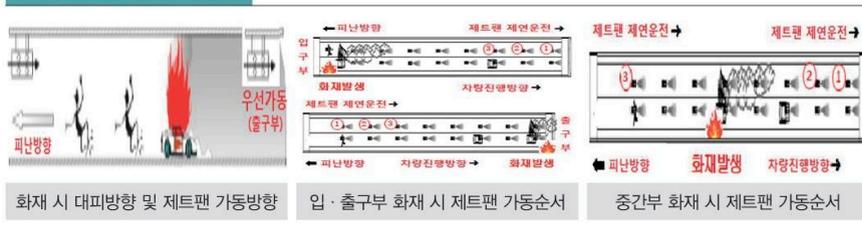


도로터널 제연설비 관련 규정

방재관리지침에 따르면 제연설비(제트팬)는 화재 시 연기흐름을 제어해 대피자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연기의 흐름이 성층화된 상태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임계풍속(critical velocity)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재의 위치 및 화재차량 종류에 따른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해 운영매뉴얼을 마련·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성층화 교란 방지 등을 위해 화재지점 인근의 제트팬은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계풍속에 도달 시 제트팬의 추가 가동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기가 출구부 쪽으로 성층화된 상태로 빠지면서 피난연결통로 및 상대터널 방향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화재터널의 제트팬은 출구부를 우선 가동해 부압(대기압 이하)으로, 상대터널은 양압(대기압 이상)으로 운전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 시 제트팬 가동 표준



화재위치 등에 따른 운전조건을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 설정

그런데 서울특별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18개 민자도로(22개 터널)를 점검한 결과, 6개 터널의 경우 화재에 근접한 제트팬을 가동하거나 출구부 제트팬을 우선 가동하지 않는 등 운전조건을 잘못 설정하였고, 14개 터널은 화재위치에 따른 운전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화재의 위치와 관련하여 ▲▲터널(부산광역시 소재)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까운 제트팬을 선택하여 가동하도록 기재되어 있었고, ◎◎터널(대구광역시 소재)은 출구부 제트팬을 우선 가동하지 않는 등 6개 터널에서 운전조건이 잘못 설정되었고, ■■터널(서울특별시 소재) 등 14개 터널은 화재의 위치에 따른 운전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화재차량의 종류에 따라 화재강도가 달라지므로 임계풍속도 다르게 설정하여야 하나 22개 터널 모두 이에 따른 운전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화재발생 시 제트팬 운전 부적정 사례

- 서울시 ㄴ도로 ㄴ터널(5.0km) 중간부에서 '20. 4월 화재 발생(BMW승용차 엔진 발화)
 - 운영매뉴얼에 화재위치, 화재차량 종류에 따른 운전조건을 마련하지 않아 화재초기부터 임계풍속(2.6%, 버스 기준)을 초과(10%)하여 출구부, 입구부 제트팬 모두 가동
 - 또한, 상대터널은 양압(입구·출구부 제트팬을 터널 안쪽으로 가동)으로 유지하여 화재터널에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상대터널의 제트팬을 차량주행 방향으로만 운전하는 등 양압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차량이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도 전에 연기로 휩싸이는 등 화재초기 대피환경 조성 방해



터널 내 제트팬 설치



화재 초기 모든 제트팬 가동으로 연기 교란 및 확산

- ㄴ도로 ㄴ터널(2.4km) 중간부에서 '20. 4월 화재 발생
 - 운영매뉴얼에 화재위치에 따른 운전조건을 마련하였으나 연기를 터널 밖으로 신속히 배출한다는 사유로 운영매뉴얼과 다르게 화재초기부터 출구부, 입구부 제트팬 모두 가동하여 임계풍속 초과
 - 또한, 상대터널은 양압으로 유지하여 화재터널에서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상대터널의 제트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에 화재 발생 시 제트팬을 잘못 작동해 대피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 터널 특성에 맞게 화재의 위치 및 화재차량의 종류에 따른 화재발생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그에 따라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3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부적정



감사 개요

감사사항	주요 사회기반시설(도로·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2020. 12. 4.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국토부, 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
관계 규정	「도로법」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2.5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도로관리 기관

감사 요지

도로 성토부 노측에 설치하는 가드레일이 기준에 따른 “수평지지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설치되어 충돌사고 시 차량이 이탈·추락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따라 수평지지력을 측정하고 수평지지력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제23조, 제31조,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국도의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7건의 지방도 확포장공사, 가드레일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성토부 구간 등에 총 213.9km의 노측용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 외측, 반대 방향의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이다.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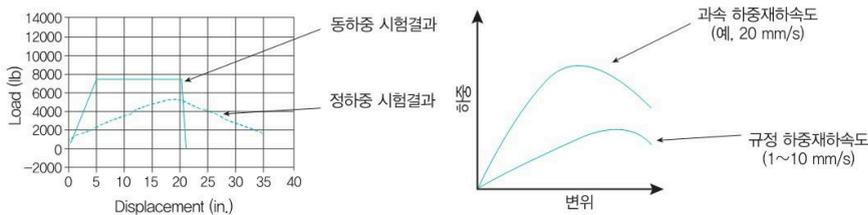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부)에 따르면 성토부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의 구조적 성능은 지주의 수평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지표면으로부터 650mm 높이에서 지주를 밀어 하중-변위 관계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1km마다 2개소의 지주에 대하여 수평지지력시험을 해야 하며, 그 값은 성능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토부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공사 현장에서 수평지지력을 측정(1km당 2개소)하여 성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주의 매입 깊이를 늘리거나 지주의 보강판 등 보강시설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국토부) IV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지주의 수평지지력을 측정할 때에는 수평 방향의 힘(이하 “수평력”)으로 천천히(하중 재하속도 1~10mm/초) 밀어 지주가 350mm 이동할 때까지 최댓값으로 측정된 지지력을 해당 지주의 수평지지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그 충격에 따른 지주 주변의 토압에 의해 저항력이 생겨 수평지지력이 실제보다 최대 35% 정도 크게 측정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중 재하속도에 따른 수평지지력 차이



하중 재하 시 시험결과(동하중, 정하중)

하중 재하속도에 따른 지주의 지지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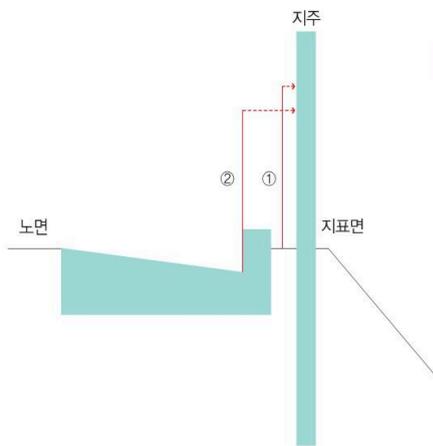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수평지지력시험을 기준과 다르게 실시

[국토교통부 소관]

그런데 국토교통부 관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17~2019년 준공한 국도 신설·확장 공사와 가드레일 보강공사 중 360건의 공사에서 수평지지력시험 방법 등을 점검한 결과 수평지지력시험을 실시하면서 355건(98.6%)이 지주에 힘을 가하는 높이를 지표면이 아닌 L형 측구 하단으로부터 650mm에서 수평지지력시험을 실시하였고 31건은 위 지침에서 정한 개소 수(1km당 2개소)보다 적은 지주의 수평지지력을 측정하였다.

가드레일 수평지지력시험 실시 예시



- ▶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에서 정한 가력점(①)
: 지표면으로부터 650mm 지점
- ▶ 현장에서 잘못 적용한 가력점(②)
: 측구하단으로부터 650mm 지점

- ▶ 가드레일 보강공사 시 지표면이 아닌 측구 하단으로부터 높이 650mm에 횡하중을 가하여 지지력시험을 한 사례

이와 관련하여 위 355건 중 교통사고 시 차량이 도로 이탈 또는 추락 위험이 있을 것으로 육안상 판단되는 16개소에 대해 수평지지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4건의 공사에서 지주 8개소의 수평지지력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경기도 등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17~2019년 준공한 지방도 신설·확장공사와 가드레일 정비공사 중 33건의 수평지지력시험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5건이 기준과 다르게 1km당 2개소보다 적은 지주에 대해 수평지지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위 5건 중 강원도, 충청남도가 실시한 2건은 수평지지력시험을 하면서 위 업무편람(하중 재하속도 1~10mm/초, 최종 변위 350mm)을 잘못 적용하여 약 20mm/초의 속도(動荷重)로 수평력을 가하고 185~235mm까지만 변위를 측정하여 합격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 2건의 가드레일 공사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것으로 육안상 판단되는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9건, 총 11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가드레일 지주 총 105개소를 표본 선정하여 수평지지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11건 공사 59개소 지주의 수평지지력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드레일 충돌사고 발생 시 차량이 이탈·추락하는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경기도지사 등에게 성토부 가드레일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및 「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서 정한 시험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평지지력을 측정하고, 수평지지력이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곳에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4

그라운드 앵커 시공 비탈면을 부적정하게 유지관리

잔존앵커력이 설계앵커력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정밀조사



감사 개요

감사사항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2019. 5. 24.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그라운드 앵커 시공 비탈면 유지관리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국토교통부, 영월군, 화순군,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관계 규정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비탈면 관리 기관

감사 요지

국토교통부와 영월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비탈면 7개소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 시공된 앵커의 지지력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비탈면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앵커가 시공된 비탈면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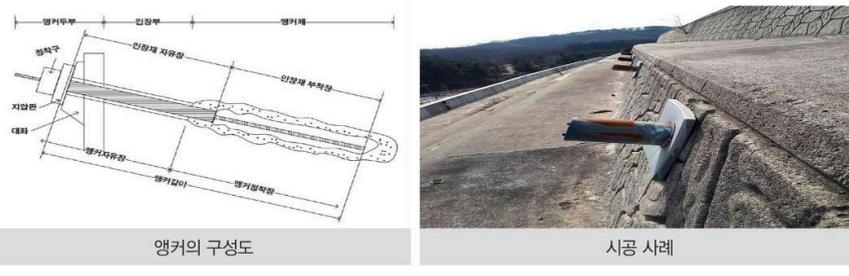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및 영월군 등 급경사지 관리기관(이하 “비탈면 등의 관리기관”)은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이하 “국토부 매뉴얼”)에 따라 비탈면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앵커의 구성 및 시공 방법

앵커는 선단부(先端部)를 양질의 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反力)으로 하여 흠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정착부), 앵커체의 앵커력을 전달하는 인장부, 인장부를 구조물에 정착시키는 앵커두부로 구성된다.

앵커의 구성도 및 시공 사례



앵커의 구성도

시공 사례

잔존앵커력 검토 기준

국토부 매뉴얼 4.2(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잔존앵커력이 인장재의 이완(Relaxation), 정착지반이나 구조물 배면 지반의 변형(Creep) 등으로 설계앵커력보다 감소하면 억제력을 느슨하게 하여 비탈면 등의 활동 및 붕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잔존앵커력이 수압 등의 영향으로 설계앵커력보다 증가하면 인장재가 파단(破斷)되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탈면 등의 관리기관은 잔존앵커력이 설계앵커력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정밀조사하여 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기관의 잔존앵커력 측정 및 개선 조치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국 고속도로 비탈면 342개소(앵커 56,128개)에 대하여 잔존앵커력을 측정하여 허용범위(10% 이내 감소, 20% 이내 증가)를 벗어난 267개(78%)에 대하여 재긴장 조치(소요비용 116억 원)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 공사는 국토부 매뉴얼과는 별도로 2017년 9월 「비탈면 보강용 그라운드 앵커의 유지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잔존앵커력 측정수량(시험수량) 및 측정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잔존앵커력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잔존앵커력을 측정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점검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2009년 매뉴얼을 제정하면서 안전점검 4.2.1(일반사항)에 앵커체 및 인장부의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잔존앵커력을 측정하여 앵커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서도 위 매뉴얼에 잔존앵커력 측정수량 및 측정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비탈면 등의 관리기관은 비탈면 등을 앵커로 보강하고도 잔존앵커력을 측정·관리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포항 동해 석2지구 등 도로 비탈면 3개소와 영월군이 관리하고 있는 직동2지구 등 붕괴위험지역 4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잔존앵커력을 측정(리프트오프 시험)하도록 한 결과, 포항 동해 석2지구 등 6개소는 잔존앵커력이 설계앵커력의 평균 29.4~75.5%(감소율: 24.5~70.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영월군 등이 직동2지구 등 붕괴위험지역 4개소에 대하여 측정한 위 잔존앵커력을 기준으로 비탈면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기준안전율(우기 시 1.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제 남아론1지구는 앵커가 과도한 하중을 받아 강연선이 파단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사례(10공)가 확인되었고, 해당 지구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기능을 상실한 앵커 주변의 앵커에 대하여 잔존앵커력을 측정한 결과 설계앵커력 대비 최고 114.9%(증가율: 1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 인장재 파단 사례



파단된 인장재가 외부로 노출



두부 캡을 제거한 상태

이에 적정 앵커력 상실 등에 따른 비탈면의 활동 및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잔존앵커력 측정수량과 측정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영월군 등에 잔존앵커력이 10% 이상 감소한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5

하천기본계획의 교량능력 미조사로 시설개량사업 대상에서 누락

주요 원인
지나간
교량
기준

경간장
거리 및 높이 조절



감사 개요

- 감사사항 : 일반철도교량 안전관리 현장점검(2019. 1. 20. 시행)
- 처분요구 제목(종류) : 일반철도교량 시설개량사업 추진 부적정(주의요구)
- 처분요구 기관 : 국가철도공단
- 관계 규정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 교량을 관리하는 기관

감사 요지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대상을 선정해 홍수 시 철도의 안전운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경간장과 높이 등 교량능력을 조사해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주의요구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은 2009년부터 매년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간장 부족 등 교량확장이 필요한 77개소 일반철도교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7,562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추진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총사업 규모		기시행 (2012~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교량확장	77	756,200	21	251,501	5	45,536	51	459,163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의 확보 여부 확인 필요

「철도설계기준(노반편)」 2.3.4(구조물 계획)에 따르면 하천횡단 교량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경간장 등을 정해야 하고, 해당 하천의 하천정비계획 등 수리·수문 조사결과에 따라 교량의 경간장 및 높이와 길이(이하 “교량능력”)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3.1.3(시설물 능력검토)에 따르면 하천에 설치된 철도 교량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하폭에 적절한 교량연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교량 형하여유고가 계획홍수위에 맞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 하천기본계획: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함
- ▶ 형하여유고: 최고홍수위로부터 교량상판 사이[형하(桁下)] 여유고로서 홍수량에 따라 기준이 다름

따라서 하천횡단 교량의 교량확장 등을 위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교량이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러하지 못할 경우 시설개량사업 대상에 반영하여야 했다.

하천횡단 교량의 교량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시설개량사업에서 누락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구 철도청 자료 등만을 검토하여 77개소 하천횡단 교량만 시설개량사업에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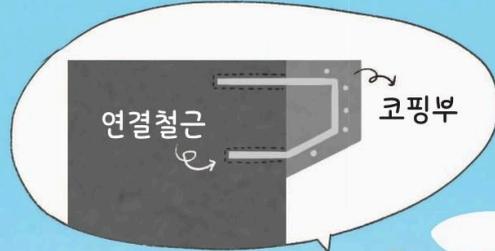
이에 전국의 일반철도교량 3,043개소 중 국가하천 횡단 철도교량 84개소와 지방하천 횡단 철도교량 134개소 등 218개소의 일반철도 하천횡단 교량을 표본으로 해당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재검토한 결과, 86개소의 교량이 교량능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 86개소의 교량이 시설개량사업에 누락된 채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홍수 시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홍수가 교량 상면으로 범람하여 철도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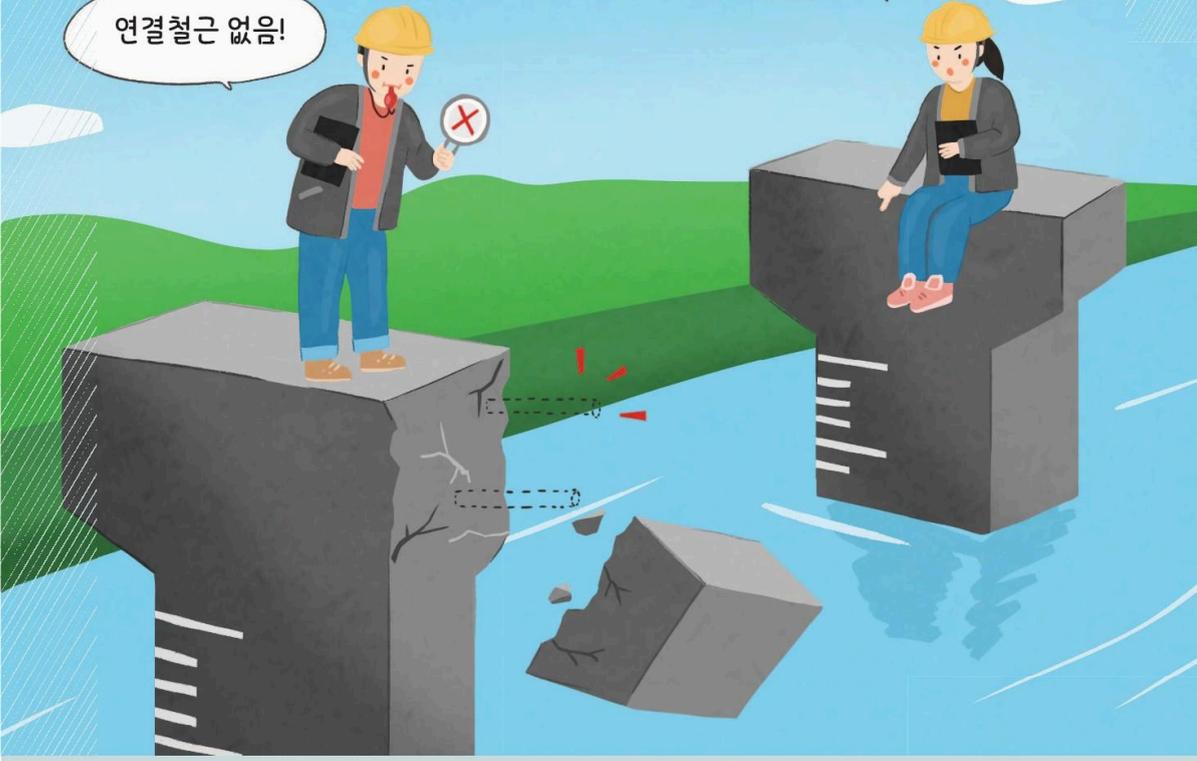
이에 국가철도공단에 앞으로 하천횡단 교량이 해당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경간장, 높이 등 교량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교량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하천횡단 교량이 시설개량사업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

교량 하부구조 확대 시공부에 연결철근 미시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자료



연결철근 없음!



감사 개요

감사사항	일반철도교량 안전관리 현장점검(2019. 1. 20.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일반철도교량 확대 시공부 연결철근 미시공(통보)
처분요구 기관	한국철도공사
관계 규정	「교량 유지관리매뉴얼」,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교량 관리 기관

감사 요지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철도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을 확대 시공한 교량에 대해 연결철근을 배근하지 않아 교량구조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연결철근을 배근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일반철도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교량의 교각과 교대(이하 “하부구조”)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량공사를 수행하는 등 철도시설의 점검·보수·개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교량개량공사: 교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교량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서, 교량 하부구조 개량공사의 경우에는 기존 교각 단면에 단면을 추가하여 단면의 크기를 키우는 단면 확대공사 등을 실시함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 확대 시 연결철근 배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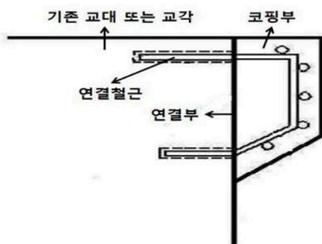
「교량 유지관리매뉴얼」 5.4.4(교량받침의 보수·보강)와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3장 등에 따르면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 확대공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기존 단면과 확대단면(이하 “코핑부”)이 구조적으로 접합되어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두 단면 사이에 연결철근을 배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는 하부구조의 단면이 확대되어 있는 교량을 점검할 때에는 연결철근의 배근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철근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면확대부에 연결철근을 배근하지 않고 시공

한편, 2018년 7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관내 직지천교의 경우 단면 확대공사 시 두 단면 사이에 연결철근을 배근하지 않아 코핑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확대단면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교량 하부구조 확대 개념도 및 직지천교 사고 사진



교량 하부구조 확대 시공 개념도



직지천교 균열(아래) 및 코핑부 철거 후(위)

이에 교량 하부구조의 단면을 확대 시공하였으나 공사내역 및 설계도서 등으로 연결철근의 배근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교량 7개소에 대하여 철근탐사를 수행한 결과, 개량천교 등 3개 교량에서 연결철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개량천교 등 3개 교량에는 기존 단면과 코핑부 사이에 연결철근이 없어 코핑부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향후 교량 구조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 교량 하부구조 확대시공 시 연결철근이 누락된 3개 교량에 대하여 연결철근을 배근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7

도로 위험구간 방호안전시설 미설치 및 미인증 제품 사용



감사 개요

감사사항	도로안전 관리실태(2018. 9. 3.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위험구간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관계 규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3., 「도로법」 제52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도로관리 기관

감사 요지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에 충격흡수시설 등이 미설치되고, 설치된 충격흡수시설 중 일부는 실물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아 도로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을 준수해 차량방호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국토관리청을 지도·감독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관내 지방도 등의 도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차량방호안전시설이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기준

충격흡수시설과 차량방호울타리 등 차량방호안전시설은 차량과 구조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교각, 교대 및 터널 앞 등 구조물과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조물 앞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교각 앞 충격흡수시설 설치



터널 앞 방호울타리 설치

화단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 설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분리대는 화단 등의 형태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격흡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인증

위와 같은 차량방호안전시설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성능인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설치하여야 한다.

차량충돌이 예상되는 위험구간에 차량방호안전시설 미설치

그런데 최근 3년간(2014~2016년)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높은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일반 국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량 충돌이 예상되는 위험구간의 차량방호안전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일반국도 위험구간 879개소 중 513개소(58.4%)에, 경상남도 소관 지방도 위험구간 634개소 중 494개소(77.9%)에 차량방호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7개 기관 소관의 위험구간 7,415개소 중 1,935개소(26.1%)에 차량방호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교각, 교대 및 터널 앞 차량방호안전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도로관리청	도로종류	위험구간	미설치 (비율)	교각, 교대 앞			터널 앞		
				위험구간	설치	미설치 (비율)	위험구간	설치	미설치 (비율)
총		7,415	1,935 (26.1%)	6,997	5,199	1,802 (25.8%)	418	285	133 (31.8%)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등 5개 청	일반국도	6,174	1,234 (19.9%)	5,779	4,675	1,104 (19.1%)	395	265	130 (32.9%)
경기도	지방도	607	207 (34.1%)	591	389	206 (34.9%)	16	15 (93.8%)	1 (6.2%)
		경상남도	634	494 (77.9%)	627	135	492 (78.5%)	7	5 (71.4%)

충격흡수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성능 미인증 제품 설치

또한, 위 7개 기관에서 주유소 등 다른 시설과의 연결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하여 설치한 화단분리대 1,076개소 중 556개소(51.7%)에 기준에 따른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 520개소 중 488개소(93.8%)에는 실물충돌시험을 거치지 않은 성능 미인증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화단분리대 앞 충격흡수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총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경기도	경상남도
위험구간	1,076	34	28	135	262	53	531	33
설치	520	28	28	6	26	11	391	30
인증 (비율)	32 (6.2%)	-	3 (10.7%)	6 (100%)	1 (3.8%)	9 (81.8%)	-	13 (43.3%)
미인증 (비율)	488 (93.8%)	28 (100%)	25 (89.3%)	-	25 (96.2%)	2 (18.2%)	391 (100%)	17 (56.7%)
미설치 (비율)	556 (51.7%)	6 (17.6%)	-	129 (95.6%)	236 (90.1%)	42 (79.2%)	140 (26.4%)	3 (9.1%)

이에 차량충돌 시 사고피해가 큰 구조물 앞에 차량방호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점용 허가 시 차량방호안전시설에 대하여 성능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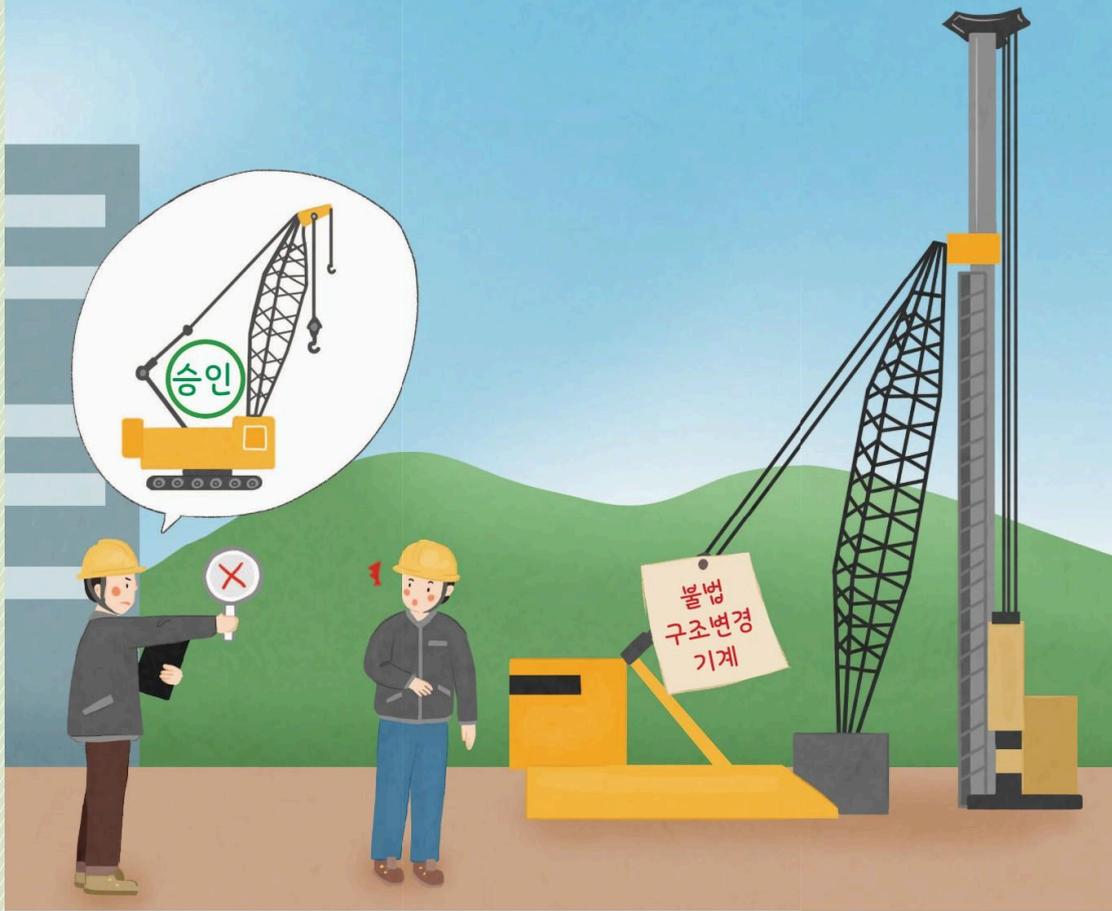


건설기계 안전관리

- 01. 미등록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42
- 02. 적절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설계 및 공사 47
- 03.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를 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계속 사용 51

01

미등록 또는 불법으로 개조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감사 개요

- 감사사항 :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2018. 12. 4. 시행)
- 처분요구 제목(종류) : 미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건설기계 반입·사용(통보)
- 처분요구 기관 : 국가철도공단 등 4개 기관
- 관계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기관

감사 요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등록된 건설기계(3건)나 불법 개조한 건설기계(2건)를 사용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건설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건설공사의 발주 또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건설기계 등록 규정 및 안전사고 사례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고, 건설기계의 원동기·동력전달장치·작업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등록되었다 할지라도 장비 노후화나 안전장치 미비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실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사례

- 2016. 12. 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기중기에 불법으로 부착된 탑승설비에 작업자 4명이 탑승하여 지붕패널 방수작업을 위해 탑승설비를 상승시키던 중 탑승설비가 기중기에서 탈락해 지상으로 추락하여 3명 사망, 1명 부상
- 2017. 11.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도로공사 현장에서 옹벽 벽체에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펌프카의 붐대가 부러지면서 근처의 작업자를 타격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

더욱이 등록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른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법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인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더욱 크다.

미등록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제4공구”현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은 천공기를 강관다관 시공에 사용하는 등 미등록 건설기계가 반입 또는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등록 건설기계를 반입·사용하여 적발된 사례

사례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 광역급행철도 건설공사 제4공구”의 시공사는 장비대여계약을 맺은 천공기가 2018년 6월 중순경 미등록 천공기로 교체되어 공사현장에 반입되었는데도 장비 반출·반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8. 6. 20. 강관다관 공사에 사용하였고

미등록 건설기계(천공기) 소유자이자 시공사로부터 강관다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의 대표 A는 장비대여계약을 맺은 천공기를 2017. 10. 10.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던 중 2018년 6월 중순경 해당 천공기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대신 위 공사현장에는 2000년대 초 무허가로 만들어진 미등록 천공기를 투입해 공사함

사례 2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 간 도로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기계를 공급한 ▽▽는 미등록 천공기를 현장에 반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의 검사일, 유효기간을 위조하여 시공사 등에 제출하였고, 이를 제출받은 시공사 등은 미등록 건설기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사현장에 반입 후 2018. 3. 15.부터 6. 27.사이에 약 25차례에 걸쳐 공사에 사용

미등록 건설기계 소유자인 ▽▽ 대표 B는 10여 년 전 구입한 미등록 천공기에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후, 등록된 건설기계인 것처럼 검사유효기간을 2019. 5. 19.까지인 것으로 서류(건설기계등록·검사증 등)를 위조하여 제출한 후 위 건설현장에 미등록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사례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한 “□□~□□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중 패널식옹벽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는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천공기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해당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검사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미등록 천공기를 시공현장에 반입해 놓았고

미등록 건설기계의 소유자인 C(개인사업자)는 위 ◇◇에 대여하기로 한 천공기 대신 미등록 건설기계 위 천공기의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 현장에 투입함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제8공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구조변경 범위(기종변경 등을 위한 구조변경은 불가)를 위반한 채 기중기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항타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항타용 작업장치를 불법으로 부착하여 사용하는 등 2건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확인되었다.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건설기계를 반입·사용하여 적발된 사례

사례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 S-3BL 아파트 건설공사 제8공구”의 시공사는 하도급사가 2018. 4. 9. 공사현장에 반입한 기중기에 같은 해 4. 11. 불법으로 항타용 작업장치를 장착한 후 항타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정상적인 구조변경사항인지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 7. 17.까지 항타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음



정상적인 건설기계(기중기)



불법 구조변경된 건설기계
(항타용 작업장치로 변경한 기중기)

사례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 택지개발조성 공사 및 □□~△△ 간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사는 2018. 6. 4.부터 같은 해 6. 9.까지 불법으로 항타용 작업장치가 부착된 기중기를 사용함

이와 같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미등록 및 불법개조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한 고발 조치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2

적법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설계 및 공사

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원



감사 개요

감사사항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2018. 12. 4.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불법 건설기계 사용 및 지반개량 공법 준공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국가철도공단
관계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기관

감사 요지

국가철도공단의 건설기계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시설계 시 적법한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해 건설현장에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기계를 반입·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적법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은 2012년 12월 “▲▲~●●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면서 지반개량 목적으로 쇄석다짐말뚝(GCP) 공법을 반영하였다.

- 쇄석다짐말뚝(Gravel Compaction Pile) 공법: 연약지반에 GCP 장비라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에 자갈을 박어넣어 지반 지지력을 높이는 공사 방법

설계도서 작성 및 건설기계의 주요장치 변경 기준

발주청 또는 설계 등의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 시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현장기술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고,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을 고려해 적합한 시공방법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작업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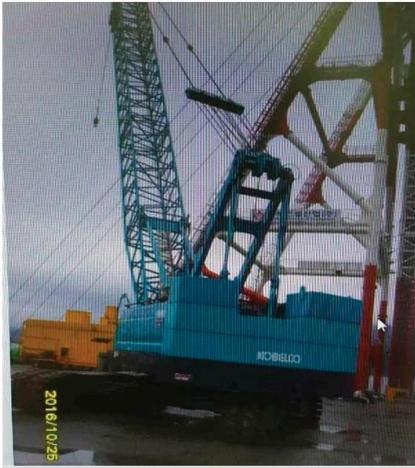
실제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

따라서 노반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연약지반개량에 적용한 쇄석다짐말뚝(GCP) 공법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건설기계로 시공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해당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공법 채택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등록된 제원과 다르게 구조변경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법

한편, GCP 공법은 반드시 GCP 장비(건설기계인 기중기에 리더, 진동파일해머 등을 부착하여 만든 장비)를 반입·사용하여야 하는 공사방법인데, 이러한 GCP 장비는 기중기(건설기계)의 몸을 제거한 후 리더, 진동파일해머 등의 다른 작업장치를 부착한 장비로서 최초 승인된 제원 및 구조·규격의 기중기와는 달리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건설기계이다.

정상적인 건설기계와 불법 구조변경된 건설기계



정상적인 건설기계(기중기)



불법 구조변경된 건설기계(GCP 장비)

부적합한 공법으로 설계 및 공사

그런데 위 실시설계 과업을 수행한 수소 등은 GCP 장비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있는 장비라는 사유로 이를 정상적인 건설기계라고 판단한 채 GCP 공법이 반영된 노반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을 위 공단에 제출하였고, 위 공단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당 GCP 장비가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장비인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노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준공하였다.

이후 “▲▲~○○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시공업체는 설계에 반영된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기중기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하여 만들어진 GCP 장비를 해당 건설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건설기계가 반입되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에 적법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변경하거나 적합하게 등록절차를 거쳐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건설기계로 시공이 불가능한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하였다.

03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를 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계속 사용



감사 개요

감사사항 : 건설기계 안전관리 현장점검(2018. 12. 4.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위조 및 검사 미필 기계 사용(통보)

처분요구 기관 : 국가철도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

관계 규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제13조 등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기관

감사 요지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의 건설기계 등록증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위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를 만료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계속 사용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등록증 등을 위조한 업체를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서류 위조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은 “○○(●●~●●)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28건의 공사의 발주청으로서 공사를 감독하고 있다.

- 7개 기관: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익산·부산·원주·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계의 검사 및 관리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건설기계를 계속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운전운행 등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제8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임대인)는 임대하는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등)를 시공사(임차인)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또는 초본)을 교부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르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현장에 반입·사용하는 건설기계의 관리·감독 필요

따라서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은 건설현장에서 반입·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을 고발하고,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등에 대한 확인업무를 태만히 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사용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등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반입·사용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등록·검사증의 위조 여부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업무 실패를 점검한 결과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불법 사례가 확인되었다.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를 계속 사용]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건설현장에서 쇄석기를 반입·사용하면서 해당 쇄석기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기재 항목인 검사일,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를 만료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천공기를 반입·사용하면서 해당 기중기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기재항목인 검사일, 유효기간 등을 위조하는 등 7개 기관 소관의 총 20개 업체가 총 23건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위조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계를 만료되지 않은 것처럼 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유효기간 만료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반입·사용]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건설현장의 경우 향타·향발기를 반입·사용하면서 해당 향타·향발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시공사 등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는 등 8개 시공사가 건설현장 8개소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설기계 9대를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반입하여 작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발주청에서 건설현장에 제출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등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제출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과 대조·확인하는 등 서류 위조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해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사용됨으로써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 등 7개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위조한 업체를 고발하거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서류 위조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침수피해 예방

- 0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후에도 침수피해 미해소 58
- 02.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몰토지 미매수 63
- 03. 부적합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지하차도가 재차 침수될 우려 67
- 04. 배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지속 발생 72

01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후에도 침수피해 미해소



☞ 감사 개요

- 감사사항 ○ 도시지역 저류시설 안전관리실태(2021. 8. 20. 시행)
- 처분요구 제목(종류)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업무 부적정(주의·통보)
- 처분요구 기관 ○ 행정안전부
- 관계 규정 ○ 「자연재해대책법」,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기관

▶ 감사 요지

우수저류시설 78개의 설치 적정성 등을 점검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준과 다르게 확률강우량을 과소 적용하여 설계기준 이하의 경우에도 침수피해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 연계시설의 개선대책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등에 따라 도시지역 저지대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의 확률강우량 관련 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우수저류시설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안부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실시설계보고서 등 설계도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7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2.8.(지역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규모계획)에 따르면 우수저류시설 등 영구저류지를 설계할 때에는 최초 설치 후 규모 증가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배수구역 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50년 빈도의 확률강우량을 적용하여 우수저류시설의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과 다르게 확률강우량 적용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위 설치기준 제정 이후 설계·준공된 우수저류시설 78개의 설계도서에 적용된 확률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0개가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보다 적은 확률강우량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승인하고 국비를 지원하였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연계 방재시설에 대한 검토 필요

한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 Ⅲ.(통합개선대책 수립) 등에 따르면 내수침수 방재시설인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설의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이 개선되더라도 배수구역 내 침수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어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다른 방재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 기존 하수관로 용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빗물펌프장 부재로 하천 수위 상승 시 우수를 자연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 시설의 성능이 미흡한 경우 침수피해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할 때 우수저류시설과 연관된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이하 “연계 방재시설”)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수저류시설 설치만으로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계 방재시설의 개선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후에도 침수피해 미해소

그런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저류시설 사업계획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면서 우수저류시설 설계에 적용한 확률강우량 수준의 강우 발생 시 연계 방재시설의 개선 없이는 침수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미흡한 연계 방재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 의견만을 확인하고 사업을 승인할 뿐 다른 개선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거나 사업 완료 이후 실제 개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행안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우수저류시설 78개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31개가 우수저류시설 설치 후에도 침수를 해소할 수 없어 연계 방재시설의 신설·증설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2021년 1월까지 별도의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우수저류시설 21개 중 부산시의 우수저류시설이 소재한 배수구역 3개소에 대한 내수침수 해석을 검토한 결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후에도 우수저류시설 설계에 적용된 강우 발생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수침수 해석결과(부산시 우수저류시설 소재 배수구역)

(단위: ha, m)

저류시설	◆ ■ 저류시설	◇ ◇ 저류시설	□ □ 저류시설
내수침수 해석결과			
침수면적 /평균침수심	77.7 /0.81	195.9 /0.83	23.5 /0.77

이와 같이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부산시 남구에서 2016년 설치한 ◆◆저류시설의 경우 2020. 7. 10.과 같은 해 7. 23. 우수저류시설 설계에 적용된 확률강우량(98.1mm/시간)보다 적은 강우(각각 76mm/시간, 69mm/시간)에도 각각 건물 63동(침수면적 344m²)과 54개동(침수면적 2,158m²)이 침수되는 등 배수구역 내 침수 해소를 위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도 우수저류시설 설치기준 미만의 강우에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후 침수피해 사례

관리주체	시설명	설치연도	침수발생	침수범위(피해)
부산시 금정구	◆ □ 저류시설	2019년	2020. 7. 23.	10,248m ²
부산시 남구	◆ ◆ 저류시설	2016년	2020. 7. 10.	344m ² (건물침수 63개동)
			2020. 7. 23.	2,158m ² (건물침수 54개동)
부산시 해운대구	◇ ◆ 저류시설	2018년	2020. 7. 24.	18,000m ² (117가구 침수)
	◇ ◇ 저류시설	2011년	2017. 9. 11.	30,000m ²
			2020. 7. 10.	11,000m ²
			2020. 7. 23.	23,000m ²

이에 앞으로 우수저류시설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다르게 설치되는 일이 없게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저류시설만으로 침수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관로나 빗물펌프장 등 연계시설의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하게 지도·감독하는 등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몰토지 미매수

이 곳은
저수지를 정비하면
수몰되는 지역이야!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승인



감사 개요

감사사항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실태(2021. 8. 20.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농업용 저수지 제방 독높이기 공사 시 수몰토지 매입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천안시, 영동군, 홍성군
관계 규정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 농업용 저수지 설치 및 관리 기관

감사 요지

안전등급이 D등급인 5개 저수지에 대해 수몰토지 매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홍수 시 침수가 우려되어 매입 조치를 해야 되는 홍수위선 아래의 수몰토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몰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천안시, 영동군, 홍성군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관내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된 5개 저수지를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여 저수지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사업을 준공하였다.

(단위: 백만 원)

저수지명	관리자	안전등급	사업비	사업기간	계획홍수위
삼성	천안시	D등급	1,544	2016. 3. 8.~2017. 4. 23.	당초 E.L.152.30m ⇒ 변경 E.L.153.35m
수입	천안시	D등급	1,320	2016. 3. 8.~2016. 12. 9.	당초 E.L.91.00m ⇒ 변경 E.L.91.87m
법곡	영동군	D등급	700	2020. 6. 18.~2021. 12. 31.	당초 E.L.148.17m ⇒ 변경 E.L.151.24m
청화	영동군	D등급	500	2020. 6. 18.~2021. 12. 31.	당초 E.L.276.86m ⇒ 변경 E.L.277.74m
마운	홍성군	D등급	2,166	2021. 1. 6.~2022. 12. 26.	당초 E.L.61.46m ⇒ 변경 E.L.61.46m

저수지 정비사업의 수몰토지 매수 관련 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저수지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저수지 설계기준(필댐편)(농림부, 2002)에 따르면 저수지 홍수위선 아래에 위치한 수몰토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용 저수지를 개·보수하거나 저수지 독높이기 등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수문분석 등을 통해 홍수위를 산정하여 홍수위선 아래에 있는 수몰토지를 조사하고 수몰토지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수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몰토지 미매수

그런데 천안시는 재해위험 저수지(수입저수지, 삼성저수지) 정비사업을 각각 시행할 때 계획홍수위가 상승하여 9필지가 추가로 수몰되는데도 수몰토지를 매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2016년 12월 및 2017년 4월 준공하였고, 영동군은 재해위험 저수지(법곡저수지, 청화저수지) 정비사업을 각각 시행할 때 계획홍수위가 상승하여 15필지가 추가로 수몰되는데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2020. 6. 18.부터 2021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토지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홍성군의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홍성군 ☆☆☆리 등 수몰토지 3필지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22. 12. 26. 준공예정으로 마온저수지에 대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온저수지 상류 수몰토지 내 주택



※ 자료: 홍성군 제출자료

이에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수위가 상승할 경우 저수지 상류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가 침수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가 있으므로 수몰토지 매입 등 저수지에 설계홍수량이 유입되어 수위가 홍수위까지 상승하더라도 사유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3

부적합한 배수개선사업 추진으로 지하차도가 재차 침수될 우려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부

토피 0.0m~1.4m
지하수위 ▼

PC암거
3.0 X 2.0

암거 구조물 상부의 실제
토피높이 고려하여
설계할 것!

유수지와 펌프장이 없어
침수 될 가능성이 있군



감사 개요

감사사항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2019. 3. 5.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청수지하차도 배수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요구, 통보)
처분요구 기관	천안시
관계 규정	「하천설계기준·해설」 20.2.1, 「하수도시설기준」 1.12.2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하차도 관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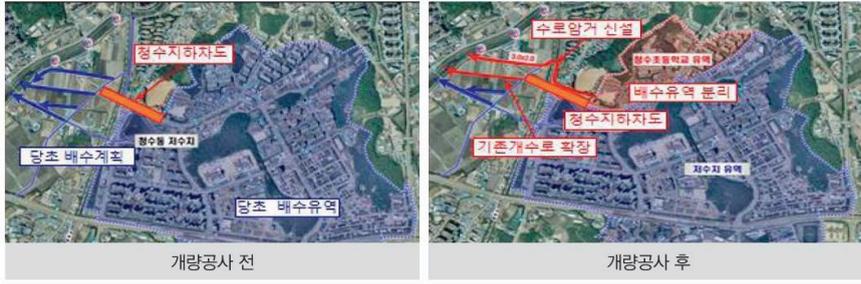
감사 요지

천안시가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지 및 펌프장 설치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설계된 수로암거가 부력에 의해 파손되어 배수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수로암거를 보완 시공하도록 통보 및 시정요구

주요 내용

천안시는 집중호우로 청수지하차도가 2회 침수되자 청수지하차도와 주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설계·공사)을 시행하고 있다.

침수지하차도 배수개선사업 현황



천안천 외수위에 의한 침수방지대책 수립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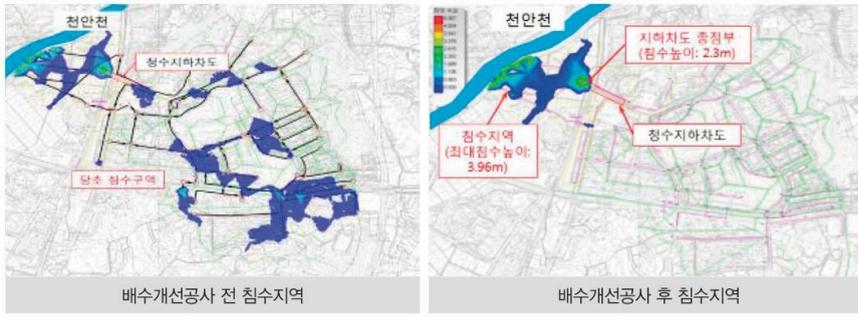
「하천설계기준·해설」 20.2.1 등에 따르면 배수처리계획 수립 시 내수위와 외수위를 고려하여 배수방식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의 “실시설계 보고서” 침수분석(SWMM*) 결과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 후 외수위에 의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수지와 펌프장(강제배수 방식)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SWMM: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의 약자로 도시지역에 적합한 침수분석 프로그램을 말하며, 시간흐름에 따른 강우의 변화로 발생하는 우수의 유출수량과 주변 배수관망을 고려하여 침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음

그런데 천안시는 천안천 외수위에 의한 역류·월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통수단면의 확보가 가능한 개수로 확장 및 수로암거 신설 등의 사업만 시행하고 근본적 침수방지 대책인 우수지와 펌프장 설치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당초 계획대로 개선공사를 완료한 후의 배수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설예정인 수로암거의 방류부 높이가 천안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우수가 역류·월류됨으로써 30년 이상의 호우 시 천안천 방류부 인근은 최대 3.94m까지 침수되고 침수지하차도도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수지하차도 개선공사 전·후의 침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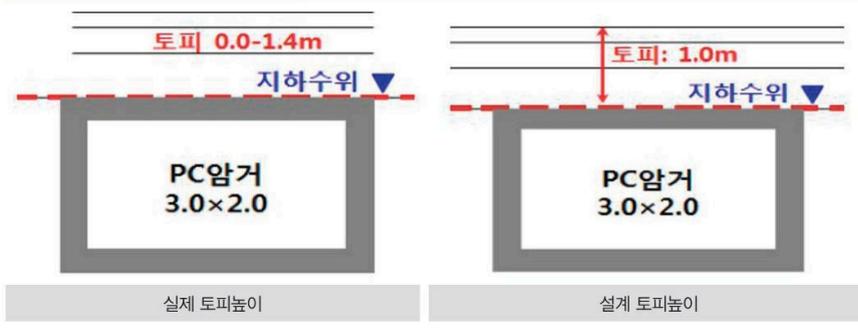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부실하게 검토하여 설계

「하수도시설기준」 1.12.2에 따르면 지하수위가 높은 지점에 설치하는 수로암거 구조물은 내부가 비어 있을 때에도 부력*에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 부력: 구조물이 물속(지하수위 아래)에 잠긴 부피의 물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힘을 말하며, 중력의 반대 방향(구조물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함

그런데 청수지하차도 개선공사의 수로암거 설계업체는 공사 후 수로암거 구조물 상부의 실제 토피높이(최소 0.0m, 최대 1.4m)와 다르게 연장 669.5m 전체의 토피높이를 1.0m로 일괄 적용하여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1.687(기준: 1.2 이상)로서 안전한 것으로 설계하였고, 천안시는 이를 그대로 준공처리하였다.

수로암거 구조물 토피높이 현황



이에 수로암거 전체에 대해 설계도면 상의 실제 토피높이를 적용하여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연장 669.5m 중 195.3m 구간은 부력에 대한 안전율이 기준치인 1.2보다 낮은 0.8에서 1.1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로암거 구조물 부력검토 결과 (단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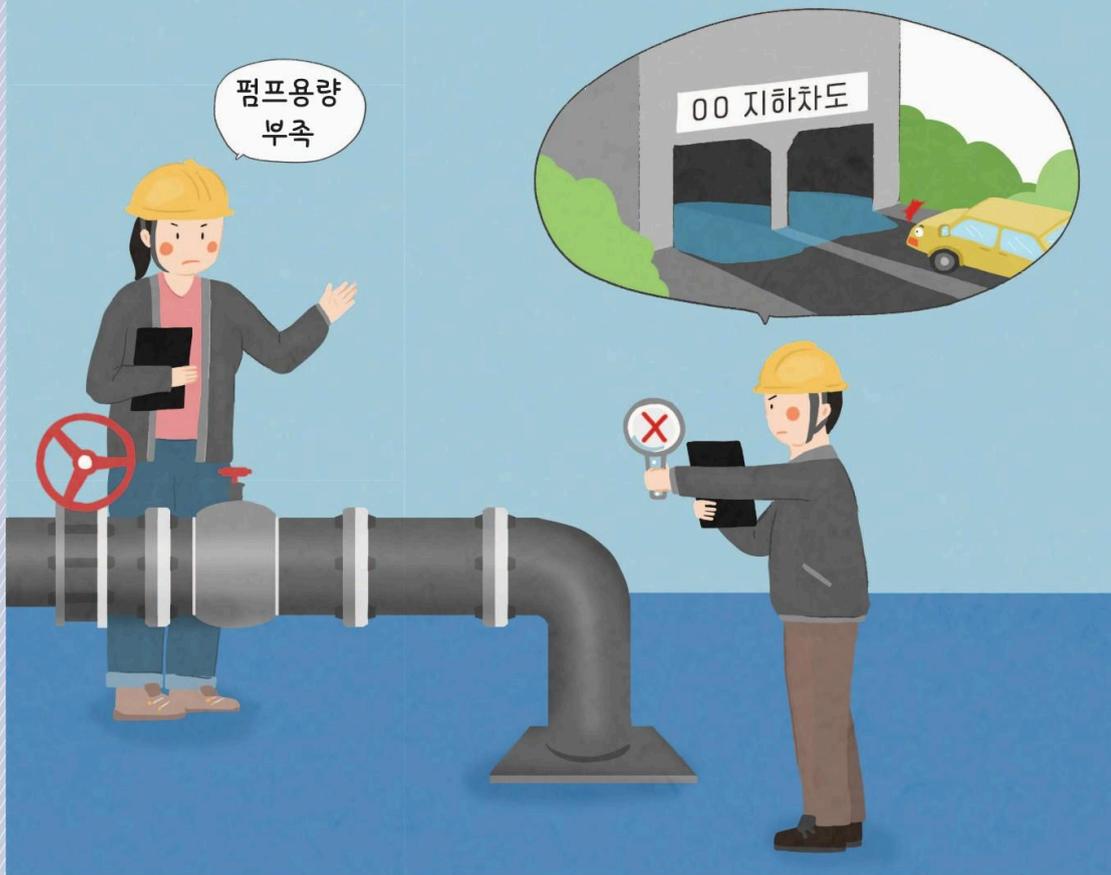
구 분	설치위치	연 장	당초 설계			재검토(감사원)		
			적용 토피고	안전율 (기준:1.2)	결과	정당 토피고	안전율 (기준:1.2)	결과
수로암거 (30.×2.0m)	NO0+00.00~NO3+00.00	60	1.0	1.687	OK	1.0	1.26	OK
	NO3+00.00~NO13+14.70	214.7				0.0	1.25	OK
	NO13+14.70~NO21+00.00	145.3				0.0	0.8	NG
	NO21+00.00~NO23+10.00	50				0.7	1.1	NG
	NO23+10.00~NO25+9.70	39.7				0.6	1.27	OK
	NO25+9.70~NO31+12.80	123.1				0.8	1.32	OK
	NO31+12.80~NO33+9.5	36.7				1.4	1.74	OK
	합 계	669.5				-	-	-

그 결과 당초 계획과 설계대로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수로암거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집중호우 시 침수지하차도와 주변 지역이 재차 침수될 우려가 있고 수로암거 구조물은 부력에 의해 파손되어 배수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에 천안시에 침수지하차도와 주변 지역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천안천 제방 인근에 우수지와 펌프장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부실하게 설계된 수로암거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시공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04

배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지하차도의 침수사고 지속 발생



감사 개요

- 감사사항 :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2019. 3. 5. 시행)
- 처분요구 제목(종류) : 화산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 수립 부적정(통보)
- 처분요구 기관 : 수원시
- 관계 규정 :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5조
-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지하차도 관리 기관

감사 요지

수원시는 상습 침수구간인 화산지하차도의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부족한 펌프용량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해 침수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펌프용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수원시는 집중호우로 화산지하차도가 상습 침수되자 화산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을 포함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다.

지하차도의 침수방지대책 수립 시 배수펌프 용량 산정의 중요성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5조에 따르면 지하차도는 대피경로가 한정되어 있고 배수설비 등의 기능이 정지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는 총 6대(예비 1대 제외)이고, 총 용량은 $33\text{m}^3/\text{min}$ 인데 이중 3대(용량: $21\text{m}^3/\text{min}$)는 집수정 내 설치되어 우수를 배수시키는 용도이고 나머지 3대(용량: $12\text{m}^3/\text{min}$)는 설계빈도 이상의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 시 복구를 위해 가동하는 비상용이며 예비 펌프는 집수정 배수펌프의 고장을 대비하여 추가 설치한 펌프로서 용량은 $7\text{m}^3/\text{min}$ 이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강우 설계빈도 50년을 기준으로 우수유입량을 재산정한 결과 $38.94\text{m}^3/\text{min}$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수원시는 비상용 펌프 3대를 제외하고 지하차도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집수정 배수펌프 3대를 기준으로 펌프용량의 과부족 여부를 검토하여 화산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때 예비 펌프도 펌프용량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

우수유입량에 대한 펌프용량을 잘못 산정

그런데 수원시는 집수정 배수펌프 3대, 비상용 펌프 3대, 예비 펌프 1대 등 전체 배수펌프 7대의 총 용량이 $40\text{m}^3/\text{min}$ 으로서 우수유입량 $38.94\text{m}^3/\text{min}$ 보다 크므로 배수펌프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침수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당초 배수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집수정 내 배수펌프 3대를 기준으로 펌프용량의 과부족을 검토한 결과, 펌프용량은 $21\text{m}^3/\text{min}$ 에 불과하여 강우 설계빈도 50년에 해당하는 우수유입 시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 및 우수유입량 (단위: m³/min)

구분		침수방지대책보고서상		감사원 감사 중 확인된 사항	
		배수펌프 용량	우수유입량	배수펌프 용량	배수능력을 초과한 우수유입량
강우 설계빈도	50년	33 (에비포함 시 40)	38.94	21	17.94

그 결과 화산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용량 부족으로 강우 설계빈도 50년에 못 미치는 강우에도 침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 2012년 8월 차량 1대 침수, 2015년 7월 침수로 차량 통제, 2017년 7월 차량 1대 침수

이에 수원시에 화산지하차도에 대하여 비상용 배수펌프와 예비 배수펌프 등을 제외한 집수정 내 배수펌프 용량을 기준으로 펌프용량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IV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무허가 영업 78
- 02. 유해화학물질 부적합 취급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82
- 03. 기준에 미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정한 것으로 설치검사 87

0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무허가 영업



감사 개요

감사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2020. 3. 23.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미이행(통보)
처분요구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관리 기관 등

감사 요지

2016년 기준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영업허가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0개 업체의 위반사례가 발견되어 화학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들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의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기준 준수 여부,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및 허가대상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선박·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이란

- ① 유독물질, ② 허가물질, ③ 제한물질 또는 ④ 금지물질, ⑤ 사고대비물질, ⑥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들을 말하고, 이 중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영업행위가 허가대상이 됨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대상

구분	범위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단,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등 경우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단,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단, 보관·저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운반 제외)하는 영업 단, 제조업, 판매업자가 자기가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사업업자가 자기가 사용할 유해화학물질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단, 사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을 받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서,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지방환경관서)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영업을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질을 연간 120톤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면제됨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영업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 있는 업체 중 2016년 유해화학물질을 100톤 이상 사용하였으나 영업허가 이력이 없는 업체 56개를 선정하여 영업허가 이행의 적정성을 표본 점검한 결과, ●●●주식회사는 연간 5톤의 아세트산에틸을 사용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대상인데도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0개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10개 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여 시정완료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02

유해화학물질 부적합 취급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감사 개요

감사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2020. 3. 23.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정기검사 등 부적합 취급시설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처분요구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관리 기관 등

감사 요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하는 등 지도·감독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수시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지도·감독

한강유역환경청(지방환경관서)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는지 확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등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종류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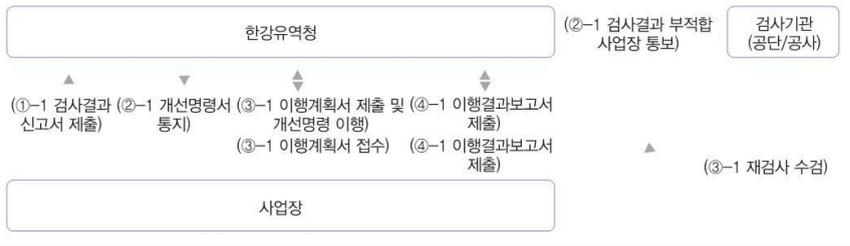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은 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2019. 8. 30. 환경부 고시 제2019-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 분		시기 및 주기	근거 법령	검사기관
설치검사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 시설 가동 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미대상	2년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부적합시설 개선 절차

지도·감독기관(지방환경관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등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등에 따라 부적합 시설이 개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업무 처리 흐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의 개선 절차

단 계	개선 절차(근거 법령 또는 문서)
①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발생	①-1 (사업장) 검사결과 신고서를 한강유역청에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제6항 [별지 제36호 서식]) ①-2 (검사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을 한강유역청에 통보 (근거: 2017. 2. 7. 화학안전과-338)
②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② (한강유역청) 개선명령서를 사업장에 통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별지 제38호 서식])
③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재검사 수검	③-1 (사업장) 이행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별지 제39호 서식])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 후 검사 재수검(『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제2항 및 제3항) ③-2 (한강유역청) 이행계획서 접수 등 이행관리
④ 사업장이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④-1 (사업장) 이행결과보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 제5항 [별지 제40호 서식]) 제출 ④-2 (한강유역청)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등 이행관리

유해화학물질을 부적합하게 취급하는 시설의 관리감독 부실

그런데 지도·감독기관, 검사기관 및 사업자가 절차대로 부적합 시설을 개선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① 검사기관이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한 사실을 한강유역청에 미통보(75건), ② 한강유역환경청은 부적합 통보 받은 164건에 대해 취급시설 개선명령 미실시(164건), ③ 개선명령 이후 조치결과 미확인(171건)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의 이행관리 현황

단 계	개선 절차(근거 법령 또는 문서)
①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 발생	(사업장) 결과신고서를 한강유역청에 미제출(177건) (검사기관)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한강유역청에 미통보 [총 75건(공단 38건, 공사 36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건)]
② 부적합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한강유역청) 부적합 사업장에 개선명령서 미통지(164건)
③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시설개선 및 재검사 수검	(사업장) 이행계획서 제출 및 개선명령 이행 후 재검사 수검 (한강유역청) 이행계획서 접수 등 이행관리
④ 사업장이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장)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171건) (한강유역청) 이행결과보고서 접수 등 이행관리 미실시(171건)

개선명령을 미이행하거나 부적합 취급시설을 그대로 운영

부적합으로 판정된 취급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211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000주식회사 등 8개 사업장은 부적합 취급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화학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부적합 취급시설 8개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는 검사결과 부적합 사업장에 대하여 지방환경관서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제때 통보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03

기준에 미달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적정한 것으로 설치검사



감사 개요

감사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2020. 3. 23.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부적정(주의)
처분요구 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관리 기관 등

감사 요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설치검사를 한 사업장에 대해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방류벽 용량이 기준치에 미달되는데도 적합으로 판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주요 내용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설치검사서를 검토하여 영업허가를 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실외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에 따라 저장물질의 유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용량은 방류벽 내 저장설비 중 용량이 최대인 설비 용량의 1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설비 방류벽 모습



외부에서 본 모습



내부에서 본 모습

방류벽 유효용량 적합성 판정 기준

방류벽 용량은 방류벽 내부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설비를 제외한 다른 설비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체적,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 체적 및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유효용량을 산정하여 그 값이 용량이 최대인 설비의 110%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방류벽 유효용량 산정방법

구분	방류벽 내부용적 (A, m ³)	제외 체적 (B, m ³)	유효용량 (C, m ³)	기준값 (D)	비고
내용	가로×세로×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이 최대인 설비를 제외한 다른 설비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체적 -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 체적 - 배관, 계단 등의 체적 등 	C=A-B	용량이 최대인 설비 용량의 110%	C≥D이면 적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절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방류벽 유효용량 계산서, 방류벽 설치도면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이 사전에 서면으로 검사한 후 해당 시설이 설치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절차



기준에 미달하는 방류벽을 적합한 것으로 잘못 판정

[한국환경공단]

주식회사 ■■에 설치된 실외저장설비의 방류벽 용량을 측정된 결과 1,543.6m³(58.4m × 23.77m × 1.33m)로, 기준값에 해당하는(최대용량 설비의 110%) 1,650m³에 미달하는데도, 한국환경공단 설치검사업무 담당자는 방류벽의 세로와 높이만 측정된 후 가로길이는 측정하지 않고 서면자료의 수치인 72.92m로 계산하여 유효용량을 1,989m³로 산정한 후 방류벽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방류벽 유효용량 실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식회사 □□□제련소의 황산 실외저장설비의 방류벽 용량을 측정된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치검사업무 담당자는 유효용량 산정에 필요한 방류벽의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하지 않고 서면검사 시 표기된 값을 그대로 적용해 기준값에 미달하는 방류벽을 적정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정하였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서면검사와 현장확인 결과 비교

구분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전 서면검사	현장확인결과	사전 서면검사	현장확인결과
방류벽 가로(A)	72.92m	58.4m	16.9m	16.35m
방류벽 세로(B)	24m	23.77m	14.275m	13.78m
방류벽 높이(C)	1.35m	1.33m	1.8m	1.72m
방류벽 내용적(D=A×B×C)	2,363m ³	1,846m ³	434.2m ³	387.52m ³
제외 체적(E)	374m ³	331m ³	97.6m ³	118.87m ³
유효용량(F=D-E)	1,989m ³ (132%)	1,543.6m ³ (103%)	336.6m ³ (112%)	299.4m ³ (99.8%)
용량이 최대인 설비 용량의 110%(G)	1,650m ³	1,650m ³	330	330m ³
적합 여부(F≥G)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이에 실외저장설비에 저장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방류벽을 넘어 주변 설비 등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준에 미달한 방류벽 유효용량을 '적합'으로 판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에 주의요구하였다.

V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01. 점검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형식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94
- 02. 이상징후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부적정하게 관리 99
- 03.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103

01

점검인력을 불합리하게 운용해 형식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그냥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현장 검사 했다고...



감사 개요

감사사항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2020. 7. 9.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점검을 나가지 않고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주의)
처분요구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계 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 제13조 등
참고할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기관

감사 요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표본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인력의 편성 및 실제 점검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점검인력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인력 당 점검대상이 과도하고, 실제 현장을 나가지 않고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사실과 다르게 점검결과를 입력하지 않고, 점검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하였다.

주요 내용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중앙행정기관(2019년에는 행안부 등 29개)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기관들은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따르면 표준점검표를 활용하여 필수 점검 항목을 모두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인력의 합리적 운용 및 점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점검기관들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하여 별도의 인력을 운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점검 분야 비전문가인 점검자가 필수 점검 항목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업무를 하면서 추가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점검기관에서는 기존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점검반을 합리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점검자가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 점검 여부 등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점검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2019년 대진단 시기에 맞춰 “성동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2019. 2. 18. 수립하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2019. 2. 18.부터 같은 해 4. 19.까지 총 1,657개소의 시설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위 추진계획에 따라 2019. 2. 20. “공동주택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119개 단지 등 총 127개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침하,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우려 등을 살피고자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해 표준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하기로 하였다.

성동구의 대진단 주요 점검 사항

안전 취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균열, 침하, 열화 등 결함 부위 확대 ▪ 지반 약화로 인한 건축물의 기초 및 지반 침하 등으로 붕괴 우려
중점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분야) 안전관리실태, 구조안전성, 건축미감 ▪ (전기 분야) 안전관리, 인입선, 누전·배선용차단기, 배선상태, 전기기계기구 및 접지상태, 비상발전설비, 전기실, 방화구획 ▪ (가스 분야) 안전관리실태, 배치기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연소기, 사고예방설비, 정압기 ▪ (소방 분야) 자체안전관리분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수계소화설비,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 (승강기 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보건·위생분야) 다중이용시설, 공중위생시설, 집단급식소 등 ▪ (옹벽 분야) 옹벽 전면·배면·기초부

그런데 위 구의 공동주택 점검 과정을 살펴보면, 담당과 공무원 1명과 시설물 관리주체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이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상 관리사무소의 자체점검을 1개 부서 공무원이 참관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2개 이상의 분야별 관계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되 부서 단독으로 점검할 때에는 유관기관·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고, 자체점검은 대진단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행안부 “2019년 대진단 기본계획”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위 구는 2019. 2. 20. “공동주택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하고 6~9급 직원들이 총 740개 동을 나누어 점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9. 3. 6. “변경계획”을 수립해 점검 물량을 총 538개 동으로 줄이면서 7~9급 직원 위주로 점검반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점검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하위 직급인 8~9급 직원이 대부분의 점검을 실시하였다.

성동구의 공동주택 점검반 편성 및 운영 현황(2019년)

(단위: 개)

당초 계획(F 전결)				변경 계획(G 전결)			실제		
구분	직급	점검 지역	점검량	직급	점검 지역	점검량	직급	점검량	
1조	6급 팀장	◇동, ♡동 순동, 순동	303	6급 팀장	-	-	6급 팀장	-	
	7급 직원			☆동, ●동, ■동	16	6급 직원	17		
2조	6급 직원	☆동, ●동, ■동	17	7급 직원	♡동, 순동	164	7급 직원	23	
3조	8급 직원	▲동, ◀동 ▼동, ◀동	420	8급 직원	▶동, ▼동, ◀동	205	8급 직원	184	
	9급 직원			◇동, 순동, ◀동	153	9급 직원	302		
합계			740	합계		538	합계		526

주: 변경 계획 점검 대상은 538개 동이었으나 실제로는 526개 동만 점검

점검인원 당 점검대상이 과다해 실제 현장을 나가지 않고 점검한 것처럼 보고

이와 같이 점검인력 당 점검대상이 많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장 하위직인 9급 직원의 경우에는 21일간의 점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4.4개 동, 하루 최대 47개 동, 총 302개 동의 아파트를 혼자 점검해야 했다.

그리고 점검자는 점검 실시일로 보고한 기간 중 10일간을 실제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에 나가 총 67 개 동의 아파트 등을 점검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이에 국가안전대진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서 정한 합동점검 방식을 준수하고, 점검자별 점검 물량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실제 점검을 나가지 않고도 점검을 나간 것으로 처리하거나 점검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의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02

이상징후가 발견된 열수송관을 부적정하게 관리



감사 개요

감사사항 ○ 열수송관 안전관리실태(2019. 6. 24.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 열수송관 점검·진단 및 유지보수 부적정(주의·통보)

처분요구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 규정 ○ 「유지관리 업무 지침서」(한국지역난방공사 내규)

참고할 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등 열수송관 운용 및 관리 기관

감사 요지

열수송관 점검 시 지열 발생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고서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를 장기간 방치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상징후가 발견된 57건에 대해 상태진단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한 후 유지보수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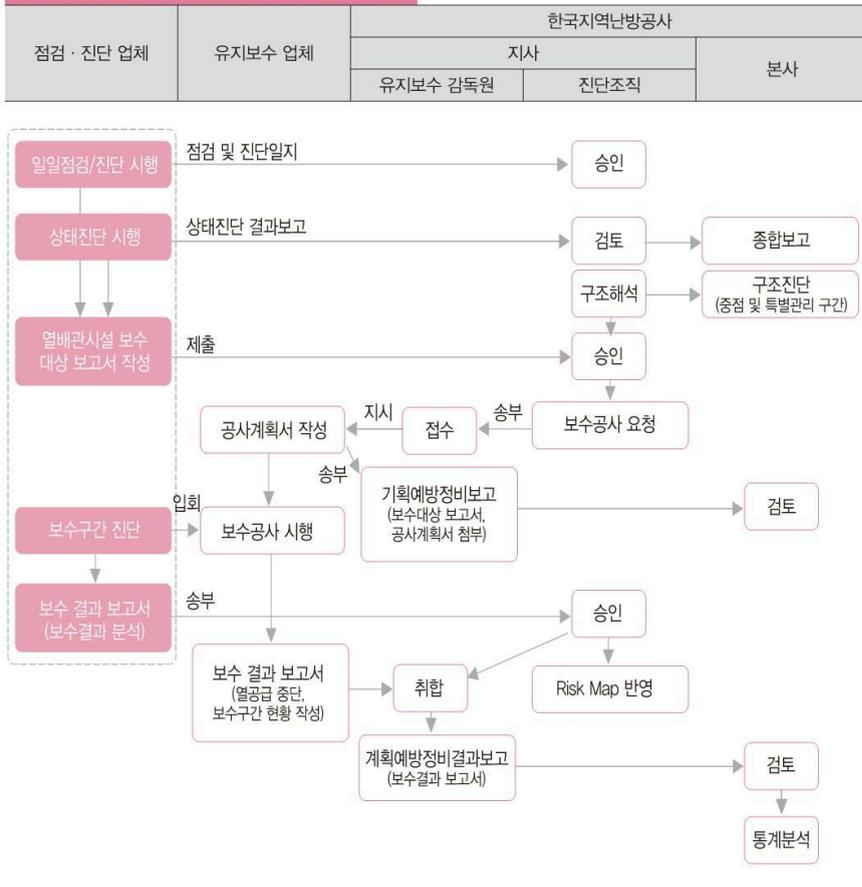
주요 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남서울 등 17개 지역(약 140만 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면서 매년 해빙기 및 동절기 열화상 진단계획, 상시 관로점검 등으로 지열 발생 구간 등 이상징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열수송관 이상징후 발견 시 유지보수 시행 절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점검을 통해 지열 발생(5℃ 이상)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위 공사의 내규인 「유지관리 업무 지침서」 등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진단, 직류전위구배법(DCVG) 등의 방법으로 상태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대상 보고서”를 작성한 후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절차로 열수송관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열수송관 점검·진단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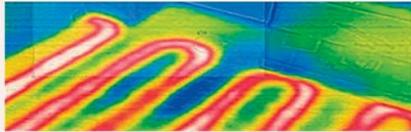
열수송관 상태진단 방법

❖ 열화상카메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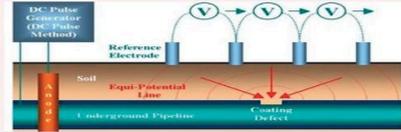
열화상카메라로 열수송관이 위치한 지점의 지표 온도를 측정하여 누설 여부 등을 파악

❖ 직류전위구배법(DCVG)

두 개의 기준전극을 설치하고 전류를 인가하여 열수송관의 직상부에서 전위차의 크기 등을 측정하여 외관손상부를 파악



열화상카메라 진단



직류전위구배법(DCVG)

열수송관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보수 미검토

2012년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에 대한 점검·진단 내역 602건을 확인한 결과, 2015년 해빙기 열화상카메라 진단을 하면서 열수송관의 지열(최초 온도차 7℃)을 발견하고서도 “보수대상 보고서” 작성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등 보온재 파손, 강관 누수가 의심되는 57건의 구간이 유지보수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이상징후가 발견된 열수송관의 보수 조치 지연

또한 위 공사는 2014. 11. 10. 열화상카메라 진단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열수송관 구간의 이상징후(지열, 최초 온도차 7℃)를 발견한 후 3년 6개월이 지난 2018. 5. 13. 해당 열수송관이 부식으로 누수가 발생하자 이를 교체하는 등 40건의 지열 발생 구간에 대해 최초 이상징후 발견 시점으로부터 2.1~4.9년 후에 유지보수하는 등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상징후가 발생한 열수송관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상징후를 발견한 57개 구간에 대해 상태진단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한 후 유지보수를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03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업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감사 개요

감사사항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2018. 8. 31.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공동구 내 상수관 임의시공에 따른 부실벌점 미부과 등 부적정(통보)
처분요구 기관	경상북도개발공사
관계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 및 감독 기관

감사 요지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건설공사 감독 및 관리를 점검한 결과,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준공 후 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업체 및 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사고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주요 내용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조성사업(3공구)”의 시행 기관으로 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 및 공사계약 등을 관리하며 2015. 10. 31. 위 사업을 준공하였고, 이후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사고발생 책임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여야 했다.

상수도 급수과정에서 상수관이 파열되는 사고 발생

위 조성사업이 준공된 이후 2016. 7. 22. 상수도 급수과정에서 위 사업부지에 있는 공동구 말단부와 연결되는 상수관 곡관부에 설계수압보다 큰 수압이 작용하는 등으로 상수관 연결부가 이탈하고 상수관 누수로 전기·통신설비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수관 곡관부 사고 현황



상수관 이탈 및 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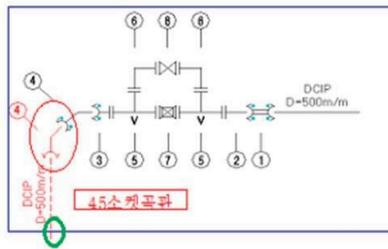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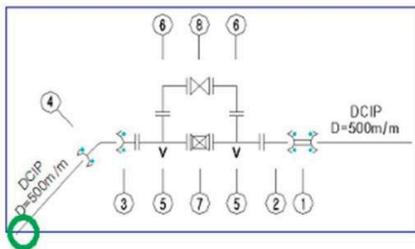
상수관 받침콘크리트 변형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상수관 곡관부 설계 기준

위 조성사업 설계서에 따르면 공동구 내 상수관 곡관부는 45° 소켓곡관 1개를 설치하고, 지름 80mm 이상인 관은 200m마다 수압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상수관 곡관부 설계 및 시공 현황



번호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번호	명칭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이음관	D=500m/m	EA	1	DCIP	1	이음관	D=500m/m	EA	1	DCIP
2	플랜지관	D=500m/m	EA	1	DCIP	2	플랜지관	D=500m/m	EA	1	DCIP
3	플랜지소켓관	D=500m/m	EA	1	DCIP	3	플랜지소켓관	D=500m/m	EA	1	DCIP
4	45° 소켓곡관	D=500m/m	EA	1	DCIP	4	45° 소켓곡관	D=500m/m	EA	2	DCIP
5	제수밸브 및 버티플라이밸브 부관 (A)	500×100	EA	2	DCIP	5	제수밸브 및 버티플라이밸브 부관 (A)	500×100	EA	2	DCIP
6	제수밸브 및 버티플라이밸브 부관 (D)	500×100	EA	2	DCIP	6	제수밸브 및 버티플라이밸브 부관 (D)	500×100	EA	2	DCIP
7	제수밸브	D=500m/m	EA	1	점검 구검용	7	제수밸브	D=500m/m	EA	1	점검 구검용
8	제수밸브	D=100m/m	EA	1		8	제수밸브	D=100m/m	EA	1	
설계						시공					

주: □ 공동구, ○ 상수관과 공동구 연결부

상수관 곡관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

그런데 위 조성공사의 상수관 시공업체는 2015년 10월경 상수관 공사를 하면서 시공이 용이하다는 사유로 당초 설계와 달리 45° 소켓곡관 1개에 45° 소켓곡관 1개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곡관부를 90° 형상으로 시공하였고, 수압시험도 상수관로 받침대 파손 등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감리업체는 위와 같이 설계와 다른 시공사항에 대해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수압시험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하여도 시방서에 따라 이를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하지 않은 채 시공업체에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작성한 준공도면을 발주청에 그대로 제출하였다.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업체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시공업체 및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감리용역업체와 관련 기술자에게 각각 벌점을 부과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부실시공에 관련된 업체 및 기술자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그런데도 위 조성공사를 시행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업체 및 기술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사고 및 보완시공을 유발한 업체 및 기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고,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향후 상수관 보수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업체 및 관련 기술자들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사고 사후관리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VI

보행자 안전관리

- 01.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부적정하게 관리 111
- 02.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 115

01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부적정하게 관리



감사 개요

감사사항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2019. 7. 3. 시행)
처분요구 제목(종류)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 부적정(주의·통보)
처분요구 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관계 규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등
참고할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인허가 및 관리 기관

감사 요지

교통안전지수 하위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등에 대한 교통 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2건 이상 사고가 발생된 35개 보호구역의 연접구간에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호구역의 범위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안전표지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하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 등으로 하여금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교통약자 안전사업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수와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방지라는 보호구역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 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행로 체계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미조정

그런데 교통안전지수 하위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의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 보호구역의 연접구간에서 교통약자 보행사고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발생되었는데도 보호구역 범위 연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호구역 지정구간에 대한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등은 지정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 보호구역 18,192개소 전체에 대해 안전표지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양산시 ●초등학교(2000. 3. 9. 지정)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3개 구간 중 ●13길(연장거리 137m)에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26개 보호구역 내 32개 도로 구간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다.

보호구역 지정표지 미설치 사례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덕계초등학교 정문, 덕계로)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덕계초등학교 후문, 덕계 13길)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제한 미조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9조 제1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2.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특히 이면도로에서는 반드시 30km/h 이내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 보호구역 18,192개소 전체에 대해 제한속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상남도 창원시 ◎초등학교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면도로 구간의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등 관할 경찰관서의장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132개 보호구역 이면도로 구간에 대해 차량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었다.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제한(30km/h 이내) 미조치 사례



경상남도 창원시 웅동초등학교(웅동로 57번 나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상인천초등학교(남동대로 897번길)

이에 보행자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보호구역 주변의 교통사고 현황 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하도록 통보하고, 경찰청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전표지 설치 및 속도제한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02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



감사 개요

- 감사사항 :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2019. 7. 3. 시행)
- 처분요구 제목(종류)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검토 미흡(통보)
- 처분요구 기관 : 행정안전부
- 관계 규정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제12조
- 참고할 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인허가 및 관리 기관

감사 요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인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도로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통보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지정대상시설 초등학교 등의 장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접 도로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청은 도로의 횡단보도에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0.8m/sec)를 기준으로 설정한 신호기와 교통안전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미검토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인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학원 주변 도로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 규모의 초등학교 817개 중 3개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0.3%)되는 등 8개 특별·광역시에서 총 3,624개의 지정대상 초등학교(100명 이상) 중 20개(0.5%)만 지정되어 있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지정대상 초등학교 수	817	101	317	1,106	192	638	304	149	3,624
지정학원 수 (지정률)	3 (0.3)	3 (2.9)	1 (0.3)	13 (1.0)	0 (0)	0 (0)	0 (0)	0 (0)	20 (0.5)

자료 : 교육부 및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학원 주변 교통사고 발생 사례

최근 5년간(2013~2017년) 8개 특별·광역시 소관 어린이보호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240 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105개소(43.75%)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학원이 323개 있는데도 학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인지 모르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도로운영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다.

학원 주변 교통사건 발생 사례

사례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의 경우 2014년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점으로서 학원 등·하원 시 사고발생이 집중되어 5년간 17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음

사례 2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중계동학원가의 경우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점으로 학원 등·하원 시 사고발생이 집중되어 5년간 13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음

대치동 및 중계동 학원밀집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2013~2017년, 5년간)



자료 : 도로교통공단 제출자료

이에 어린이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국제협력

  "국제협력" (감사직) 참고

국회업무보고

제403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3. 2. 15.)

제402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3. 1. 16.)

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2022. 10. 11.)

제398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2. 7. 29.)

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법사위 업무보고(2021. 10. 7.)

제384회 국회 임시회 법사위 업무보고(2021. 2. 22.)

주요 업무 현황

2021. 2. 22.

감 사 원

목 차

I. 일반 현황	1
II.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6
III.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	12
IV. 2021년도 감사운영 방향	16
V. 국회 관련사항	21

I. 일반 현황

1. 임 무

- 국가 결산검사 (세입·세출, 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 감사대상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 심리·결정
- 감사·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 공공감사체계 개선·지원 및 자체감사활동 심사·점검

※ 관련 근거 :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19조의2~제24조, 제43조~제48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9조 등

1. 감사 활동

□ 실지감사

(단위: 개)

계	결산감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감사	국민제안감사
135	1 (54개 기관)	35 (50개 기관)	33	27	39

□ 서면감사 : 9,194개 기관의 계산서 등 336,363책

□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억 원, 명)

구 분	건 수	금액**	인 원
합 계	1,549	173	166
변상판정	12	8	-
정계·문책·통보(인사)	103	-	153
시정·주의	626	104(59)	-
개선·권고·통보*	802	61(25)	-
고발·수사요청	6	-	13

* 모범사례 23건 포함 ** 금액은 추정·회수·보전금액 기준(괄호 안은 환·추금액)

2. 감사 관련 업무

□ 국민·공익감사청구

(단위: 건)

구 분	접 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 실시	감사 미실시			
			기각	각하	취하	
국민감사청구	32	2	16	1	3	10
공익감사청구	254	38	116	23	3	74

□ 심사청구 처리

(단위: 건)

접 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인용	기각	각하	취하	
1,893	20	947	263	88	575

□ 의견표시 : 회계관계 법령 등 제정·개폐 14건, 질의해석 2건

□ 감사제보사항(민원) 처리 실적

(단위: 건)

계	신규	이월	감사실시	해소·시정	조사종결	단순종결 ·취하 등			이첩 (대내)	이송 (대내)	처리 중
						취하	취하	취하			
13,146	12,062	1,084	13	213	1,562	8,539	1,613	160	1,046		

3. 교육·연구 등 감사지원활동

□ 감사·회계교육

(총 교육인원 기준, 단위: 명)

과 정	실 적
자체감사·회계적 과정 등(이부 직원 대상)	2,829(사이버교육 31,601 별도)
감사실무 과정(내부 직원 대상)	3,768

□ 감사방법·제도 연구

(단위: 건)

감사기법·제도연구	세미나 등 학술활동 개최·참여	감사지원 활동
26	76	48

□ 자체감사활동 심사·지원

(단위: 개, 명)

심사대상기관	감사원장표창(자체감사기구)	감사원장표창(자체감사기구 직원)
637	18*	19

* 심사결과 A등급 중 성과우수 11개 자체감사기구, 전년 대비 개선된 7개 자체감사기구

□ 국내외 감사기구와의 협력활동

(단위: 건)

공공감사 관련 행사 개최	국제회의·세미나 주관 및 참석	외국감사원 교류
4	10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감사원 교류 행사는 취소·연기

4. 감사운영 개선 성과

◆ 감사결과와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지향하고,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과 함께 소통·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 노력

□ 수요자 중심의 감사로 전환 추진

○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 제도·프로세스를 개선

- 제도·사업에 대한 균형과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성과감사 대폭 확대, 점검·지원 중심으로 감사 접근방식 전환 등 추진

• 감사종류 분류체계를 '결산감사·기관정기감사·성과감사·특정사안감사·국민제안감사'로 개편·적용(중전 재무감사·기관운영감사·성과감사·특정감사)

○ 지적 위주의 서술보다는 정책·사업에 대한 충실한 실태분석과 공과(功過)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담은 보고서로 개편

• 감사보고서가 '문제점에 대한 처분' 등을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수단'에서 나아가 '국민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술방식 개선

○ 국회의 결산·국정심의 지원을 위해 결산감사보고서에 국가재정 운용 분석 및 감사결과를 포함하는 등 보고서의 유용성·활용도 강화 지속

• '19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부터 중장기 국가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 국가재정 분야 감사결과 등을 함께 수록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지속 추진

- 사전컨설팅 제도의 정착에 노력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한 사안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신속 처리(평균 1.5일 이내)
 - (사전컨설팅) '20년 총 84건 접수하여 75건 처리(인용 42건)
- 정책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례집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폭넓은 정책방향을 정립·공표

• '20. 3월 "경제위기 대응 지원 감사운영방향" 발표 / '20. 3월 자체감사 기구에 적극행정을 독려(개인비가 없는 한 면제)하는 서한 발송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적극 행정사례 발굴에 중점을 둔 별도의 감사도 실시

•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20. 5월),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20. 9월)

□ **피감기관을 존중하면서 소통·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 노력

- 피조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관점에서 감사절차 규정을 제정비

• 조사시간 상한(10시간 이내), 심야조사 제한 등 대면조사의 원칙 정비 / 영상녹화 절차 정비 및 시설 확충 / 디지털포렌식 절차·요건 구체화 등

-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자료 관리의 효율화 및 IT기반 감사활동 확대 등도 지속 추진

Ⅲ. 최근 주요 감사결과 및 진행상황

1. 최근 주요 감사결과(* '20.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행한 주요 감사결과)

건전재정 분야

□ 「**탈세제도 관리실태**」('21. 1월)

- 탈세제도의 접수·처리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탈세제도 운용 전반의 실태 분석을 통해 탈세제도 관리 및 처리업무의 효율성 개선 유도

• 탈세제도 접수·처리 등 소과정을 처리하는 '탈세제도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도 탈세제도가 해당 조사관서로 적시 제공되지 않아(18%) 세부조사에 미활용
 • 최근 3년간('17~'19년) 서울지방국세청 등 64개 관서에서 131건(14.6%)의 포상금 약 31억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탈세제보자에게 지연 지급

□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20. 11월)

- 공익법인(학술·장학 분야 중심) 과세제도의 미비점,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촉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촉구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인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아 6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4,638백만 원 미부과

민생안정 분야

□ 「**주요 사회기반시설(도로·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20. 12월)

- 도로·고속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통보

• 호남고속철도 전체 연장(182.3km)의 13.6%(24.8km)에서 허용 침하량(30mm)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고속철도의 안전성 저하 우려

□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21. 2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면제사업자' 선정 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적정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 방안 마련 통보

•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여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

□ 「**승강설비 안전관리실태**」('20. 12월)

- 승강설비 유지관리·안전기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승강설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정부 대책의 미비점 보완 촉구

•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기관이 소관 승강기 총 1,418대의 자체점검을 유지관리 업체에 대행하도록 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표본조사 총 266대 중 104대(39%) 점검 부실)

공직기강 분야

□ **인사·계약·회계 등 취약분야의 고질적 비리 점검**

-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 위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허위 제출, 인·허가 비리 등을 적발하여 징계·문책 등 조치

• 「**통화군수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행위**」, 21. 1월) 통화군수는 취임 후 1년 4~5개월여 동안 전 재직 영리법인의 임원직을 겸직하는 등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무를 위반
 •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정기감사**」, 21.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18년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허위 실적을 작성, 계 297백만원의 성과금이 부당 지급
 • 「**고창군·함평군 기관정기감사**」, 21. 1월) 고창군은 '18년 불법 양식어업을 하고 있던 자가 어업면허를 신청하였는데도 무단하게 어업면허를 하고, 변상금도 미부과

2. 주요 감사 진행상황 (*'21.2.10. 기준 처리단계)

-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감사보고서 작성 중)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DLF·유평터머스 등 금융투자 분야 감독, 기능별·권역별 금융감독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중)
 - 대검찰청 및 서울지방중앙검찰청을 대상으로 조직·인사, 예산·회계, 계약, 검찰사무(준사법적 행위 제외)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국가정보원 정기감사」(감사보고서 작성 중)
 -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안보비 예산 편성·집행, 조직·인사, 물품 관리 실태 등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감사보고서 작성 중)
 -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정책과제 추진 및 집행, 사후 성과관리 등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감사보고서 작성 중)
 -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 협의요청, 타당성 검토, 이행 관리 등 복지사업 협의·조정 절차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중)
 -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평가 대상기관·유형 분류체계, 평가업무 수행, 평가등급 결정 및 평가결과 활용 등의 적정성을 점검·처리 중

- 15 -

IV. 2021년도 감사운영 방향

- 16 -

1. 감사운영 기본방향

❖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구현하기 위해

▷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4대 감사 운영기조를 견지하면서 “좋은 감사”를 지표로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

【 2021년도 감사원 운영기조 】

비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

임무 「외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개고

|| 감사원다운 “좋은 감사” ||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감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한 감사 ▪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수요자중심 감사 ▪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지향적 감사
--	--

- 17 -

2. 2021년도 주요 감사계획

- ㉑ 「건전재정」 : 효율적이고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 지원
 - (지출·세입관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와 변칙적 조세회피 실태 등을 점검, 재정지출 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지원
 -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실태」, ▪ 「주요 SOO도로·철도 건설사업 관리실태」, ▪ 「전자상거래 등 신종 세원 과세실태」, ▪ 「국세불복제도 등 운영실태」
 - (사회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하고 연기금의 자산운용 실태 등을 점검,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 「고용안정망 구축 및 운영실태 I·II」, ▪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실태」, ▪ 「공무원·사학연금 실물자산 운용실태」, ▪ 「신용·기술보증기금 기관정기감사」
- ㉒ 「경제활력」 : 정부 정책의 실질적 성과확보 지원
 - (경제활성화) 경제적 자활과 계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과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활력 제고
 - 「서민금융 지원 및 관리실태」,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실태」, ▪ 「해운산업 지원 및 관리실태」, ▪ 「항만 인프라 조성 및 관리실태」
 - (미래성장동력) 신기술·신산업 육성실태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방행정 및 생산인력 확충 분야를 점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실태」, ▪ 「첨단연구시설 장비도입 및 활용지원실태」,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방행정 및 생산인력 확충 분야 등)

- 18 -

③ 「민생안정」 :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 및 안전사회 구현 지원

- (민생시책) 먹거리 안전·생활폐기물 등 일상 체감형 주제를 집중 점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적 약자 지원실태도 점검

• 「수산물 양식업 관리실태」	•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 「독거노인 돌봄사업 운영실태」	• 「사회적약자 교통시설 등 이용편의제도 운영실태」

- (국민안전) 재해·재난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교량 등 주요 시설물과 생활밀접 시설을 점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재해·재난 대비 주요사업 예산운용실태」	• 「노후 교량 안전관리실태」
• 「주유소·가스충전소 안전관리실태」	• 「케이블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 공공 CCTV 운영과 개인정보의 유출·침해 방지시책의 적정성도 확인

• 「IT기반의 생활안전대책 추진실태」	• 「개인정보보호 추진실태」
-----------------------	-----------------

④ 「공직기강」 :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대해 정례적 감사를 지속하고, 인사·계약 등 구조적 취약분야도 역점 감찰(연중 상시)
- (적극행정)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등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전파

•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사항 점검」	•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 점검」
----------------------	--------------------------

3. 적극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

①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조성 지원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를 차제하고, 공직사회가 위기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뒷받침
 - '20. 3월 자체감사기구에 적극행정을 독려개입비가 없는 한 편제하는 서한을 발송, '21년에도 코로나 방역 관련 사전컨설팅 Fast-Track을 활용하여 신속 처리
- 적극행정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로 일선 기관의 애로사항 선제적 해소
 - 「적극행정매체」 웹사이트(「적극행정 길라잡이」)를 통해 자체감사기구 우수사례 상시 공개 / 「사전컨설팅」 기초지자체·공공기관을 선정·방문하여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해결가능한 경우 방향을 제시하거나 컨설팅 접수 안내

② 비대면 감사 지원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및 활용도 제고

- 既 구축된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의 연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툴(tool)을 보완하고, 새로운 IT 기반 비대면 감사기법 개발 추진
 - 분석도구를 추가 개발하고, 원천자료를 보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제공

③ 감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 감사절차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사 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와 추진
 - 감사절차 준수사항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절차 준수 및 감사문화 개선 유도

V. 국회 관련사항

1. 국회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

- 국회는 '20년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 자재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등 7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
 - 이 중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자재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등 3개 사항은 기한 내 국회 보고 완료
 - 나머지 4개 사항('20. 11. 19. 접수)도 현재 처리 중(기한 도과사항 없음)이며, 향후 신속하게 처리·보고하여 국회의 국정심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

【 2020년 국회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 】

연번	감사요구사항	접수일	국회 보고일
1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 자재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2.
2	한국형수처리예모델개발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기상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30.
3	천리안 위성 2A호 우주기상탐지체 관련 지체상금 부당 부과 및 기상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30.
4	방위사업청의 중어미-II와 장보고-II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20. 11. 19.	-
5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 11. 19.	-
6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 11. 19.	-
7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20. 11. 19.	-

2. 국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20. 12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

주요 시정요구사항	개선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심사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여 법정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심사청구사항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 미결 집중처리 등 다양한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년에는 평균 처리기간이 전년(249일) 대비 63일(183일) 단축되는 등 처리기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음 - 앞으로도 심사청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사전컨설팅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제도의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지속추진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에 예산을 반영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컨설팅 처리단계별 기준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신속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며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 • '21년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 관련 예산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음
국외업무여비 관련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은 하지 않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예산 편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국외여비 등을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 - 앞으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국회감사요구 사항의 보고기한이 도과할 경우 처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결과 보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보고기한이 도과되면 향후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제39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

2021. 10. 7.

감 사 원

목 차

I. 일반 현황	1
II. 주요 업무 추진실적	7
III. 감사운영 성과 및 진행상황	11
IV. 감사원 운영개선 및 성과	18
V. 국회 관련사항	24

I. 일반 현황

1. 임 무

- 국가 결산검사 (세입·세출, 기금, 성과보고서, 재무제표)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 감사대상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심사청구 심리·결정
- 감사·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
- 공공감사체계 개선·지원 및 자체감사활동 심사·점검

※ 관련 근거 : 「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19조의2~제24조, 제43조~제48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9조 등

2. 감사 범위

□ 회계감사

- **필요적 감사사항** (『감사원법』 제2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기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등
- **선택적 감사사항** (『감사원법』 제23조)
 - 국가 이외의 자가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등의 수분
 - 보조·출연단체 및 재보조·재출연단체의 회계
 - 출자·재출자단체의 회계
 - 국가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동 기금으로부터 출연·보조받은 자의 회계 등

□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

-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 한국은행·공공기관의 사무와 그 임원 및 회계 관계 직원의 직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3 -

3. 조직·인원 및 예산

□ 조 직

감사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임기 4년)으로 구성 (『감사원법』 제3조) • 원장(임기 4년)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사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감사 및 행정사무 처리 • 1사무총장, 2사무차장, 1본부장, 4실, 10국, 7단, 2관, 75과·담당관·사무소
감사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직원 및 자체감사·회계업무 담당자 교육 • 1원, 1부, 3과
감사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 1원, 1부, 4과

□ 인 원 : 정원 1,080명 (현원 1,041명, '21. 8.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정 무 직	일 반 직
정 원	1,080	8	1,072
현 원	1,041	6	1,035
과 부 족	△39	△2	△37

- 4 -

□ 세출 예산 집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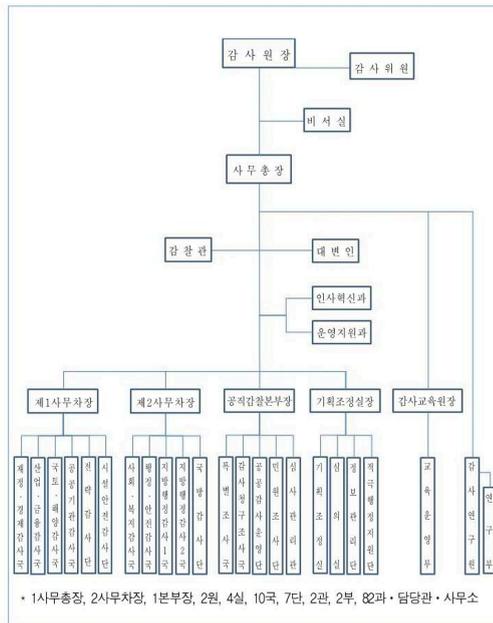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년			'21년(∼8월말)			
	예산현액 (A)	집행 (B)	집행률 (B/A)	예산현액 (A)	집행 (B)	집행률 (B/A)	
합 계	134,325	125,873	93.7	137,420	83,965	61.1	
인 건 비	86,573	85,047	98.2	89,716	57,337	63.9	
기 본 경 비	12,665	11,615	91.5	12,909	7,622	59.0	
주 요 사 업 비	소 계	35,057	29,211	83.3	34,795	19,036	54.7
	감사활동경비	18,973	15,109	79.6	20,660	10,417	50.4
청사및시설물관리	5,368	4,296	80.0	5,855	4,151	70.9	
전산운영경비	9,798	9,234	94.2	6,365	3,827	60.1	
국제교류협력강화	69	46	66.7	1,014	253	25.0	
수입대체경비	394	212	53.8	420	166	39.5	
감사연구활동경비	455	314	69.0	481	222	46.2	

• 예산현액은 본예산('20년은 추경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을 반영한 금액임

- 5 -

감사원 조직도



- 6 -

II. 주요 업무 추진실적

1. 감사 활동('20. 10월 ~ '21. 8월말 기준)

□ 실지감사

(단위: 개)						
구 분	계	결산감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특정사안감사	국민제안감사
'20년	135	1 (77개 기관)	35 (50개 기관)	33	27	39
'21년 (~8월말)	76	2* (82개 기관)	25 (47개 기관)	20	10	19

* '20년 결산감사는 1개 감사사항을 1단계(국가), 2단계(공공기관)로 나누어 실시, '21년에는 개별 2개 감사사항으로 분리하여 실시

□ 서면감사 : 9,170개 기관의 계산서 등 315,239책

□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억 원, 명)			
구 분	건 수	금 액**	인 원
합 계	1,476	1,261.1(118)	580
변상관경	1	0.1	14
징계·문책·통보(인사)	96	-	182
시정·주의	638	210(107)	339
개선·권고·통보*	727	1,050(11)	5
고발·수사요청	14	-	40

* 모범사례 16건 포함 ** 금액은 추정·회수·보전금액 기준(괄호 안은 환·추금액)

- 7 -

- 8 -

2. 감사 관련 업무('20. 10월 ~ '21. 8월말 기준)

□ 국민·공익감사청구

구 분	접 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 실시	감사 미실시			
			기각	각하	취하	
국민감사청구	37	1	15	-	4	17
공익감사청구	251	33	108	21	5	84

□ 심사청구 처리

접 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인용	기각	각하	취하	
2,104	13	790	182	23	1,096

□ 의견표시 : 회계관계 법령 등 제정·개폐 15건, 질의해석 3건

□ 감사제보사항(민원) 처리

접 수 (이월 포함)	처리 완료						처리 중
	감사 실시	해소·시정	조사종결	단순종결·취하 등	이첩	이송(대내)	
12,761	23	105	1,191	6,947	839	153	3,483

- 9 -

3. 교육·연구 등 감사지원활동('20. 10월 ~ '21. 8월말 기준)

□ 감사·회계교육

(총 교육인원 기준, 단위: 명)	
과 정	실 적
자체감사·회계직 과정 등(의무 직원 대상)	3,804(사이버교육 28,097 별도)
감사실무 과정 등(내부 직원 대상)	5,930(사이버교육 379 별도)

□ 감사방법·제도 연구

(단위: 건)		
감사기법·제도연구	세미나 등 학술활동 개최·참여	감사지원 활동
27	45	51

□ 자체감사활동 심사*·지원

(단위: 개, 명)		
심사대상기관	감사원장표창(자체감사기구)	감사원장표창(자체감사기구 직원)
667	18	19

* '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처리 중으로 10월말경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확정 예정

□ 국내외 감사기구와의 협력활동

(단위: 건)		
공공감사 관련 행사 개최	국제회의·세미나 주관 및 참석	외국감사원 교류
3	16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외국감사원 교류 행사는 취소·연기

- 10 -

Ⅲ. 감사운영 성과 및 진행상황

1. 감사운영기조

- ❖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구현하기 위해
 - ▷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4대 감사 운영기조를 견지하면서 “좋은 감사”를 지표로 전략적 감사활동 전개

【2021년도 감사원 운영기조】

비전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

임무 「외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한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

|| 감사원다운 “좋은 감사” ||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감사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한 감사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해결형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수요자중심 감사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지향적 감사
--	--

- 11 -

- 12 -

2. 주요 감사결과 (* '20.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행한 주요 감사결과)

건전재정 분야

□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21. 5월)

- 중장기 시각에서 기금·국가채권·국가채무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여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촉구

• (기금) 기금수지 분석결과, 최근 5년간 61개 기금 중 적자기금이 27개이고, 그 중 11개 기금은 특별한 자체수입이 없어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존

• (채권·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청산절차가 종결된 채권을 국가채권으로 과다 계상(0.4조원), 국고채 상환·발행계획액 일부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미반영(69조원)

□ 「탈세제도 관리실태」(‘21. 1월)

- 탈세제도의 접수·처리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탈세제도 운용 전반의 실태 분석을 통해 탈세제도 관리 및 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탈세제도 접수·처리 등 순과정을 처리하는 “탈세제도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 하고도 탈세제도의 18%가 해당 조사관서로 적시 제공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미활용

□ 「군사시설 사업추진 및 관리실태」(‘21. 5월)

- 국방시설 분야 재정사업의 효율적 운용 여부와 군용지 등 군사시설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국방 제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

• 육군은 간부 주거시설의 소요정원을 과다 산출(관사 2,409명, 간부숙소 2,737명)하여 간부 주거시설 소요예산이 7,482억 원 상당 과다 산정된 채 추진될 우려

- 13 -

경제활력 분야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I·II(‘21. 8월)

- 그간의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09년~‘19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대비 계약 비율이 51%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약실적이 낮은 주요 원인은 좁은 주거면적 (36㎡ 이하)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선정 등으로 분석

-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비가 필요한 주요분야 I(지역)·II(노후소득 보장)에서의 대응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대안 제시

• (지역) ‘18년 현재 합계출산율(0.98명)이 유지될 경우 30년 후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100년 후 지방의 실질적 소멸 전망(서용경기만 인구 100만명 유지)

• (노후소득 보장) ‘19년 기준 일부 세대(55세·45세)는 공적연금액(국민·기초연금만)으로 최소생활비를 충족하는 반면, 나머지(65세·35세)는 이에 미달할 것으로 예측

-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II(지방행정)·IV(교육·일자리)·V(생산인력 확충)는 감사결과 처리 중

□ 「산업 인증제도 운영실태」(‘21. 8월)

- 산업 인증제도 총괄 체계, 각 부처 인증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 안전성 확보 등 지원

• (인증기준) 각 부처에서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협의 없이 제·개정하여 각 부처 간 인증기준 불일치(345건) 및 국제표준 불무합(723건) 등 비효율 초래

• (인증수수료) 20년간 인증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미 실시하여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의 ‘19년 이익률이 34%(초과이익 22억여원에 이르는 등) 기업 부담 가중

- 14 -

민생안정 분야

□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21. 7월)

- 사모펀드·보현·중소서민금융 등 권역별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감독의 효율성 강화

• **(사모펀드)** '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개인 투자한액 5억원 → 1억원으로 하향) 이후 일반투자자의 고위험 사모펀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금감원은 상시 감시 및 시장감독 소홀, 사고 피해의 90%가 일반투자자에게 집중

• **(중소서민금융)** 사업자대출자금이나 시설자금 등이 주택구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사후점검하지 않아, 대출목적 외 사용 등 규제 회피 사례 발생

□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21. 6월)

- '13년 도입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 등 통보

• 신설 복지사업에 대한 협의 노력, '부동의' 통보 사업을 그대로 추진, 지원대상 임의 변경 등으로 "국가-지자체 간"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의 실효성 저하

□ 「주요 사회기반시설(도로·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20. 12월)

- 도로·고속철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촉구

• 호남고속철도 전체 연장(182.3km)의 13.6%(24.8km)에서 허용 침하량(30mm)을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미흡, 고속철도의 안전성 저하 우려

공직기강 분야

□ 인사·계약·회계 등 취약분야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활동 집중 전개

- 채용 업무 부당처리, 계약 과정에서 고가 구매 및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고질적 비리를 적발하여 고발·문책 등 엄중 조치

•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직원 응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부서장이 면접에 참여하여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업무 부당 처리

• **(토지주택연구원)**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고가 구매(62억여원) 및 허위 납품 계약(1건, 2억원)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196백만원 상당)

• **(한국콘텐츠진흥원)** '18년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매출성과 부풀리기(실제 933억여원 → 성과 1,233억여원) 등 허위 실적을 작성, 계 297백만원의 성과금을 부당 지급

□ 주기적·정례적인 「기관정기감사」를 실시, 책임있는 기관운영 유도

- 주요 권력기관,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기감사로 감사사각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해이 요소 차단

•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 인력을 피견반는 등으로 정원을 초과한 인력을 운용하고, 서울중앙지검 등은 최대 존속기간을 초과하여 임시조직 운영

• **(한국철도공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다르게 정기상여금, 직무 역할급을 지급기준에 포함, '19년에 736억 원의 경영성과급을 과다 지급

□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모범사례 적극 발굴

- 열심히 일한 모범 공직자와 기관 등을 발굴하여 격려하는 모범사례 감사를 연례적으로 실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 유도

• 「자치단체 공동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21. 4월) 등

3. 주요 감사 진행상황

□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실지감사 '21. 5~6월)

- 조세심판원, 국세청, 기재부를 대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의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처리 중

□ 「국토개발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독실태」(실지감사 '21. 5~7월)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실태 및 개발정보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처리 중

□ 「의료기기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실지감사 '21. 8~10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리체계(제조·유통·사용·사후관리) 전반과 안전사용 저해 요소 등을 점검·처리 중

□ 「대법원 정기감사」(실지감사 '21. 3~5월)

-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예산·결산, 물품구매, 국유 재산 관리실태 등을 점검·처리 중

□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실지감사 '21. 7월)

- 행정안전부, 대전광역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관하 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사례 및 지도·감독실태 등을 점검·처리 중

IV. 감사원 운영개선 및 성과

1. 감사운영 개선성과

□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院의 회계감사 역할 강화

- (중장기 재정위험 점검)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재정 운용·관리 전반에 대한 3단계 감사 추진

• (①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20. 4월) 장기 재정전망 등 재정운용 계획수립 관리 과정에 내재된 재정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재정관리 수단으로 '재정준칙' 도입 등 제언
 • (②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 '21. 5월) 주요 재정운용 수단인 「기금」, 「국가채무·채권」, 관리·운영 분야에 대해 재정위험 점검
 • (③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운영', 예정) 재정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사업의 생애 주 과정을 점검,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대안 발굴 예정

- 또한, 자체감사의 내부통제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공통취약 업무에 대한 院-지자체간 협력감사 실시

• 「(지자체 공통취약업무 점검, '21. 3월) 충북·경남 등 중남부 지역 110개 지자체에 취득세 사후관리 등 유사·반복 취약분야에 대한 대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감사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으로 협력
 * (사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부당하게 감면된 취득세를 환수하고, 院은 앞으로 추정대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개선방안 강구

- (IT기반 구축) “덜 접촉”하면서 “더 효율적”인 감사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 IT인프라 개선·확충 등 디지털 감사기반 강화

• 院 홈페이지 자료제출 시스템 고도화 및 영상회의 환경 조성, 「감사자료분석 시스템(BARON)」에 등재된 공공자료 재정비 및 다양한 분석기능 개발 등

- (예산사업 효율성 점검)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 분석 및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강화

• (주요 사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21. 7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 지원사업 추진」(21. 6월),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21. 6월),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21. 6월), 「사회적기업 지원 및 관리」(21. 4월)

□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 및 피조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감사절차 종합 정비) 감사권한 행사의 근거·절차,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및 소명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중

• 감사원규칙, 훈령·예규·지침 등에 산재된 규정들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문답조사를 위한 출석·답변을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화(21. 8월)하는 등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체계 마련

- (감사운영 유연화)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 감사방식(서면조사·전산자료분석·유선면담 등)을 확대·적용하여 감사사각 최소화

• (주요 사례) 국의 출장을 통한 현장 감사가 어려운 주연도네시아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 대해 서면적으로 전면 비대면 감사를 실시(21. 4월)

- (변호인 조력권 보장)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및 참여권 강화를 위해 문답 조사 과정에서도 변호인 참여를 허용(21. 5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개정)

• 관계인 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조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비밀 유출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

2. 적극행정 활성화와 자원 활용 지속 추진

□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운영 내실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 공직사회의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제거 하기 위해 '19년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의 현장 정착에 노력

• 도입 이후 '21. 8월까지 232건의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여 222건 처리(104건 공명 회신)

- 경제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전담반을 구성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평균 1.4일 이내)

• (주요 사례) 코로나19 백신 구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취약부분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등

-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일선 현장의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예정(하반기)

- (적극행정면책 확대)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문책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의 면책을 지속 독려

• '19년 이후 '21. 8월까지 적극행정면책 56건 인정(신청면책 10건, 현장·직권면책 46건)

- 면책 신청에 대한 인용률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를 제도 이해도가 높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노력 지속

• 신규 자문위원 위촉 시 공직을 경험한 위원의 비중을 50% 이상 유지 등

□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직사회 소통·지원

- (공직사회 소통)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와의 소통기구인 ‘적극행정지원협의회’를 꾸준히 개최

• '20년 5회(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72개 기관) 개최 / '21년 3회 예정

- 면책·컨설팅 사례집 발간, 긍정 회신한 주요 컨설팅 사례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 유도

• '20. 4월 및 '21. 5월 면책·컨설팅 사례집 계 22,369부를 발간, 4,837개 기관에 배포

-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누리집」(Homepage)을 개통 ('21. 3. 26.)하여 적극행정지원 제도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일반 국민이 직접 모범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행정면책·사전 컨설팅·모범사례 포상 등 적극행정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및 사례 제공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우수·모범사례의 발굴·전파 강화

- (모범사례 발굴 강화) 적극행정 장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사례 발굴에 중점을 둔 별도의 점검 실시(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21. 6월)

- (자체감사기구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 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

• '20. 12월 79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인력·전문성 등 사전컨설팅 수행 기반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여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 '21년 하반기 199개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연구보고서 발간·배포 예정

3. 감사 교육·연구 및 국제협력

□ 감사원 및 자체감사기구 직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 (감사원 직원 교육) 성과감사·직무감찰 등 필수역량 강화교육과 함께 비대면 환경에 맞춰 온라인 동영상 강의 확대 실시('20. 10월 이후 5,900명)
- (자체감사·회계실무자 교육) 자체감사 시 활용도가 높은 회계 관련 교육 등을 실시('20. 10월 이후 3,804명)하고, 외국감사기구 역량강화사업 추진

□ 감사방법·제도 연구 및 감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 수행

- (감사방법·제도 연구)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한 감사기법 개발, 공직 사회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제도 등 연구 수행

•(주요 연구과제)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감사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자체감사기구 사전컨설팅 제도운영실태 분석 등

- (감사활동 지원) 감사환경분석 등을 통해 감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복지·교육·의료 등 주요 감사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제공

•(주요 연구과제) 국민연금 제도개혁 이슈와 개선방향 / 평생교육시책 주요사업의 성과와 감사시사점 / 의료자원 확충·관리의 현황과 이슈 등

□ 감사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 교류·협력

- ASOSAI(아시아 감사원장 회의) 총회 등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ICC(국제형사재판소) 외부감사에 본격 착수('22년 ICC 총회 보고 예정)

V. 국회 관련사항

1. 국회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

- 국회는 '20년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 자체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등 7개 사항의 감사를 요구하였고,
 - 위 7개 국회감사요구사항 모두 기한 내 국회 보고 완료
- ※ '21년에는 9월말 현재까지 신규 접수된 국회감사요구사항 없음
- 향후에도 국회감사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보고하는 등 국회의 국정심의를 적극 지원·협력할 예정

【 '20년 국회감사요구사항 처리 현황 】

연번	감사요구사항	접수일	국회 보고일
1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TMS) 설비 관급 자체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2.
2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기상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30.
3	친리안 위성 2A호 우주기상탐색체 관련 지체상금 부당 부과 및 기상청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20. 3. 7.	'20. 7. 30.
4	방위사업청의 중어뢰-II와 정보고-II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20. 11. 19.	'21. 4. 16.
5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 11. 19.	'21. 4. 16.
6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20. 11. 19.	'21. 4. 16.
7	지방자치단체의 생태리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20. 11. 19.	'21. 4. 16.

2.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17개 사항)」(’21. 3월)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개선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감사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원을 임명부나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 현재의 감사원장 우위의 합의체가 아닌 환권합의기관으로 만드는 방안, 감사원장의 임명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 1월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에 대한 개헌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며, 감사원은 다양한 감사원 개편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평가하여 '17. 2. 13. 「국가감사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개헌특위에 제출한 바 있음 - 향후에도 감사원은 국회 개헌논의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 개편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요청 또는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수정 요청, 보도해명(발고) 자료 배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잘못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중
감사원 인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 감사위원의 임명을 제정하고, 유능한 여성인력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은 헌법 제88조에 따라 감사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감사위원 후보자를 임명제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위원 임명을 제정하겠음 - 아울러, 승진 또는 개방형 및 공모직위 인사 등에서 유능한 여성 인력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에는 오랫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관정기감사를 확대 실시 중 - 기초자치단체 기관정기감사 수 '20년 3개 → '21년 31개(예정)
국가재정활동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무제표 감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결산감사 참여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강화, 국유재산 등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결산감사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시정요구사항	개선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비대면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은 대상기관의 전자정보를 연계·분석하기 위한 「감사자료 분석시스템」을 '18. 2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하는 한편, 비대면 시범 감사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 감사의 비대면 감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21년 주안도내시내시관 등 7개 제외공관 비대면 시범 감사 실시 - 향후에도 연계자료 분석 툴(tool) 보완, 새로운 IT 기반 비대면 감사기법 및 시스템 개발 등 디지털 감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자연재해 대비 규정이나 제도,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의 대비 태세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자연재해 대비 규정이나 제도, 각 기관들의 대비 태세 등도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이행 독촉 및 면담을 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정기적인 이행 독촉 및 세무당국·지자체 위탁집행 의뢰 등 다각적인 회수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음 • 「감사원법」 개정(’20. 10. 20.) : 변상판정 집행 위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징 추가, 근거 법령에 「지방세징수법」 추가
제외공관, 해외문화홍보원 등에 대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기동점검 시스템 등을 갖추고 조사를 활성화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공관 감사를 미실시하였으나, '21년 3월부터 4월까지 주안도내시내시관 등 7개 제외공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감사를 실시 - 향후 위 비대면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대면 감사와 비대면 감사를 적절히 병행하여 제외공관 등에 대한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공적 비밀 보호에 대한 포상제도를 강화하는 등 상향식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공적비밀 제보 보상금을 지속 확대 중 • 공적비밀 제보 통 신고포상금 예산 ('19년 12억원 → '20년 1.75억원 → '21년 2.14억원 → '22년 2.14억원(정부안))
기관정기 감사에 대한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관의 규모·업무성격 및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2~4년의 주기로 기관정기 감사를 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운용 중

시정요구사항	개선조치 내역 및 향후 계획
공익감사나 국민감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요건 등을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사청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원성 원천 등 감사지연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정 기한 내에 감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결과보고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현행 결산심사 제도를 사업감사, 성과 감사 위주의 감사, 상시감사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성,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위한 감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결산감사보고서에 반영하는 등 결산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산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감사 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극행정위원을 위하여 부처의 모범사례 발굴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문화개선과정 운영」 감사원은 '16년부터 감사문화 개선을 위해 감사문화개선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향후 감사 문화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음
국정감사와 내부감사 간의 적절한 외부 감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범사례 발굴」 감사원에서는 그간 활기한 공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공직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하였고 앞으로도 모범사례 발굴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감사원은 정기적인 국정감사 수감 외에도 수시로 자료제출 및 현안 질의·답변 등을 통해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 감관리에 외부인사 임용,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 운영 등 객관적이고 임정한 자체감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음
사전 권설통 제도와 관련하여 만리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사항 접수 및 반려리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신청기관이 대상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전권설통·적극행정면책 사례집」에 권설통 처리·반려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아울러 '21년 3월 「적극행정지원 걸라잡이 누리집」을 구축하여 신청대상 처리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기타

감사원이미지

감사원배너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안내

감사청구

감사청구 개요 · 절차

감사청구 접수 안내

주요사례

청탁금지법 신고

신고안내

신고자보호 · 보상제도운영안내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유형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처리사례 [↓](#)

3. 신고방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등), 신고내용·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부패행위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제출

4. 조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20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8조)

-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신고서의 기재사항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 재심의청구

심사청구

심사청구안내

1. 감사원 심사청구란 무엇입니까?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 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정부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소송전심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2. 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식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서식에 청구취지(예, 000가 xxxx년 xx월 xx일에 000에게 한 0000처분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계기관(당해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 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다만,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자체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며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며,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 심사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원의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의 국가기관과 각급(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라도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사대상기관이 동시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검사의 대상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 심사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 심사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처분 외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다만 직무상의 행위라도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청구인 적격

심사청구인 적격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기타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당해 처분 등의 행위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상자는 모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에 해당하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 청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대리인을 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인감증명서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때 “자격증명”이란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규정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말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상세내용 ▾

여기에서 "안 날"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있는 날"은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는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시킬 수 없고, 일일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2003. 3. 10.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이 경과한 2003. 6. 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관계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

5. 심사청구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의 처리(보정요구 또는 각하)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1. ① 청구대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감사원 심사규칙으로 정한 심사청구의 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 청구인이 당해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3. ③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4. ④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함)의 재결이 있는 사안인 경우. 다만,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⑤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심사청구의 심리 중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도 포함함)
6. ⑥ 기타 감사원법 또는 감사원심사규칙에서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7. ⑦ 위 ① 내지 ⑥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하였으나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결정례

재심의청구

재심의청구안내

감사원 재심의청구란 무엇입니까?

감사원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판정과 징계·시정·주의 등의 처분요구와 권고·통보를 하는데, 이와 같은 변상판정, 처분요구 및 통보 등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행한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 및 통보 등에 대하여 재심을 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심의청구서식 내려받기 

2.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감사원법은 재심의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및 문책, 개선 등을 요구받거나 권고·통보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36 ①, ②)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은 감사원이 행한 변상판정이나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감사원에서 행한 처분요구와 통보 등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일정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심사청구를,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의청구권자 : 청구인적격

재심의청구권자는 1) 변상판정에 있어서는 변상판정을 받은 본인과 그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고, 2) 징계·문책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감독 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며, 3) 시정요구 등 기타의 처분요구와 통보 등에 있어서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개인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므로 판정대상자인 개인도 재심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와 권고·통보는 개인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요구 결과 행정 기관의 처분대상자인 개인은 재심의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재심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에 대하여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당해기관의 장 등이 모두 병렬적으로 각각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법률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해임 등 문책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재심의청구권자입니다.

이 때,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의청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재심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심의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재심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감사원 재심의청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변상판정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에게 변상판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시정요구 등 처분요구와 권고·통보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가 그 처분요구 및 통보 등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청구서가 감사원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위 재심의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할 수 없고, 일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月)로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심의청구권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1. 2. 10. 처분요구를 받았다면 2001. 3. 10.까지 재심의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재심의청구의 절차 및 방식

재심의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의청구권자가 소정의 재심의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예, 감사원이 xxx년 xx월 xx일에 000에게 한 변상판정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재심의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재심의청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청구주장을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의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재심의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재심의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재심의청구의 요건이 미비한 경우의 처리(보정요구 또는 각하)

재심의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하결정을 하는 경우

1. ① 재심의청구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
2. ② 재심의청구제기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
3. ③ 재심의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및 권고·통보가 재심의(직권재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④ 기타 감사원법 등 법규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5. ⑤ 위 ① 내지 ④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하였으나 그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의 결정례

기타안내

1. 변상판정 청구란 무엇입니까?

감사원의 변상판정 전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때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변상판정 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 적격

감사원 변상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 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 (「회책법」 제6조 제3항)

변상판정 청구 절차 및 방식

변상 판정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위 감사원변상판정청구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판정을 청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여야 할 사항 (「감사원법」 제49조 제1항)

- 국가의 회계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 제한하는 등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때

회계관계법령해석·답변(「감사원법」 제49조 제2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 답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세입 · 세출예산 운용상황

세입 · 세출사업별설명자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자료

기타메뉴

법령해석·답변제도

회계관련법령의 해석·답변

1. 개념 및 근거

「감사원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이에 대해 해석·답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원법」 제49조 제2항: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2. 신청 절차

회계사무 담당자는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점이 있는 경우 '회계관계법령 해석·답변 요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사무 담당자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해석·답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해석·답변 대상 법령 및 반려 사유

- 1. 대상 법령

「국가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 각 법률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을 받거나 위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해석·답변 대상으로 하며, 법령의 일부 조항이 회계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석·답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반려 사유

신청 절차에 맞지 않거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석·답변을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 1. 해석·답변의 대상이 회계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해석·답변 요청과 관련된 수사나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5. 해석·답변 요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7. 그 밖에 법령해석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이거나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감사원의 법령해석·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소관법령의 해석·답변

1. 해석·답변 대상 법령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해석·답변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 절차

행정기관의 장, 민원인 등은 감사원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점이 있는 경우 '감사원 소관법령 해석·답변 요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반려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석·답변을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 1.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질의인 경우
- 2.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3. 해석·답변 요청과 관련된 수사나 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4. 해석·답변 요청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또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 5.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 해석·답변 요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회계상 또는 직무상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실지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감사원의 법령해석·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